

2009년도 정기세미나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뉴스서비스사업자¹⁾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1. 머리말



여 상 원

서울제1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당초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만 한다)은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어 2009. 8. 7.부터 시행된 신 언론중재법에서는 나아가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포털²⁾이 기사제공언론사³⁾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받은 뉴스 등 기사를 포털에 게시하거나 포털에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기사제공언론사의 해당 기사로 연결되게 하거나 포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사를 불러내어 포털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사제공언론사 자체의 뉴스 제공과

- 1) 신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포털(portal)은 사전적 의미로는 현관문을 뜻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을 시작하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다. 포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래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검색기능을 넘어 포털 자체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포털로는 네이버와 다음이 있다.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또는 웹 포털(web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www)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말한다. 한편, 위키백과사전에서는 포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들은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 또는 그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전자 메일, 홈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야후!는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예이다. 포털 사이트는 수평 포털과 수직 포털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 포털은 야후!처럼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수직 포털은 특정 영역에 치중한다.” 2007. 말 현재 국내에는 27개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사이트도 19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현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9. 1.))
- 3) 신 언론중재법 제2조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농후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것이다.⁴⁾

생각건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율하고자 하는 신 언론중재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 제17조의 2⁵⁾의 조문 하나만 됴으로써 이론상, 실무상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어 신 언론중재법에 대한 검토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까지 신 언론중재법 중 이 부분을 운용하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리 등을 동원하여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절차법상의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중

전 규정대로 각별로 제기된 정정보도 등 청구에 의하여 별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즉, 신청인은 새로운 언론중재법 하에서도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또는 각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⁶⁾

나.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법상의 지위⁷⁾

그런데 신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이 부분이 절차법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신 언론중재법상의 이 부분 규정은 민사소송법이나 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에도 없는 특유한 것이고 이에 관한 선행도 없어 상당 기간 동안 그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

4) 신 언론중재법안에 대한 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포털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므로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각각 1,000만 명을 넘는 등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입법이유로 들고 있어 결국 포털이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 포털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경우 여론왜곡 등의 문제가 있어 신 언론중재법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검토보고서.

5)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기사제공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 제2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6)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조정법 제14조의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사건과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으로써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와 같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7) 오프라인 언론사가 설립한 언론사닷컴을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법원리는 포털을 상대방으로 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서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통칭하여 편의상 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

8)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24조 제3항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 통보에 의하여 정정보도 등 사건에 관여하게 된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조정이나 중재의 효력이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에 동일하게 미친다고 봐야

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 민사소송법 소송고지와 비교

민사소송법 제84조⁹⁾ 내지 제86조는 소송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목적은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¹⁰⁾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언론중재법상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의 공통점은 소송이나 정정보도 등 청구 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송이나 청구가 접수되어 절차가 개시된 연후에 고지나 통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두 제도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고지의 주체는 법원이다. 즉,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고지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당사자 본인이 소송고지를 할 수 없다. 반면 언론중재법상 통보는 뉴스서비스사업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당사자의 권한일 뿐 원칙적으로 의무 조항이 아니다.¹¹⁾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통보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셋째,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지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자에게는 기판력이 아니라 참가적 효력¹²⁾이 미칠 뿐이다. 언론중재법상 통보에 의하여 정정보도 등 사건에 관여하게 된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다만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대부분의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신는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조정이나 중재의 효력

8)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24조 제3항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1권 328쪽.

11) 민사집행법 제238조, 상법 제404조는 소송고지를 강제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고지는 강제되지 않는다.

12)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고 피참가인(원래의 당사자)이 패소한 경우 소송고지를 받은 자와 원래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1979. 6. 12. 선고 79다487 판결 참조.

이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에 동일하게 미친다고 보는, 즉 기사제공언론사에게도 조정결정의 당사자로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라.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통보절차에 관한 문제와 또 통보가 없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만 조정결정 등이 행해진 경우 그 결정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이 문제가 된다.

우선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통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나 중재부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단은 없다. 이 부분이 새로운 언론중재법 입법상의 실수가 아닌가 한다. 즉, 포털과 기사제공언론사의 관계 및 기사 내용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신청인의 청구목적이 달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면 자동적으로 기사제공언론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던 신언론중재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조정절차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에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보 여부를 뉴스서비스사업

자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재부가 통보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제도를 유추하여 통보절차를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중재부에서 이를 행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언론중재법 하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중재부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당사자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기사제공언론사도 공동 피신청인으로 할 것을 지도하거나 이미 뉴스서비스사업자만 피신청인으로 한 사건이 접수되었으면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새로운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민사조정법 제14조의 2를 준용하여 2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결책은 언론중재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조정법에 따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제공언론사가 어떤 경로로든지 자신이 제공한 기사에 관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안 때에는 중재부에 조정참가신청을 하고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¹³⁾ 기사제공언론사가 스스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부가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 등에 참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¹⁴⁾ 참여시켜 조정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민사조정법을 준용하여 기

13)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의하여 조정에 참가한 경우를 관여라고 한 것은 민사조정법의 표현과 같이 이러한 참가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있어 정정보도 등 청구에 있어서도 당사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 기사제공언론사가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당성”은 거의 인정될 것이다.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
보 없이 신청인과 뉴스서비
스사업자 사이에 조정이 확
정되어 포털에 실린 기사와
원천기사가 서로 모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7조
의2제1항의 개정 시급

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 등에 참여시키더라도 언론중재법상 뉴스서비스사
업자의 통보에 의하여 부여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에 한계가 있다.¹⁵⁾ 필자는 통보절차에 관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
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으면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사제공언론
사는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통보가 없더라
도 이해관계인으로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마.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조정결정 등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

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없이 신청인과 뉴스서비
스사업자 사이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기사제공언론사에게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
공언론사에 정정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기사제공언
론사를 정정청구 등의 당사자로 취급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
고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가 조정절차 등에 스스로 참
가하여 조정결정에 기사제공언론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조정결
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에 따라 의무를 부담함도 당연하다.

반면에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통보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또는 중재부의 명령에 의하여 조정에 참가하지도 않아 기사제공언론
사가 조정절차 심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
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정결정에 기사제공언론사가 효력을
받는 것은 민사절차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신청인이 기사제공언론사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기사제공언론사는 체쳐 두고 뉴스서비스사업자만 상대방으로 하여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포털에 실린 기사가 정정되는 것으
로 만족하든지 원천기사의 정정을 원하면 다시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정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하여 신청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5) 그러나 조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제공언론
사와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절차법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조정결정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사
자가 아니라는 점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없이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조정이 확정되어 포털에 실린 기사의 정정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천기사와 포털에 실린 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민사절차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모순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도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 절차상 지위

위에서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을 보았는데 통보를 한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도 피신청인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이 과연 현대 민사절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사제공언론사는 놔두고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불만이 있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피신청인으로 삼겠다는데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한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기사제공언론사로 하여금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법원리에 합당한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이것은 신청인이 정정보도 등 청구 당일부터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모두 상대방으로 한 것과 뉴스서비스사업자만 상대방으로

한 것과 아무런 차이를 없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다. 즉,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¹⁶⁾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신 언론중재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만 하면 기사제공언론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에 관한 통보가 있는 경우 심리에 참석하여야 할 자는 누구인가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2항에서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도 신청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둔 것에서 기사제공언론사는 비록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재부의 심리에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기일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아니한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는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좋을 것이다.

16) 이것은 위에서 언급하는 해결책인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추가신청권을 부여하는 것과 어긋난다.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조정결정 내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둘의 관계를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로 설정할 필요 있어

한쪽이 출석하고 다른 쪽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 경우 피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결정이 모순이 없지만 출석한 피신청인과 사이에 당초의 청구와 다르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양자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불출석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애초의 청구취지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출석한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는 절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반론보도만으로 조정이 된 경우일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양 피신청인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 피신청인으로 보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정결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절차를 통하여 불일치를 해결하여야 하고 결국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아. 입법론적 검토: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¹⁷⁾과의 비교 및 도입 검토¹⁸⁾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가 도입된 것은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원천 기사와 포털에 실린 기사는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하나의 절차에서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불고불리의 원칙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 포털에서 정정된 기사와 원천기사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 역시 피신청인의 지위에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 언론중재법이 기사제공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피신청인의 지위에 두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정결정 등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즉,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

1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共同訴訟人 모두에게 合一 確定的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1권 284쪽.
18)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필자가 가장 고심한 테마이다. 즉, 신청인으로서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만 피신청인으로 하고 싶은데 법에서 양쪽 다 피신청인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제도를 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를 언론중재법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면) 굳이 신 언론중재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만 하여도 기사제공언론사를 피신청인으로 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민사소송법상 필수적(적어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로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¹⁹⁾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각 가지 민사절차법상의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된다(다만, 여기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둔다고 하여 각자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이 완전하게 같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조정결정의 전체적인 취지가 같다면 피신청인들의 기사 게재 방식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언론중재법에서 포털에 실린 기사와 원천기사는 항상 동일하게 취급됨을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은 현실과도 부합된다. 신청인의 신청목적은 포털에 실린 기사는 물론 원천기사도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필수적으로 공동피신청인 관계에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접수 시 기사제공언론사도 동시에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알려주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업무착오 등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는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중재부에 피신청인의 추가를 요청하게 하고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한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 만일 신청인이 이와 같은 중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제공언론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지 않으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필자가 지적하듯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 언론중재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피신청인을 다수로 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이 적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다수가 되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지만 언론중재에서는 이런 면도 없다.)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원고(언론중재법상의 신청인)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재판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면에서도 신 언론중재법이 기사제공언론사에 필수

19) 2008년도 중재위원 워크숍에서 조수정 전 위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은 법적 성질에 반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본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정결론과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결론이 정반대로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신 언론중재법이 원래 추구하였던 입법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그리고 법적 성질에 반한다는 것은 아마 민사소송법의 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사실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를 소송상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강현중 저 민사소송법 제5판 197쪽 참조). 오히려 포털의 기사와 원천기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목적이고 또 자연스런 것임을 감안하면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지위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알림표시 의무는 조정결정 등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유사한 제도

적 공동소송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비록 조문상으로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추가에 관하여는 권한도 된다)을 부여한 것은 법체계상으로 크나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필수적 공동 당사자가 되는 경우 조정결정의 효력이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에 동일하게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자.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

위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을 경우만을 언급하였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법적 문제를 보기로 하자.

언론중재법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를 추측하여 보면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의 기사제공 계약²⁰⁾상 당연히 포털에 실린 기사의 정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통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해결책이 규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²¹⁾

그 해결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와 동일하게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중재부에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하고 중재부의 허가에 의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도 피신청인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 필자가 그 계약을 구하여 보려고 공적, 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추측에 의한 글을 써 안타깝다.

21)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록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와 맺은 계약에 원천기사에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조정결정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포털에 실린 기사도 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는 기사제공언론사와 사이의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직접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신청이 절실하다.

3.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실체법상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의 의무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하 알림표시라고 한다)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기사제공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것은 조정결정 등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²²⁾에 유사한 제도로 보인다. 원래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상을 동결함에 그치지 않고 권

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과 같은 현상을 작출하게 되므로 그 심리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고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소명(疎明)²³⁾을 요하는 데 반하여 신 언론중재법 상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민사집행법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도의 현상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심리나 소명 없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에서 본 의무를 명하고 있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notice and take down”²⁴⁾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²⁵⁾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와 유사한 개념이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
- 22)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관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협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4권 8쪽.
 - 23)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인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4권 75쪽.
 -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알림표시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제기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관해서는 중재부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으로 강제하는 방법 밖에 없어

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언론중재법상 신청인에 해당한다)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등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명하고 있는데 그쳐 언론중재법의 규정만을 놓고 볼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take down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take down을 명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정하고 또한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정정보도 등 청구보다 법익의 침해가 당사자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삭제의무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상의 피해구제 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삭제의무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그 보도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등 청구로 갈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아무리 언론보도로 사생활 침해 등을 입었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삭제 등을 구할 수 없고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임의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였는데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내렸을 경우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등의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삭제하였을 경우 그 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병합청구되었을 경우에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내렸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정정보도 등 담당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신청인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비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

(1)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고도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서 아무런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연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앞서 지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삭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고 다만 제44조의 2 제6항에서 삭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여 소극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 체제를 보면 결국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알림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자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로서는 심리결과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피해 회복 등이 시급하다면 이에 대한 벌칙을 두거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행을 강제할 법률적인 수단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알림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21조²⁶⁾, 제42조²⁷⁾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민사조정법 제21조는 알림표시 의무의 이행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

26) 민사조정법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상대방 기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현장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고 기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처분을 함에는 처분위반에 대한 제42조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

27) 민사조정법 제42조(조정전의 처분위반자에 대한 제재)

-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11.30

알림표시 이행방법에 대해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이 일반인에게 제대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림표시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위의 금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주로 소극적인 금지만 정하고 있어 과연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조정실무는 민사조정법의 위 규정을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어²⁸⁾ 이를 유추하여 보면 중재부는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알림표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사전처분으로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민사조정법은 중재부가 이러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신청 후 그 종료전, 즉 조정사건이 계속 중에만 인정하고, 일반 보전처분과 달리 조정신청 전에는 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 없이 조정기관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부가 이와 같은 사전처분을 명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다.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²⁹⁾ 비록 언론중재법이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벌칙조항까지 준용한다는 것은 광의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3) 알림 표시의무의 이행방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는지 여부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알림표시 의무의 방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알림표시를 일반인이 거의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그 의무 이행을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중재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아니면 중재부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줄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언론중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조정법의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재부는 알림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

28) 실무제요 조정실무 89쪽.

29) 대법원 2007.3.29. 자 2006마724 결정

여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원용하여 그 의무이행의 내용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부는 신청인이 알림표시에 관한 신청을 할 때 동시에 그 방법에 관하여도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의견과 중재부의 견해를 토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이 일반인에게 제대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림표시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알림표시에 의한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와 구제

정당한 기사에 대하여 알림표시가 행하여짐으로써 뉴스서비스사업자는 포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발생 가능성은 모든 분쟁구제 절차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히 정정보도 등 사건에서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알림표시가 그 기사를 단정적으로 허위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로 행하여지는 것을 알림표시에 부가하여 알림표시 옆에 “이 기사에 대하여 …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 신청이 제기되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를 알립니다. 그러나 이는 이 기사에 확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 언론중재위의 조정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는 정도의 문구를 부가하여 두면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청이 오로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괴롭힐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정결정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후에 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의한 피해구제는 별론으로 하고 사전

조치로 인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알림표시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5) 오프라인 매체와의 형평성

현재 오프라인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과 같은 알림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일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서 유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알림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의 특성상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오프라인 매체는 시간적 지속성이 결여되어 시간이 지난 보도에 소급하여 알림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 등 본안에 관한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기술적으로도 이미 지나간 기사에 알림표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는 그 매체에 기사가 실린 후 이를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을 경우 알림표시를 하여야 오보 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의 위 조항은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은 별도의 뉴스 공간을 만들어 뉴스제목을 열거하고 있고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된 뉴스 중 원하는 제목을 클릭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가 허위 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기사를 게재하였을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

하면 바로 그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고 검색란에 관심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클릭하면 기사제공 언론사 홈페이지의 해당 뉴스에 바로 링크되어 비로소 뉴스가 제공되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³⁰⁾ 이러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 청구를 받았을 경우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뉴스서비스사업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뉴스가 저장되어 있다면 별도의 뉴스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뉴스서비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뉴스에 알림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사제공언론사의 해당 뉴스에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면 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 당해 기사제공언론사가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기사를 내리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어서³¹⁾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라. 여론 -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약간의 고찰

우리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기사제공언론사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지 다른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계약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가감 없이 게재하여야 하는데 기사작성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기사의 오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물론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제공에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따로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30) 필자가 인터넷 포털을 다수 방문하여 봤으나 이러한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털이 있음을 가정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31)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알림표시 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사제공언론사에 적용하는 것은 기사제공언론사가 기사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그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옮겨 실는 데 불과한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같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여기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가 허위 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기사를 게재하였을 때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어떤가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는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고 그들 사이의 책임분담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작금의 중대한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수긍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근대 민법의 자기책임원칙이나 과실책임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에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면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고의, 과실 개입 여부,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책임범위를 달리하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4. 결 어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관하여 참고 문헌이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필자의 미약한 법률 지식과 그 동안의 재판경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다. 쓰고 보니 너무 영성한 점이 많아 언론중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든다. 그러나 이 글을 계기로 위 조문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는 의미에서 용감하게 썼다. 결국, 신 언론중재법의 이 조문은 좀 더 연구가 행하여져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1. 서론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Univ. North Carolina
at Chaper Hill 박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법률적 구제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¹⁾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따라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등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표현의 삭제, 접근차단, 취급거부, 정지, 이용제한 등을 통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건수 모두에 대한 공식적 집계는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08년 발행한 <언론소송 판결분석>에 수록된 판례수를 보면,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명예훼손이 입증되지 않는 표현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검찰은 소위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로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나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표1] <언론소송 판결분석>에 수록된 판례수

(단위: 건수)

연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계
2005	71 (85.5%)	12 (14.5%)	83 (100%)
2006	81 (74.3%)	28 (25.7%)	109 (100%)
2007	116 (73.9%)	41 (26.1%)	157 (100%)

출처: <언론소송 판결분석>,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21쪽.

<언론소송 판결 분석>에 모든 민형사상의 언론관계 소송이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수치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은 형사처벌 보다는 민사상의 배상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이 많은 이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허위 사실 적시, 피해자의 특정, 피해자 명예의 훼손, 사실과 의견 구분 등에 있어 민형사상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소송 판결 분석>에 따르면, 형사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민사상의 패소판결에 비해 높긴 하지만,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5년-2007년 사이 유죄가 선고된 72건의 언론관련 소송에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소위 <PD수첩>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을 둘러싸고 나타났듯이, 언론매체나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적적 현황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형사사건 중,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명예훼손에 있어 형사법상 처벌할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위법행위의 구성요소로서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조건으로서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죄 처벌을 가능케 하는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로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²⁾ 반면 형법조항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와 처벌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가중 처벌하고 있다.

형법은 명예훼손이 출판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형법 제309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

2)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307조의 일반적 명예훼손과 달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고, 대신 그 처벌은 일반적 명예훼손보다 엄중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매체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 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라는 이유로 설명했다.³⁾

한편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친고죄(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만 공소가 기각된다.

현행 형법조항은 명예훼손죄가 과도하게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10조에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일반적 명예훼손에 적용될 뿐,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⁴⁾ 반면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민법상의 소송에서도 인정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고 있다.⁵⁾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경우, 진실의 입증은 가해자인 표현행위자나 언론매체에게 주어진다.⁶⁾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그러한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

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5)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6)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공인인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원고에게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는 점을 대법원은 거듭 확인한 바 있다.⁷⁾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⁸⁾

3. 명예훼손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비판론

최근 검찰은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프로그램으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위 <미네르바>라고 불린 인터넷 논객이 전기통신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두 사건에 즈음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수사 즉,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술적 논의는 많지도 않고, 그 대부분이 총론적으로 형사처벌

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민형사상의 법리적 차이점이나 형사처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법리적 쟁점을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죄 처벌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역신문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반발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기각했다.⁹⁾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고 설명했다. “가치 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알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별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 보호 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면서 결국 이러한 “언론 자유의 위축이나 질식은 바로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죄의 처벌에 있어서 지켜야 할 3가지 헌법적 원칙을 제시했다.

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탐색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검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9) 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취지는 과도한 처벌로 인한 언론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공 1993하, 2188 ; 1994. 8. 26. 94도237, 공 1994하, 2572. 각 참조).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핵심취지는 과도한 처벌로 인한 언론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일반 명예훼손죄나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는 상반되는 입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입증을 엄격히 해서 법의 남용을 막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법학자들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석연은 이미 1992년도의 논문에서 “명예침해의 경우 형벌권 개입은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남적용은 특히 권력형 비리나 대형 부정부패 의혹사건 보도에 대한 무형의 사전압력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¹⁰⁾

신평 역시 “표현의 영역에서 가능하면 법의 힘은 제한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론기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추상

10) 이석연,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리와 적용,” <언론중재>, 1992년 겨울호.

적 위험범”으로 명백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보았다. 미국과 같이 “현실적 악의” 이론을 수용해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고의 범이나 중과실범에 한해서만 형법상의 처벌을 제한하자고 그는 제안했다.¹¹⁾

1999년 대전 문화방송이 보도한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2003년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보도한 언론인들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송선은 문화방송의 보도가 법조의 구조적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성이 있고, 보도의 상당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¹²⁾

명예훼손죄로 인한 국가의 형벌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최근 <PD수첩>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을 둘러싸고 또 다시 제기되었다. 박경신은 명예훼손죄를 통해 “권력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리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검찰을 동원하여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권이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인데 이에 대해 정부부처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존속되려면 사법부가 검찰의 기소권이나 조사권을 엄정한 영장주의 하에 통제하거나, 공직자나 국가기관에게는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김종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2006도 7915)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기소당한 피고의 무죄입증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더욱 언론자유를 위축한다고 주장한다. 즉 표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고, 검사는 그 점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형사소송에서 이처럼 범죄의 증명을 해야 할 검사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¹⁴⁾

일부 학자들은 언론자유 위축 측면보다는 형사처벌이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의 법적 효용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동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켜줄 뿐,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 회복 등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⁵⁾

손동권은 명예훼손 처벌이 “다소나마 피해감정을 보상받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민사소송과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도 있다고 진

11)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년.

12) 이송선,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7-3, 161-196.

13)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언론중재>, 2009년 여름호, 46-61.

14) 김종서,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대응과 언론자유,” <언론중재>, 2009년 여름호, 30-45.

15)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 5-38.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입증 방법과 관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다고 기준 제시

단했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입증 즉 진실성과 공공성의 입증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하고 있어 … 비록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의 원칙, 거증책임 검사 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동권은 “독일의 형법과 같이 사실의 증명만으로 면책되거나 일본 형법과 같이 공직자에 한하여 사실증명만으로 면책되는 제도의 입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¹⁶⁾

지금까지 명예훼손에 관한 대부분의 학술적 연구는 민사소송의 법리와 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도 형사처벌의 당위성이나 효율성, 적절성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만 적용되는 “비방할 목적”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 중 “비방할 목적”이 쟁점이 되어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분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언론을 상대로한 형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위반행위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총 81건의 형사소송에서 128개 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이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언론사는 69개사로 그 비율은 53.4%였다. 판결결과를 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언론사의 75.4%에 달하는 52개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제소된 320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건수는 139건으로 승소율은 43.4%였다.¹⁷⁾

16) 손동권,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책임,”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87-103.

17) <언론소송 판결 분석>,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40쪽.

[표2] 언론상대 형사소송의 위반 죄명 및 처리결과
(2005년-2007년)

죄 명	유 죄	무 죄	공소기각	합 계(%)
명예훼손	12	4		16(12.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52	15	2	69(53.9)
정보통신망법위반	9	9	2	20(15.6)
공직선거법 위반	12			12(9.4)
기 타	8		3	11(8.6)
합 계	128			128(100)

출처: <언론소송 판결 분석>,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61, 64쪽.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추출하고, 그 중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단한 판결을 검색한 결과, 198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8건이 검색되었다.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판결이 8건, 무죄가 확정되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10건이었다.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과 확인방법이 제시된 사건은 11건, 그 기준과 확인방법의 제시 없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만을 제시한 판결이 7건이었다.

1)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된 사건

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유죄판결
대법원은 문제가 된 발언이나 표현이 허위일 경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법원은 2002년 정부고위층의 압력으로 부당하게 감사가 중단된 것을 폭로한 감사원 직원이 피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비방할 목적”에 대한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토론을 거쳐 감사를 중단했음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으

[표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983년 이후)

	유죄확정 혹은 유죄취지 파기환송	무죄확정 혹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된 사건	3건	8건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사건	5건	2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있어 판단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케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잘 보지 않아

면서도 마치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감사가 중단된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상급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¹⁸⁾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판기사를 이용해 광고와 구독을 요구한 지역주간신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000도329 판결에서와 같이 제시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재언급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그 기준이 개별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은 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판물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¹⁹⁾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둘러싼 분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공익성”을 추가로 적용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검토 없이, “피고인이 기사를 제보하게 된 경위와 그 제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²⁰⁾

위 3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1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1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2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위의 세 판결에서는 과연 대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지를 판단케 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한 고민이나 우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 무죄판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는 기준으로 진실성/상당성과 더불어 공익성도 적극 채택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사실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9년 한겨레신문이 한 학생운동 지도자의 사망에 안기부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기사로 인해 피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신문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보도될 당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 간의 긴장형성 등 피해자들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고,” 기사의 목적이 당시 변사사건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던 “여러 의문점을 취재하여 이를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²¹⁾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사실상 위법성 조각사유 판정과 유

사한 결론을 내렸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인물로 인한 1998년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에서 대법원은 보다 구체적인 “비방할 목적” 확인 방법을 제시했다. 진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다. 공익과 비방목적과의 관계도 분명히 정립했다.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성 표현이 공익성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조합활동상의 전력에 관한 사실로서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동기도 상대방 후보자의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력에 관한 정보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상대후보에 대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지만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²²⁾

2000년의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의 공익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표현은 시장과 마찰을

2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2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는 요소로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공적 관심사안에 관여하여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

빛고 해직된 문화원장 관련 기사에서 시장을 “친일매국자”로 비판한 기사였다. 대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및 시민의 날 개정 등의 지역사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²³⁾

대법원은 한 교회의 목사의 성경해석이 이단이라고 비판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월간잡지 발행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교리해석을 기성 기독교 신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이를 경계케 함으로써 기존의 교리를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표현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간부가 언론인터뷰에서 한 청소대행업체가 특정업체의 임금착취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비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에서는 해당업체의 군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을 방해하고, 해당업체 퇴사직원들이 새로 설립한 업체와의 계약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례판결에서 제시한 비방목적 판단기준을 재언급하면서 원심판결이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조간부가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하려고 한 것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의 사무처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린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대량 실직을 하게 되어 화천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도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화천군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2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1803 판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비방목적의 부인요건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동일한 것으로, 결국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대법원은 재확인한 것이다.²⁵⁾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해 고발당한 여성단체에 대해 대법원은 그 행위가 공익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사실, 이와 같이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지역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까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며 “비방할 목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²⁶⁾

2007년 대법원은 당시 농림부장관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축협회장은 농림부의 수입쇠고기 유통·판매 권장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었다. 원심은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과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익성과 비방목적이 상호 부인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익성과 진실성 판단여부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²⁷⁾

위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

2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7)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매국적 행위’, ‘농림부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 과장되고 모욕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농림부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동기라 판단

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광고 내용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최고기 유통 및 판매의 권장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미 언론도 사실을 통해 밝힌 공적 관심사안이며,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 ‘매국적 행위’ 혹은 ‘국민의 혈세’, ‘농림부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 과장되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이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농림부의 구체적 정책 혹은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광고를 비방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 혹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도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동일한 사안임을 확인해 주었다.

2008년 대법원은 콘도사업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고위층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는 양심선언으로 피소된 감사원 직원에 대한 두 번째 판결에서 종전의 판결과는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²⁸⁾ 대법원은 종전판결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공표해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었다.²⁹⁾ 그러나 새로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설령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효산그룹사건에 대한 감사중단 및 외압 의혹은 피고인의 양심선언 이전부터 언론매체에 의하여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

28)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9)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의 양심선언은 이와 같은 공격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행위는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존재하는 의혹을 규명하고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제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써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이 적용되면서, 중전의 유죄판결이 무죄판결로 바뀐 것이다.

2)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판결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심판한 18건의 판결 중, 7건에서 대법원은 그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판결결과만 제시했다.

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유죄판결

문중 내 분규로 발생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방 목적의 구성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이씨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귀감으로 하려는 “광리세적”에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적어 넣어 그 종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내용의 진위여부나 공익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다.³⁰⁾

한 월간지가 1969년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1980년 광주항쟁 관련 사진으로 오인하여 게재한 사건에서,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사진 속 주인공들이 마치 특전사령부 광주항쟁 진압요원으로 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피고에게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³¹⁾

대법원은 화랑과의 마찰을 빚은 화가가 언론사에 화랑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보도된 후 피소된 1994년 사건에서, 원심대로 피해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했다며 유죄를 확정하였다. 피고는 제보의 목적에 대해 “화랑의 횡포로 인하여 작가가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고의적으로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도록 하였다.” “다시는 화랑이 작가에게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원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가 화랑대표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심판결을 수용했다.³²⁾

대학분규의 한 당사자가 대학교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탈법적으로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숨기면서 오히려 주상복합아파트(스타시티)의 건설을 통하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해교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신문광고에 게재해 원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구체

30) 대법원 1983.6.14. 선고 82도744 판결

31)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도1744 판결

32)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3535 판결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입증기준으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적인 제시 없이, “그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³³⁾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에 관련되어 재판을 받는 군수에 대해 보도한 지역신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적도 있다. 해당 신문은 재판 중 핵심증인이 군수와의 성관계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군수가 정정보도요청을 하자 다음날 “김 군수라고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정정보도를 냈고, 그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도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속한 신문사의 광고협찬과 연구용역 수주를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비방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³⁴⁾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피고의 주관적 해석을 증인의 증언내용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현했기에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해당 신문은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³⁵⁾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점검 없이 “비방의 목적을 둘러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³⁶⁾

나.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 무죄판결

시민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로 제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시민단체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조선일보 기자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

3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34) 전주지방법원 2006. 1. 26. 2005고단 1203 판결

35)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노195 판결

3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검토 없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익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⁷⁾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종교잡지에 대한 기소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간략히 판결했는데, 진실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 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선례만을 인용하면서, 해당 잡지가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³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존재 여부를 심판한 18건의 대법원 판례 분석결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조건인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소지를 축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판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18건의 분석대상 판례 중 7건에서 유죄판단의 성립조건이 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혹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11건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 원칙은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으로 헌법재판소의 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형법 307조의 일반적 명예훼손죄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소송에 적용되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와도 그 실질적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언론자유에 과도한 위축이나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의 입증기준으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선례에서 언급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표현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검찰 기소의 적절성이나 법원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한 언론자유에 위축과 권력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죄성립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입증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적시 사실의 내용의 성질”에 대해서

37)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3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명예훼손죄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

는 그 표현의 강도나 오류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당인물의 공인여부나 인지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인에 대해 적용하는 “현실적 악의” 기준, 즉 “허위를 인지하고도 그것을 무시한 채 표현하거나 진실과악을 위한 노력을 무모할 정도로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유죄성립 조건을 명확히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기소가 남발되거나 고의적인 비방을 통한 명예훼손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결에서,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을 적용함으로써 형사처벌로 인한 언론자유의 위축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다. 비록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사항이 대법원에 의해 수용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조건인 “비방할 목적”을 판별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고 그 기준의 적용사례도 일관적이지 못한 상태여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남용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다고 할 수 있다.

유죄여부를 판별하는 핵심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권력자로 하여금 명예훼손 처벌이라는 위협수단을 사용하게 만드는 유인동기가 될 수 있고, 국민들로서는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기본권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18건의 대법원 판례 중, 공인이나 공직자에 관한 사건이 7건, 종교나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3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권력과 지배층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으로 인해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언론자유의 위축을 예방하고 명예훼손죄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토론

사회어수용

대전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어수용 (사회자, 대전중재부장) : 제1주제 발표내용을 정리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대한 특칙 조항인 17조의2는 개정 언론중재법 3장 1절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조정과 중재에 대한 규정들이고, 4절은 소송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17조의2가 특별히 1절에 들어가 있다. 1절의 언론사 등에 대한 청구라는 것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청구를 한 경우 언론사를 통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발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조정의 경우에도 언론사가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발표의 중요한 전제이자 주장 사항이 되는 내용이다. 이는 발표자의 주장이 해석론일 수도 있고, 해석론이 아니라도 입법론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입법론적인 주장을 몇 가지 더 하셨는데, 인터넷뉴스서비스인 포털뿐만 아니라 기사제공언론사까지 다 포함한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에 관한 이유와 상당성에 관해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알림기능, 포털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언급했다. 발제 내용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다.

일단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으로 들어온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내용 등 주제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포털 관련 부분까지 질문해도 무방하겠다.

윤상일 (서울제1중재부 위원) : 기사제공언론사가 다수의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다수의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뉴스서비스사업자 한 곳만을 골라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여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 개정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같은 기사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뉴스서비스사업자, 즉 여러 포털 간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상원 (발제자, 서울제1중재부장) : 그에 관해서는 법에 어떤 규정도 없다. 피해자는 한 포털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것만으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싶겠지만, 법에는 다른 포털들도 피신청인으로 포함하는 근거는 없다. 다만,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간에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와 동일한 전제계약을 맺은 다른 포털들에게도 정정이나 반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윤상일 : 해당 조항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을 말씀하셨는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을 도입한
다고 하여) 기사제공언론사
와 포털의 관계 외에 포털과
나머지 포털 간의 관계까지
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여상원

면 기사제공언론사는 피신청인이 되겠지만 다른 뉴스서비스사업자도 공동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여 상 원 :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포털 한 곳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는 명백히 소를 제기한 포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사제공언
론사와 포털은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포털과 나머지 포털 간의 관계까지도 연
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사제공언론사는 원천기사를 제공하고, 전채
계약에 의해 포털은 그대로 옮겨 싣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필수적 공
동소송관계에 넣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을지라도 그 나머
지 포털까지 전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임 경 록 (서울제6중재부 위원) : 뉴스가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
언론사와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
하셨다. 그런데 뉴스를 다룰 때는 그만한 책임과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있어
야 한다. 단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 중계해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뉴스
서비스사업자를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필수적 공동소
송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조정 결정 효력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한 것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여 상 원 : 근대 민사법의 원리는 과실책임주의였으나 산업사회가 되고, 사회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 요즘
은 조그만 사고로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어떤 시설물
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더라도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보험이라
는 것은 책임과 관계가 없지만, 보험에 들면 보험회사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가 발생하면 보상을 한다. 아주 오래 전에는 무과실책임주의였다가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과실책임주의로 되었다가 다시 현재는 무과실책임주의로
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포털
이 기사작성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전채계약에 의해 기사를 전채했
을 뿐인데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언론보도의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히 크고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털이 사실 영향력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있겠지만, 전제계약에 따라 서비스하기 때문에 기사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이 언론사에서 제공하면 기계적으로 신는 것에 불과한데 똑같은 책임을 져야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포털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관이 오판을 하면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무상 행한 일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지 않으면 공익적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사제공언론사는 자신이 취재하고 보도하여 관여가 되었으니 책임을 져야하지만, 언론 조정과정에서 포털에게 기사제공언론사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포털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이 기사제공언론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중재부에서 참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임 경 록 :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에 실리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보상의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포털이 같은 기사를 부각시켜 반복해서 게재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고, 포털의 흥미 위주의 보도로 인해 피해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피해구제 목적에서 보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소 원칙적이고 법리적으로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신 용 석 (경기중재부장) : 발표자께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거론하셨는데, 현행법에서는 과실책임을 규정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과실책임에 있어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기사를 생산했다는 측면에서 뉴스제공언론사의 행위

책임도 크지만, 포털이 종이신문보다 영향력이 커져 가는 상황이고, 손해확대라는 측면에서 과실을 인정한다면 포털의 책임범위가 오히려 커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행위책임과 결과책임, 손해배상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할 부분인 것 같다.

여 상 원 : 법률적인 것과 심리의 실질을 구별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임 위원님과 신 부장판사 말씀이 맞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53812)을 보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유추하면 포털의 영향력이 기사제공언론사에 비해 크며, 피해가 확산되기도 하는 만큼 언론사와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의 전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 내용을 구하지 못해 발제문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계

포털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검열된 기사만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결국 이용자들이 기사를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 초래 - 김은실

약상 포털은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선별하고 올리는 순서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언론사와 포털사의 책임을 같게 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 놓은 것이다. 법률적으로 맞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 실무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 은 실 (KTH파란닷컴 미디어서비스팀 뉴스파트장): 포털사는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편집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선택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포털은 언론사가 생성한 기사를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 소송이 제기되거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었을 때 포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들어오는 기사 모두 검열을 해야 하고 검열되지 않은 기사는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포털은 소수의 검증된 언론사만 선택해 계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검색 서비스에서도 많은 뉴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들이 기사를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 동 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다. 아웃 캐스트라고 해서 제목을 클릭하면 신문사 홈페이지로 가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털이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묻고 싶다.

여 상 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포털 자체에 기사를 싣는 방식, 포털이 링크만 하는 방식, 검색을 통해 기사 저장장치에서 내용을 불러내는 방식 등이 있는데 모두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포털이 기사로 가는 문을 열어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 동 훈: 뉴스 캐스팅은 기사를 직접 레이아웃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여 상 원: 포털에 올린 기사와 링크된 기사와 차이점을 들 수 있을까 의문이다. 포털 때문에 그 기사를 볼 수 있게 된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김 현 성 (NHN 법무실장):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인데, 뉴스캐스트, 네이버 홈과 같이 저장 공간에 있는 것, 검색 등이 있다. 뉴스캐스트와 검색 뉴스는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저장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에는 동의할 한다. 그러나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뉴스제공사업자에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포털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 하나 정정보도청구 알림 등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언론사로 넘어가는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 통보만 하면 되고, 저장하는 기사에 대해서만 포털이 자체적인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 상 원: 개인적으로는 링크된 기사는 포털이 알림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은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이고, 기사제공언론사는 통보를 받게 되면 피신청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17조의2에서 기사제공언론사로서 알림표시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김 현 성: 관례에서 포털이 문제된 것은 레이아웃, 활자를 크게 강조한 것 등을 편집행위로 본 것이다. 지금의 문제점은 신문사에서 틀을 만들어 보낸 것을 네이버에서 그대로 신고 있고, 클릭하면 신문사로 넘어가는 시스템인데도 네이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포털사는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점은 구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 재 일 (대전중재부 위원): 저널리즘 차원의 핵심 쟁점인 포털의 편집 책임 또는 뉴스서비스의 결과적 책임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포털에서

제목 배치 등의 편집행위를 했지만 현재는 편집을 전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클릭할 수 있는 게이트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편집이라고 본다. 다수의 독자들에게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편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포털은 자신들의 미디어 정체성을 말할 때, 언론사는 도매업자고 포털은 소매업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포털은 대형유통업자이고 언론사는 납품 업체다. 대형할인점에서 산 제품이 불량품이면 그 대형할인점에 책임을 묻지 제조업자에게 향의하지 않는다. 포털 입장에서는 단지 게재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견 모순이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이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변에는 뉴스서비스를 함으로써 얻는 공적 공신력이 크다고 본다. 결과적으로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은 정 (NHN 뉴스서비스팀 차장): 뉴스캐스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네이버는 언론사 측에 공간을 제공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하게 해 줄 뿐이고 그것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공간에 올라온 언론사의 기사를 판단하거나 게재하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정 등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하루에 네이버에 들어오는 기사가 2만 건이 넘는다. 접속자가 많아 피해확산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은 실시간 검색어 등의 노출을 통해 모니터링 되지 않은 기사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포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있겠지만, 언론사에서 전송하는 기사는 포털이 수정, 삭제하지 못하는 것

대법원 판단 방식은 헌법재판소와 달라 개별 사건마다 기준이 다 있을 수 없고, 그 사건에 대한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하급심에 판단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신용석

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점 등 포털사업자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 수 용 : 제2주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에 관한 것이다. 출판물과 관련한 명예훼손죄의 법률적인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을 하셨다. 그 범위가 넓어 약간 요약해 보면, 우선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누어 설명하셨고, 특히 형사문제에 주목해 형법 307조에 규정된 일반 명예훼손죄를 언급하면서, 이 경우에는 310조에 의해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하셨다. 반면 309조에 언급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310조의 진실성, 공익성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실성과 상당성,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취지로 발표하셨다. 또 여러 판례를 언급하면서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더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신 용 석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 비방의 목적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하고,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발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타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명예훼손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비해 손해배상을 받기 쉬운 민사사건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은 검사가 일단 한 번 걸러서 기소하기 때문에 불기소되는 사건이 훨씬 많다. 기소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민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전체 사건의 1%도 안 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30%에 해당하는 무죄율은 굉장히 높은 무죄율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사건마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개별 사건의 상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 방식이 헌법재판소와는 다르다. 개별사건마다 기준이 다 있을 수 없고, 그 사건에 대한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하급심 판결문의 살펴 봐야 한다. 이미 하급심에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준택 (SK커뮤니케이션즈 미디어서비스팀장) : 포털이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기사를 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후속보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 예로 최근 한 신문사는 자사가 보도했던 중국산 콘돔에 탈크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자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후속보도를 내보내는 등 나름대로 기사의 내용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취했다. 이처럼 언론사는 후속 보도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포털은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보도에 대한 확인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면서 일반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이 보도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포털만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린다. 포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서 수정,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상당성과 진실성, 공공성을 입증해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책임도 해당 명예훼손 소 제기자가 아니라 해당 언론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포털에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포털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뤄질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준석 (Daum 고객센터기획팀장) : 최근 피해구제에만 국한된 법개정들이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취하게 되는 임시조치에 앞서 적절한 소명이

없다보니 충분히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와 관련해서도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도 포털은 신청을 받으면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기 따라서는 옳은 기사에도 표시가 적용될 수 있고, 또 대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터져서 포털에 기사가 수백 건 전재가 되면 해당 기사마다 신청이 제기될 것이다. 대법원 가서도 반복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 이슈인데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로 인해 신청만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남용 차단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여상원 : 알림 표시는 언론중재법에 특칙으로 신설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차이점을 말하자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기사 삭제는 소명이 있어야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의한 알림표시 이행은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는 청구가 있다는 자체를 표시를 하는 것이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소명 없이 청구만으로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후진적인 해결 방법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1964년 설리번 사건 이후 각 주의 명예훼손법을 통해서도 형사적으로 문제된 경우는 5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명예훼손은 형사적인 해결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은 정서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부분도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였다. 일단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 장호순

신 것에 동의하면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점과 관련하여 진실하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은 우선 진실성을 가지고 볼 것인데 진실하다면 굳이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장 호 순 (발제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일단 세계인권단체 데이터를 보아도, 명예훼손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후진적인 것이 맞다.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가 될수록 그런 부분들을 상호토론이나 반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안 된다면 민사상의 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부장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고발이 상당히 많다. 논문 작성을 위한 판례를 준비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명예훼손 고발사례만을 모아보았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수와 진보 신문사가 갈려서 서로 고발한 경우가 많았다. 보수와 진보 그룹 간에도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선거관련 후보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고발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반론하고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고 검찰에 가서 처벌해 달라고 한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큰 차이가 없다. 법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사용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미네르바, 피디수첩 사건을 보면 결국 그 희생자가 검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을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소를 해야 하고,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한다.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절반의 국민만 수궁하고, 절반의 국민은 수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법부, 법조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에서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에 도달하게 된 사실과 법적 기준을 당사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취약하다. 그것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수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또 그러한 판결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

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했을 때, 그 기소는 부당하다 또는 적절하다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일단 위법성 조각사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적용을 해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입증이면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언론이 진실하게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하게 된다면 국가에 의해 처벌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혹시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언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의 기소를 국민이 불신하거나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개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보도를 탄압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궁극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대법원은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한 큰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판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를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게 해 주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신 용 석: 비방할 목적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한하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런데 고의라는 것과 법률적으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여서 판단하기가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다. 객관적인 사실

들은 판단하기가 쉽지만 비방할 목적, 가해할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를 넘어서 가해의 목적까지 있다고 인정하는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는 나름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목적범에서 보면 미필적 목적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확정적인 목적은 없지만 추론으로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주관적 요소이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두 사람의 관계까지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표자께서는 여러 가지 분석은 해주셨는데 비방할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은 내려주시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장 호 순: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법원에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는 진실성과 상당성만 입증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일정 정도 충분히 일관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판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진실 여부가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왜 진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어떻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설명 없이 그냥 비방할 목적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만 나오는 판례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는 다른 학자들도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964년에 미국 설리반 판결에서 나온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이 어떻게 보면 비방의 목적과 굉장히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냥 보도한다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개의치 않고 써버리는 것, 이 정도는 비

뉴스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
편집과 함께 유통에 대한 책
임까지 부과된다면 서비스
제공이 힘들게 될 것- 이재형

방할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주변상황과 같이 판단해 보면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큰 기준을 만들었다. 그것을 일관성 있고 세밀하게 각 사안별로만 적용해 준다면 일반 국민과 언론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 수 용 : 처벌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모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은 판결이 나오면 언론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대법원 판결에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발표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다.

김 상 호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입찰과 관련한 건설비리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해당 건설사를 공개하지 않고 이틀 동안 K건설로 썼다. 그러나 방송, 다른 신문에서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익명으로 써야하는가 하는 곤란함을 느꼈다.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더라도 정상참작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위안을 삼고 실명보도를 했다.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명예훼손 부분에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재 형 (Daum 미디어사업팀 차장) : 정정표기 등은 가이드 라인을 만들거나 진행 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포털같이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언론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본다. 결국 편집에 의한 여론형성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한다. 미디어 다음 뉴스서비스 쪽에서 언론사 기사를 다 볼 수 있도록 계약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80개 사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는 사실상 링크만 서비스 하고 있고, 이렇게 검색 서비스만 되는 언론사는 약 500개 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편집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80개 사와 관련된 것이다. 뉴스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여지가 없는 방식을 고안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론사의 계약

조건과 수도 달라질 수 있다.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링크 서비스만 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편집과 함께 유통의 역할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 네이버가 하는 뉴스캐스트와 다음의 열린 편집도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중점이 있을 것 같다.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가 모든 편집을 할 수 있게 프레임을 뚫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것이 단지 네이버의 탑에서 보여지는 경우이다. 다음이 하고 있는 블로그 뉴스는 이용자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기사 중요도를 따져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서비스인데 단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편집 주체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다음의 경우는 이용자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가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자체의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서비스사에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유 종 현 (MBC 영상취재부장) : 원론적이지만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과 그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서브(Cubby v. CompuServe) 사건에서는 게이트키퍼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프로디지(Stratton v. Prodigy)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여 책임을 졌다. 미국이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고, 사상의 자유시장을 만끽하는 표현의 자유 국가가 된 것은 있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마리안법(Good Samaritan)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저작권법에 온라인서비스의 책임 면책에

관한 조항이 있다. 우리는 개별법에만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법원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서 판례법으로 상당히 발전해 왔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두 미국 판례가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 용 석 : 이 자리에는 기자, 언론학자도 있고 중재위원은 기자, 학자, 판사 등의 전현직자로 구성되어 있어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다. 책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제도가 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중 책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배상밖에 없다.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 당연히 정정을 해야 하고, 반론보도는 보도 대상이 된 사람에게 반론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추후보도는 무죄판결이 난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의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포털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뉴스캐스팅 등에서 포털이 직접 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불법행위는 행위책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따져보고, 만약 링크만을 한 경우는 링크 기사 자체로 명예훼손인 경우는 당연히 포털도 책임이 있겠지만,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사를 생성한 기사제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포털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책임이라는 말을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도에 계속 쓰게 되면 의사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뉴스서비스 등이 제한된다면 결국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모든 법리적 해석이나 사회적 판단을 할 때는 이용자 입장이 우선 고려돼야 - 최양호

성 동 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협력팀장) : 질문 가운데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참고 말씀을 드리겠다. 포털에 정정보도 신청이 들어와서 뉴스 제공 언론사에 통보가 됐는데, 같은 기사를 여러 포털들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포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만들었다. 기사 제공 언론사가 포털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기사를 제공한 다른 포털들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도록 했다.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포털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통보를 받은 포털사들은 알림표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심리과정에 있어서의 피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겠다.

어 수 용 : 장시간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마지막 마무리 순서로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께서 총평의 말씀을 해주시겠다.

최 양 호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두 분의 발제와 토론에 대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다. 언론학자, 언론중재위원, 언론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포털에서 나오신 분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이니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널리즘 시각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포털은 산업적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중재위원은 법리적인 시각에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법리적인 결정을 할 때, 법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어떤 손해가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다고 한다면 포털 서비스의 모든 뉴스 검색 서비스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결국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든 법리적 해석이나 사회적인 판단을 할 때 이용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였으면 한다.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오늘 발제를 해 주신 두 분, 사회를 맡아 주신 어수용 부장님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가해 주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언론중재위원회 관계 직원도 수고가 많았다.


오늘 발제와 토론이 유익했다는 생각이다. 우선 장호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문제는 아주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너무 광범위 하게 인정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고,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소중한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취급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결국 양 쪽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의 순수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특별히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건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다. 사건 중에는 순수한 개인의 사고, 사건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너무 자주 보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도를 통해 사건을 특징을 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 보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공인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공인, 공적 관심사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보면, 공인, 공적 관심사는 전체주의 정권에서 많이 들고 나왔다.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단체의식 등, 이런 배경에서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 공익이나 공적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실무자들이 이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좀 더 소상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대법원은 사건이 너무 많다. 1970년대에 조사했던 통계를 보면 영국의 대법원은 1년에 취급하는 사건이 5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 50여 건의 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 아주 상세하게 논의가 되고 그러한 논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다. 자세한 논리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일반 국민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 본다. 둘째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비추볼 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에서는 그 이야기가 타당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사건의 내용이 조금만 달라지만 과연 그 기준이 타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이 조심스럽다. 대법원은 그러한 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명제로 제시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여상원 부장께서 언론중재법 17조의2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실무진에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작년에는 미디어 관련법들이 일괄해서 통과되지 못 했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얼마 전 일부 미디어법이 타결되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미디어 관련법에 속해 있다가 빠져나와서 올해 1월에 먼저 개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디어 관련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여야 간, 국민 간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포털 뉴스를 언론 중재와 조정의 대상으로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여야 간의 심한 대립 속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만이 따로 빠져 나와서 결국 성공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여야 대립 논란 속에서 개정되다 보니 구체적인 각론의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 17조의2 이 조문 하나만 넣고 후속 조치에 관한 조문은 빠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는 언

17조의2와 관련한 미비점은
중재위원, 실무자들의 협조
를 받아 적절한 해석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 - 위원장

론중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그리고 학계와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해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번 법이 입법이 되면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조문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제공한다. 당장 포털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컨대 포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남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소명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앞서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헌법재판소가 생겼을 때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가 두 배 이상 커졌다. 헌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헌법 관련 연구할 자료들이 많이 생겨서 헌법학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 헌법재판소 판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것은 법률학, 나가서 우리 법률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문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우리 언론학회, 언론법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언론학회 또 언론법학회에서는 좋은 연구 소재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털 사업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언론학회, 언론법학회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열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다. 토론내용은 중재위원회에서 잘 정리해서 학계나 실무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배포하도록 하겠다.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위원회는 2009년도 정기세미나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는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8월 20일에서 21일까지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여상원 서울제1중재부장이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어수용 대전중재부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 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 발 제 자 _ 여 상 원 서울제1중재부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_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 회 자 _ 어 수 용 대전중재부장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언론중재위원 _ 권 성 위원장 / 인하대 로스쿨 원장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_ 노 향 기 부위원장 /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안 병 준 서울제1중재부 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_ 박 영 규 서울제1중재부 위원 / 전) 연합뉴스 심의실장
윤 상 일 서울제1중재부 위원 / 변호사 _ 임 경 록 서울제6중재부 위원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정 결 진 대구중재부 위원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송 인 준 대전중재부 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 재 일 대전중재부 위원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신 용 식 경기중재부장 /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 광 재 경기중재부 위원 /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_ 박 석 태 경기중재부 위원 /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안 종 배 경기중재부 위원 /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_ 최 재 정 경기중재부 위원 / 변호사
한 진 만 강원중재부 위원 /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이 효 성 충북중재부 위원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 범 서 전북중재부 위원 / 전) 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_ 김 창 롱 경남중재부 위원 /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김 남 석 경남중재부 위원 /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 한국언론학회 _ 최 양 호 부회장 /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이 재 진 연구이사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정 동 훈 이사 /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 형 곤 이사 /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박 성 복 이사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특임교수 _ 유 승 현 사무국장
이 강 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김 상 호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유 재 응 울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홍 중 배 전파진흥원 연구원 _ 김 봉 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_ 이 용 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사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사 _ 김 재 익 경남신문 사회부장 _ 황 국 성 매일경제 편집국부장 _ 손 석 구 서울신문 고충처리인
양 장 호 아시아경제 온라인총괄본부 실장 _ 임 형 두 연합뉴스 논설위원 _ 이 회 성 전자신문 뉴스타방
김 상 호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_ 양 용 철 KBS 영상취재팀 차장 _ 양 민 오 KBS대전총국 보도국 기자 _ 유 중 현 MBC 영상취재팀 부장
전 영 식 TJB 제작팀장 _ 박 준 석 Daum 고객센터기획팀장 _ 이 현 재 Daum 대외협력실 대리 _ 이 재 형 Daum 미디어사업팀 차장
김 은 실 KTH파란닷컴 미디어서비스팀 뉴스파트장 _ 한 인 숙 KTH파란닷컴 미디어서비스팀 대리 _ 김 현 성 NHN 법무실장
노 은 정 NHN 뉴스서비스팀 차장 _ 이 준 택 SK 커뮤니케이션즈 미디어서비스팀장 _ 백 선 기 SK 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장
박 수 진 SK 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대리 _ 성 동 진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협력팀장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_ 김 용 주 사무총장 _ 장 원 상 연구본부 부부장 _ 심 영 진 정책연구팀장 _ 권 오 근 홍보팀장 _ 양 재 규 조사팀장
구 율 화 법무상담팀장 _ 김 문 성 대전사무소장 _ 여 중 국 정책연구팀 차장 _ 김 주 용 정책연구팀 차장 _ 최 명 진 정책연구팀
이 진 아 조서팀

※ 참석자 총원 : 67명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I. 프롤로그

마야흐로 2008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10억 명을 넘어섰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6.5%이고,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36,190,000명이며,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78.4%로 나타났다.¹⁾ 헌법재판소의 실시처럼, 인터넷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쌍방향성을 지닌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면서 익명성과 전파성을 보유한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까닭에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사상의 자유로운 장²⁾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³⁾

이 민 영

-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성균관대 법학박사
- (사)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 전, 정보통신부 법률자문위원

인터넷이란 웹(World Wide Web; WWW)으로 상징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인터넷은 LAN과 같은 소규모 통신망을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08, pp. 19~31.

2) 사상의 공개시장론(the rationale for open marketplace of ideas)은 John Milton이 영국 정부의 출판검열조치에 반발하여 1644년 검열을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출판한 「Areopagitica: A Speech of Mr. John Milton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 to the Parliament of England」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그는 진실과 거짓이 맞붙어 싸우게 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하기 마련이므로 정부의 언론통제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공개시장 개념은 1919년 Abrams v. United States 사건 판결에서 “한 사회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보다 쉽게 ‘최고선(ultimate good)’에 도달할 수 있으며, 진리(truth)는 사상의 공개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한 사회의 모든 바람은 진리라는 토대 위에서만 안전하게 성취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논리이다.”라고 역설한 Holmes판사에 의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원리로 도입되었다.

3)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판례집 14-1, pp. 616, 632.

상호 접속하는 형태에서 현재는 전 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통신망의 집합체로 발전되었다.⁴⁾ 이러한 인터넷에는 PC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으며,⁵⁾ 실제의 관리와 접속은 세계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전자우편(e-mail), 파일전송(FTP), 인터넷 정보검색(Gopher), 하이퍼텍스트 정보열람, 온라인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이나 음성정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역무가 차례로 개발되어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매체역무(media service)와 풍부한 정보자원 때문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 부른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을 위시하여 정보통신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각종 정보의 취급이 확대된 오늘날 이러한 현대 정보사회⁶⁾가 안겨주

는 사이버스페이스⁷⁾의 편리함 이면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부작용이 결코 방지될 수만은 없는 현실세계가 엄연히 공존한다. 그러기에 바다를 이루는 인터넷의 정보가 불법적인 경우 기존의 형사법적·민사법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었으며,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하여 특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역기능의 예방과 제거에 관한 제반논의가 입법적으로 뒤따르게 된다.⁸⁾ 그 가운데 하나로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와 행태를 들 수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영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격이나 능력에 대한 비방을 통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지위에 피해를 준다는 개념인 명예훼손⁹⁾이 성립할 경우 구두명예훼손(slander)이 아니라 서면명예훼손(libel)¹⁰⁾에 해당하

- 4) 인터넷은 1969년 미국방성 DARPA(Department of Defence's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지원으로 미국의 4개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ARPAnet을 기원으로 한다. 당초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지만, 통신규약인 프로토콜로서 TCP/IP를 채택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ARPAnet과 군용의 MILnet으로 분리되어 현재의 인터넷 환경의 기반을 갖추었다. 한편 미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서도 TCP/IP를 사용하는 NSFnet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망을 1986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듬해 ARPAnet을 대신하여 근간망(backbone network)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이리써 인터넷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때부터 인터넷을 상품광고 및 상거래매체로 이용하는 상업적 이용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정부지원으로 운영하는 NSFnet은 그 성격상 교육 연구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터넷사업자들은 별도의 협회를 구성하여 1992년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라고 하는 새로운 근간망을 구축하여 상용인터넷에 접속하게 되었으며, 미국의회가 NSFnet을 상용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인터넷통신이 출범하게 되었다; See e.g., Howard Rheingol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93, pp. 70-74.
- 5) 인터넷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ISOC(Internet Society)가 있으나, 이는 총괄 관리기구가 아니다.
- 6)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란 '정보를 생산도구로 하여 재화나 역무 혹은 정보 및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정보 가치가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 See generally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1995, pp. 15-21.
- 7)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란 이용자들이 쌍방향적인 소프트웨어로 가득 찬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만든 가상환경을 의미한다; See William Gibson, *Neuromancer*, New York: Ace Books, 1984, p. 67.
- 8) Jessica L. Chilson, *Unmasking John Doe: Setting a Standard for Discovery in Anonymous Internet Defamation Cases*, 95 Va. L. Rev. 389, 389-390 (2009).
- 9) Paul Siegel, *Cases in Communication Law*,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8, p. 43;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 10)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defamation)은 인쇄된 표현에 의한 훼손인 libel, 비방·연설·회화 등 구두표현에 의한 훼손인 slander로 나뉜다. Libel 피해가 일반적으로 더 크게 보상되는데, 글로 쓴 비방이 말로 한 비방보다 오래 남고 널리 전파되는 등 더 치명적으로 인식되고 즉흥적으로 내뱉기 쉬운 말보다 글이 더 고의성이 높다는 인식도 있다; William R. Bobbitt, *Exploring Communication Law*, Boston: Pearson Education, 2008, pp.106-108; Michael G. Parkinson & L. Marie Parkinson, *Law for Advertising, Broadcasting,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Philadelphi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6, p.260; Wayne Overbeck,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Mason: Thomson South-Western, 2005, pp. 114-116.

게 된다.¹¹⁾ 여기서 명예란 ①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 명예, ②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인 내적 명예, ③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일컫는 명예 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에서의 명예는 외적 명예를 의미한다.¹²⁾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으로는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다. 환원하자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제재와 구제 등에 있어서 이들 현행 법이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현행 법제도가 노정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 헌법적 가치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와 개인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이중적 잣대로 인한 권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당사자 상호 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개인의 게시물은 일방적 게시중지 등이 가능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터넷 언론 등에서 퍼나른

보도 내용이 개인 블로그에 게시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하고 있지만 내용상 출처는 언론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법률이 오히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저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인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지향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포털사이트의 경우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의성은 크다 하겠다.

II. 제도개관

1. 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가.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즉 인터넷공간¹³⁾에서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를 범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형사책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Gerald R. Ferrera, Stephen D. Lichtenstein, Margo E. K. Reder, Robert C. Bird, & William T. Schiano, *CyberLaw: Text and Case*, Mason: Thomson South-Western, 2004, p. 345.

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KISCOM 신고상담 08-1, 정보통신부, 2008, p. 3.

13) 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 인터넷을 포괄하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법률이 오히려 명예훼손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저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지향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

(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제70조에서 별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③ 위 각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9조¹⁴⁾로는 인터넷 명예훼손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특별법상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 것인바, 정보보호법 제70조는 형법 제309조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으며,¹⁵⁾ 따라서 형법 제309조가 규율하고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보호법 제70조의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법리적 차별

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즉 인터넷 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바, 특히 퍼나르기에 의한 명예훼손의 확산은 일반적인 현실공간의 범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공간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변조물 등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순식간에 이를 본 네티즌들에 의하여 퍼나르기 등 불법행위를 통한 피해의 확산이 견잡을 수 없이 지속되어 어떠한 구체책으로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¹⁶⁾ 그 근원에는 ① 이용자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적·정치적 보복에 대한 염려나 사회적 지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할 수 있는 반면 이용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심리적 부담 없이 쉽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익명성(anonymity),¹⁷⁾ ②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5월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5,877,395명에 이르고¹⁸⁾ 그 신속성과

14)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6) 정 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p. 169.

17) 익명적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공개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하지만, 반면에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그 남용의 위험을 생성하게 된다; Jessica L. Chilson, supra note 8, at 395.

18)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http://isis.nida.or.kr>) 조회 결과.

시·공간적 무제한성 및 엄청난 파급력을 보유한 인터넷의 특성인 전파성(transmittability)이 인터넷 명예훼손을 특징짓는 징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특질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즉, 인터넷 명예훼손이 ① 가해행위로서 명예훼손행위가 행해졌을 것, ② 명예훼손행위가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되었을 것, ③ 명예훼손행위가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것, ④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은 민법에 따르며,¹⁹⁾ 이에 대하여는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의한 분쟁조정이 구제방안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나. 인터넷 권리보호

정보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제44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²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의 입법정신이 투영된 것이며, 또한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가져오는 표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법은 이를 정점으로 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구조화하고 있다.²¹⁾

19) 특히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는바, 따라서 인터넷상 적시된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피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르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 물론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정보보호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인 이용자에 대하여도 표현의 자유가 갖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있다.

21)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에 한정하여 논의하려 한다.

다. 정보 삭제요청 등

정보보호법은 제44조의2에서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혹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 조치'라 한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²²⁾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아울러 정보보호법은 제44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임의조치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의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불법정보 유통금지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은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명예훼손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³⁾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²⁴⁾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의견제출이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2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법 제44조의2 제6항 참조.

23) 다만, 해당 명예훼손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정보보호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

24)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보호법 제73조 제5호.

적으로 법률 제8867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더불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같은 법을 근거로 설치되었는바, 그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①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②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③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의 법적 성질은 이를 둘러싼 법제구조를 파악하는 데 핵심사항이 된다.²⁵⁾ 다만, 여기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가운데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만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며,²⁶⁾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과 같은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명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법 제44조의10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33조의2 제2항, 제35조부터 제

25) 즉, 방송통신심의의 성격을 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작용법적·조직법적·절차법적 기제를 해석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합치적 규제법제의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단초로 중요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이에 대하여 검열은 금지되는 것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여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 헌법이 제21조 제2항에서 허가나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록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여도 결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위반이 되어 그러한 법률은 효력이 없게 되지만,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표현의 내용에 관한 것이 바로 내용규제라 할 것이다.

26)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었다.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다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

39조까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²⁷⁾ 명예훼손분쟁 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²⁸⁾

결국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벌이 부과되는 형사적 국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²⁹⁾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해지 등과 같은 시정요구의 심의결정³⁰⁾ 그리고 심의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불법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행정명령과 같이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함께 취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지만,³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44조의4에 따라 자율규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가. 언론 등의 언론보도와 그 매개

지난 2005년 1월 27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같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27) 이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정보보호법 제44조의10 제3항.

28) 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3호로 개정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41호로 개정된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존재한다.

29) 심의의 개시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이용자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정보보호법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심의규정 제11조 제1항 참조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없음, 시정요구, 청소년유해정보 확인·결정 및 결정취소, 심의중지, 그 밖에 필요한 결정 가운데 선택적으로 심의결정을 한다.

31) 이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바, 그 법적 의의에 대하여는 류승훈,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발전과 그 의미, 언론중재 제29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09, p.6~23. 참조.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해당 분쟁에 대한 구제 범위를 ‘언론보도의 매개(媒介)’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어 법률 제9425호로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언론보도라 한다. 그리고 언론이 아니면 서도 언론중재법상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매개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³²⁾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하며,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천명하고 있다.

나.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보

32) 인터넷신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는바,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부³³⁾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한편,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III. 발전방향

1. 규범적 현황 검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보호법과 언론중재법

33) 언론중재법 제9조 (중재부) ① 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관련 제도에 있어서 차별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을 사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일간신문인 B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한 'B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홈페이지에 이에 찬동하는 A가 게재한 게시물의 경우 피해자인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³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³⁵⁾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³⁶⁾ 이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형사특별법규인 정보보호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인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

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지녀야 하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³⁷⁾ 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³⁸⁾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한 상태³⁹⁾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정당화시킬 만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측면을 특히 언론보도 등에 적용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 제5조 제3항이라 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법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에 관한 논의와 연결할 개연성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E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운영자 D에 의해 게시된 정보가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회

3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35)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체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 2824 판결.

3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3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38)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39)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40) 물론 이는 허위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 참조.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식적인 임시조치 남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원 C의 고충을 호소하는 전자우편 내용인 경우나 H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중소기업체 대표 F가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의뢰인 G가 작성한 경우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가 다를 뿐 인터넷 명예훼손에 의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C와 F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포털사이트 E와 H에 대해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E와 H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혹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C·F 및 D·G에게 알려야 하는데,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실질적 성립과는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식적인 임시조치 남발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문제된다.⁴¹⁾ 게다가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원의 중국적 판단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불법성을 판별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하므로 대중적 평가의 차단을 초래하고 사상의 공개시장론에 배치된다 하겠다.⁴²⁾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는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척도가 될 것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며,⁴³⁾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해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지만,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의 경우가 아닌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그 인용 여부를 판가

41) 정당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예방하는 것이 명예훼손 사건의 해결을 위한 기준의 개발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이념은 자유롭고 공개된 담론으로 사상을 표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이 부족할 때에 비로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Jessica L. Chilson, *supra* note 8, at 417.
42) 이로써 정부의 개입에 따른 위축효과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자유로운 표현체계의 핵심이 되는 전자정보매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See Laurence H. Trib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in the 21st Century: New Technology Meets Old Constitutionalism*, Progress on Point 07-09, Washington, DC: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2007, p. 4.
43) 이에 대하여는 拙稿, 방송통신심의의 성질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pp.785-810. 참조.

름하는 기체가 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적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도 해당 명예훼손정보의 삭제 등을 신청하는 조정절차에서는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인용으로 귀결되는 언론보도 등의 정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만을 조율대상으로 삼게 된다. 다만,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분쟁조정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송신 받아 게재한 기사가 J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판례는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

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⁴⁴⁾ “포털사이트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 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포털사이트운영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여⁴⁵⁾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포털사이트의 언론매체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인터넷신문과 구별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제17조의2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44)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45)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I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므로 J는 법정기한 내에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기사내용이 I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J·I 또는 기사제공언론사는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⁴⁶⁾ 즉, 기사제공언론사의 원정보(原情報)에 따른 명예훼손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민사적 대처에서는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무관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이나 전자우편 제공 등의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은 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가릴 수 있을 뿐이고 언론보도 등과 같이 해당 정보의 진실 여부에 따른 정정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형사적 대응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다루어진다.

2. 정책적 과제 논의

정보보호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은 아니면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명예훼손행위의 주체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일 때 그 법적 책임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절차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부의 중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한 중재도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관련 신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합목적적으로 제도적 이원화를 이룬 법적 방책이 구제대상자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타개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응하는 피해구제방안의 개발도 명예훼손 예방정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⁴⁷⁾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단초를 언급해 본다.

첫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또는 신청의 이송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6)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법은 기존 언론뿐 아니라 포털 뉴스와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인 A씨와 B씨가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네이버 등 5개 인터넷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S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표현만을 수정한 뒤 계속 보도하여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에 일제히 게재됐다. 기자협회보 2009년 8월 20일자 기사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4>>.

47)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David Grant, Defamation and the Internet: Principles for Online Defamation Law, Journalism Studies Vol.3 No.1, Routledge, 2002, p. 128.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원용할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나 포털사이트가 주는 인터넷으로서 특성에 착안하여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정보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의도치 않게 피해구제로부터 격리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각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 또는 신청을 이송하도록 하는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면 역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관할의 인터넷 명예훼손 역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일창구(同一窓口; single window)의 발상을 생각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각각의 조정신청할 대상 행위가 어떤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위원회에의 적합한 조정신청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 권리침해에서 피해구제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침해신고와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건대, 특히 인터넷 인격권침해에 대하여는 기관 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므로 피해구제네트워크를 핫라인(Hot Line)으로 활용하

는 다각적 검토가 명예훼손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 역기능 방지와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신속한 가구제(假救濟)를 피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假處分)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므로 명예훼손피해에 대한 구제로 충분치 못한 반면에 인터넷 명예훼손은 급속한 파급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판단컨대, 정보보호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반박내용의 게재가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정보에의 차단과 같은 임시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즉시 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가구제로서 반박내용의 게재는 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선행적 요소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성으로 인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권과 같이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반론권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⁴⁸⁾ 또한 반박내용 게재에 대한 상대방의 재반박내용의 게

48)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외에서 해결하지는 것으로 언론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지는 것이다; 이재진,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한나래, 2009, pp. 268~270.

관할 위원회에 적합한 조정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권리침해 피해구제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침해신고와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제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상의 자유시장인 인터넷에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구조적 체제를 절차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가구제의 필요성은 저감될 수밖에 없으며,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⁴⁹⁾ 하는 언론보도 등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 운용되는 일반적 기능에서와 같은 정보 전파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보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IV. 에필로그

최근 네티즌(Netizen)과 매카시즘(McCarthyism)의

합성어인 ‘네카시즘(NeCarthyism)’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대판 마녀사냥이 인터넷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것이 현실인바, 인터넷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침해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회복불능의 치명적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법적 대응의 요청도 그 까닭에서이다. 그리하여 온라인 폭력을 일삼는 이용자 개인의 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⁵⁰⁾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승인하기에 이르는 형국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의 경계(boundary)인 인터넷은 무수히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이므로 이로써 매개되는 정보제공으로 말미암아 정보수용자는 적극적으로 표현행위를 주고받을 수 있어 공론의 장이 획기적으로 실질화되는바,⁵¹⁾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가운데 특히 인터넷의 관문(gateway)으로 여겨지는 포털(portal)의 경우 그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⁵²⁾

전통적으로 명예훼손법리에 관한 논의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4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참조.

50) 여기서 인터넷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제반의 직무(役務), 즉 ‘Service based upon Internet’을 포괄하여 이해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회선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검색, 인터넷 대화와 토론, 전자게시판, 온라인 게임·음악, 전자상거래,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근간으로 하여 제공되는 제반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용어라 하겠다.

51) Thomas C. Folsom, Defining Cyberspace: Finding Real Virtue in the Place of Virtual Reality, 9 Tul. J. Tech. & Intell. Prop. 76, 81-84. (2007).

52) 이에 관한 규제법적 검토에 대하여는 拙稿, 인터넷포털 규제입법의 현황과 과제, 인터넷법연구 제5권 제1·2호 통합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8, pp.133-152, 언론법적 측면에 대하여는 강경근,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108호, 언론중재위원회, 2008, pp. 33-44. 참조.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변화·발전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돌되는 기본권적 가치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은 그 특유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법적 정의를 무시하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현행 정보보호법은 제44조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함으로써 명예훼손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포털사이트운영자에 대한 주의의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욱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존에 조리상으로 인정되던 작위의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에 따른 포털사이트운영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의 관건은 그 범위가 될 것이다. 여기서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이 없는 경우는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포털사이트운영자에 대한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보의 유통을 인식하는 동안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그 책임범위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법률상의 주의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

는 만큼 귀책사유와 결과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제한적으로나마 불법행위책임을 감수함은,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과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의 존재에 비추어 포털사이트운영자의 영리적 행위와 비견되는 타인의 권리침해의 이익형량에 관한 문제라 하겠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의 개념 정의와 분야별 서비스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법적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의 강화에의 특별법적 요인이 파악될 경우 법리에 충실하게 법규를 신설해야 할 것이며, 행정규제에 있어 현행법의 체계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자칫 중복규제로 과잉규제를 야기하거나 오히려 규제 공백으로 인한 입법불비를 양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적절한 규제내용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 때 명실상부한 법적 책임 제고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사법판단 이후⁵³⁾ 확산된 포털사이트에의 규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와의 이익안배가 요청되는 사업자의 권익보장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인 것이다.⁵⁴⁾ 이와 같은 논의는 인터넷포털 관련 중사자 역시 기본권주체로서 국민이며 그 영업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과 함께 법정정책학적 검토에 있어서도 적정규제에 따른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적법절차원리의 투영이라는 이념적 원리가

53) 서울중앙지법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그 평석으로는 拙稿,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1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pp. 1~23. 참조.

54) Douglas W. Vick & Linda Macpherson, Anglicizing defamation law in the European Union, 36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33, 933-955 (1996).

적용되어져야 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⁵⁵⁾ 다만, 제공서비스의 기능과 관련하여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언론기관에 준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반면, 언론에 준하는 지위에 놓여있지 않는 포털사이트운영자의 경우 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부에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여 행정조사에 응해야 하며,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그 받은 사실을 공표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

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행정지도의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바, 결국 언론적 기능 보유 여부에 따른 실질적 평가에 따라 적절한 규제와 책임이 분배되고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포털사이트운영자는 그 기능과 무관하게 인터넷의 산업적 측면에서 별도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선상에서 기능적 분산에 따른 고려를 총합적 조율이 가능한 방향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도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55) 오늘날 많은 법규는 정책 자체의 표현이기도 하고 정책의 시행을 보장하는 방편이기도 하며 정책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바, 법제도의 시행, 문제점 발견 및 모순 제거, 사후대책의 수립 및 그 영향의 평가 등에 걸친 법정정책의 결정과정에서는 인터넷포털과 관련된 규제현황의 파악과 그 변용에 따른 변화의 판단으로서 법정정책이 헌법합치적인 적정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곧 현재까지 논의되어진 인터넷포털의 부작용에 대하여 입법적인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의에서 관련입법에 대한 정책결정이 인터넷포털이 함유하는 매체적·기능적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형성되어 실효성 있는 법집행으로 매개되어야 함 역시 헌법상 설정된 통치권력 통제와 그 제를 같이 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총괄적 입법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본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과 과제

권혁남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에 공포되고,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6월 24일 전주에서 전북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남 전북중재부 중재위원이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본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황현찬 중재부장(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이 생성해내는 가상공간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과정에 중간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가공되지 아니한 생생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거의 없으며, 쌍방향의 정보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독자와 기자의 구별도 모호하고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진실성과 그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문체가 난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을 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능력 또한 기존의 매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매체로 인터넷이 거론되는 것이다.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에서만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일간지 형태의 언론이라고 규정되는데, 언론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대체로 주류 인터넷언론, 인덱스형 인터넷언론, 독립형 인터넷언론, 토론/페러디형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주류 인터넷 언론은 뉴스 생산과정을 거친 기존의 기사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인덱스형 인터넷언론은 이런 기사를 매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뉴스 생산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기존 언론과는 다른 독특한 뉴스 생산 및 뉴스 수용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독립형 인터넷과 토론/패러디 유형의 인터넷언론을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인터넷이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가능성 못지않게 그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을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한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인터넷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돼 왔다.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포털사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양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09년 2월에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게 된다.

2.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지난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해 절반의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 언론중재법이 안고 있던 언론 자유의 침해 요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기존 법제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속에서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개정 언론

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추가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에 의한 수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닷컴 사이트 게재물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기업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기존 매체 이용자를 능가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함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격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해당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행위를 추가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터넷 공간의 뉴스생산과 유통 현황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구조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수하다. 세계적으로 신문사나 방송사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프라인상에서 언론활동을 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사들이 등록된 것만도 1천 3백여 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8백여 개나 된다. 또한 인터넷 뉴스 유통에서 인터넷신문과 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가 포털사이트에 의존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국만의 현상이다. 인터넷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들이 많게는 100개 이상의 언론사에게서 기사를 공급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해 인터넷에서 주된 뉴스 유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공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인터넷 공간의 뉴스생산 측면에서는 뉴스품질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뉴스유통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향후 과제

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을 포함시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위상과 행위를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위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등록, 독자의 권리보호, 교육, 피해구제, 정정보도, 기사 보관의무 등 기존 언론에 요구되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보다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에 개정된 언론중재법과 기존의 신문법에서 그간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포털 등의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이 제공하던 뉴스서비스가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개념화되었지만, 언론사닷컴을 비롯한 여타 언론사들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았다.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법 규정 내에 포함되어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백 없이 규정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문법 제2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언론사닷컴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취재인력 2인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30% 이상의 기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다 언론사닷컴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보관의무 부여는 해당 언론과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관의 대상이 되는 기사원본의 경우 당연히 보관되어야 하고, 이미 보관되고 있지만, 배열기록의 경우 보관방식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시 필요한 영역에 한정시켜 보관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영역에서 지원 등 부담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적용해서 언론사들과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큰 과제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전통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진(2008)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조정 신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게재 시간문제-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 조정 성립된 30건 중 절반이 넘는 17건이 13~24시간이었다. 이외 24시간, 48시간, 72시간 초과 등도 있었다.


(2) 게재 위치-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에 저장된 원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한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없었

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딕체냐 또는 명조체냐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반론보도문의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

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기사 삭제 요청-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토 론

사 회 황 현 찬

전북중재부 중재부장 /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황현찬(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를 해주신 권혁남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새전북신문 편집국장) : 뉴스생산자와 뉴스유통자간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퍼져나가게 되는데 뉴스 생산자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결정시 뉴스 생산자와 뉴스 유통자 간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인과 공적 사안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순(부안저널 대표) : 언론중재법은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물론 언론사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도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언론관련사건은 제소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하거나, 법원에 제기된 언론관계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받은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신청인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위원회 결정을 이행했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 존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혁남(발표자, 중재위원) : 언론사와 유통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중재부도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루었지만 생각보다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자와 유통자 간의 책임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공인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연예인들도 자신이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공인은 선출직이나 임명직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위원회 선심위 결정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위원회의 결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원회 결정이 번복되었다고 하여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나 법원 결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강현구(전주 경실련 집행위원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의 처리결과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각종 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위원회의 인용률이나 조정률이 대체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중재위원회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혁남 : 2009년 6월 현재 피해구제율이 7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7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피해구제율도 중요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녀간 언론인들은 기사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히 보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예방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전북지방경찰청 홍보계장) : 개정된 언론중재법에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문제될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구제를 받기까지 해당 기사는 계속 떠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되고 구제의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긴급구제가 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현찬 : 정보통신망법에 임시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통신망의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인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것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박주현(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 지역신문과 제휴한 거대 포털 사이트들이 선정적인 기사 제목만을 골라 노출시킴으로써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역신문과 포털 간의 책임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운국(전주지법 부장판사)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보도물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의 댓글이나 게시판 내용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6개월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문화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자는 보관의무를 면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뉴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의 댓글이나 무분별한 게시물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성(위원장) :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발제자,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사회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포털사이트에 대한 지위는 법 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로 언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인터넷언론의 등장으로 기존 매체와 달리 피해가 큰데, 피해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는 중재부를 증설하고 당직 중재부나 상설 중재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토론 중에 뉴스생산자와 유통자 간의 책임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경우 두 주체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자가 되므로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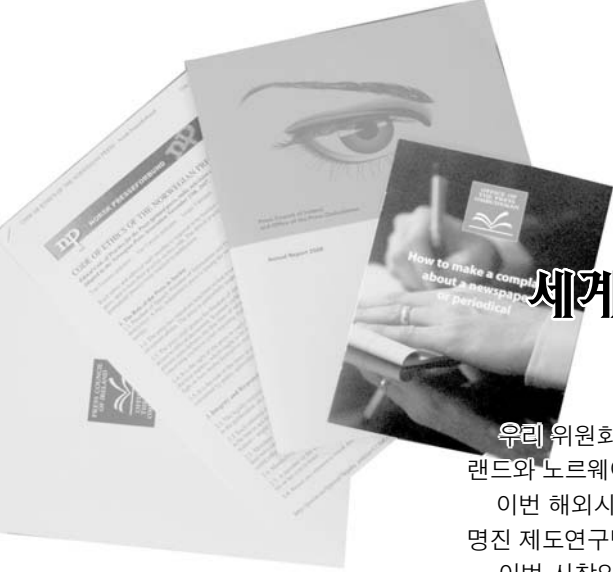
아직 판결로 정리된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중재부가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두 주체 간 책임 분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기준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례가 집적된 후 규정화하여 적정 분배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거나 법원이 언론분쟁사건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논의된 적이 있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최근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사건을 회부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이 법원의 판결액보다는 소액입니다. 언론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의 언론피해구제기구를 가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시찰보고서

우리 위원회는 해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파악과 사례연구를 위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언론피해구제기구를 방문했다.

이번 해외시찰은 권성 위원장과 함께 장원상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본부장, 최명진 제도연구팀 직원이 수행했으며, 방문기간은 7월 8일부터 16일까지였다.

이번 시찰의 목적은 최근 치열한 논의 끝에 언론피해구제제도 운영의 첫 걸음을 떼게 된 아일랜드의 사례와 아직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노르웨이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돌아봄으로써 개정 중재법에 따른 제도 운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시찰단은 아일랜드 언론평의회와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방문했다.

‘운영 2년차 맞은 아일랜드 언론옴부즈맨, 제도 정착 위해 순항 중’



1.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및 언론옴부즈맨

(Press Council of Ireland & Office of the Press Ombudsman)

가. 조직 및 구성

아일랜드 언론옴부즈맨은 2008년 1월 처음 설립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아일랜드는 언론피해구제 기구의 설립을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당시 법무장관이 전문가 그룹에 의뢰한 정부 주도의 언론규제 제도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율규제 기구 설립 논의가 촉발되었다고 한다), 약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아일랜드는 2007년 7월 신문평의회(Press Council of Ireland)를 먼저 설립하고, 그 소속 기구로서 언론옴부즈맨을 출범시켰다.

아일랜드 언론산업계는 언론피해구제 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로서 우선 언론사 운영자, 편집인, 잡지 출판인, 기자노동조합 등의 합의를 통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언론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써 언론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사생활 존중 등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될 기구의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기구 현황 및 자료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언론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 제도를 향후 설립할 위원회의 모델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기구 설립에 나서게 되었다.



권성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를 방문, Thomas N Mitchell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양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간담을 나누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신문평의회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독립성과 투명성으로 보고, 언론산업계에서 독립적 인사들로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시 임시 조직인 4인의 임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임명위원회 위원 공모 광고를 내고, 이를 통해 위원을 선정,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임명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7명의 신문평의회 위원(위원장 포함)을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신문평의회 결정의 시각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언론계 인사 6명이 포함되어 신문평의회 초대 위원 13인이 첫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언론계 인사는 신문협회가 추천한 3인, 지역신문 및 인쇄협회가 추천한 1인, 정기간행물 발행인협회가 추천한 1인, 기자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신문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나. 역할 및 위상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의 언론피해 구제 관련 업무는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한다.

언론옴부즈맨(The Office of the Press Ombudsman)은 접수된 불만 중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신문

평의회에 그 조사를 의뢰하지만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

언론옴부즈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문평의회가 재심을 맡아 진행하게 되며, 신문평의회 재심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나 불만 신청인이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고 법률적인 절차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평의회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¹⁾

다. 실천요강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는 실천요강은 10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Pinciple 1	진실과 정확성
Pinciple 2	사실과 의견의 구별
Pinciple 3	공정성과 정직성
Pinciple 4	권리의 존중
Pinciple 5	사생활
Pinciple 6	취재원 보호
Pinciple 7	법정보도
Pinciple 8	증오 유발
Pinciple 9	어린이
Pinciple 10	언론옴부즈맨 결정의 게재

1) Thomas N Mitchell 위원장은 언론옴부즈맨이나 평의회 결과에 불복하고, 다시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는 언론사는 결국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태용 아일랜드 대사, 권성 위원장, Thomas N Mitchell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의장

라. 활동 및 결정

신청인은 신청서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가 실천요강 중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정확히 지목하여야 하며, 불만 대상기사는 보도된 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불만신청인은 불만을 신청한 이후 우선 해당 언론사 편집인에게 자신의 불만 제기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거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격적인 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관(Case Officer)이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유도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언론옴부즈맨의 최종결정을 위한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홈페이지 상에도 공개된다.

실질적 피해구제(조정 또는 결정)가 되는 사건의 4분의 1 정도는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해결된 사건은 특별한 결정문을 쓰지 않고 종결된다.

언론옴부즈맨 활동 첫 해인 2008년 접수된 불만건수는 327건이며 25건의 재심 신청이 있었다. 재심 신청 중 14건은 불만신청인이, 11건은 해당 언론사가 신청했으며, 이중 20건은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5건 중 3건은 언론옴부즈맨의 처음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었고, 1건은 부분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조사관이 우선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유도, 조정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언론옴부즈맨의 최종결정 절차로 이관

아일랜드 언론옴부즈맨 2008년 사건 처리 현황

(2008년 12월 31일 기준)

	분 류	건 수
계류중	언론사 우선 협의 중	28
	조정 중	12
	결정문 작성 중	1
종 결	기 각	26
	조정성립	12
	취 하	11
	소송진행으로 결정 유보	6
	결 정	35
	언론평의회 이첩	2
	2008년 이전 기사	37
각 하	당사자 아님	17
	다른 규제 기관 관련	13
	기간 도과	9
	기 타	5

결과가 반복되었으며, 언론옴부즈맨의 결정이 완전히 반복된 사례는 1건이었다.

마. 남겨진 과제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은 활동 첫 해를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받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재심 신청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인 언론관련 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회복의 효율성을 충분히 실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신문평의회가 재심을 받아들이는 사유는 세 가지로 첫째, 언론옴부즈맨 결정 이후 새로운 정보의 발견, 둘째, 언론옴부즈맨 결정에 절차상 실수가 있는 경우, 셋째, 실천요강의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이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유연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한다.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은 신문평의회 가입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언론불만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신문사 및 출판사 대부분이 언론평의회 내부 조직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모든 신문사,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언론보도 불만 사항을 신문평의회 및 언론옴부즈맨 제도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하여 언론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신문평의회와 역할 강화를 담고 있는 명예 훼손 법안의 의회 통과가 계속 유예되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 새로운 법안에는 신문평의회 결정의 법적 인정 문제, 모든 언론사 및 출판사를 신문평의회 회원으로 포섭하는 유인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 언론협회 내년 100주년 맞아 ... 언론불만처리제도는 모범 사례로 평가



2.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 (Norwegian Press Complaints Commission)

가. 조직 및 구성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의 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독려하기 위해 1929년 노르웨이 언론협회(Norwegian Press Association)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협회

의 하나의 부속 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언론협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²⁾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총 7인이며, 언론인 4인(편집인 2인, 기자 2인), 일반인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출은 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에서 2인씩 각각 추천하고,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중 사무총장이 추천한 3인을 언론협회가 최종 임명한다.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협회 사무총장은 언론협회 이사회에서 임명된다.

2) 언론불만위원회 Per Edgar Kokkvold 사무총장은 “조직 구조로 볼 때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협회의 한 기구이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언론협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방문한 시찰단.
Kokkvold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현직 언론인과 비언론인으로 구성된 의원들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언론인 4인, 비언론인 3인으로 구성. 언론인은 현직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이며, 비언론인은 신학자, 교수 등이 주로 맡아

특이한 점은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언론인 4인 모두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라는 점이다.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비언론인 위원으로는 신학자, 교수 등이 주로 임명되고 있다.³⁾ 위원들은 모두 비상근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⁴⁾ 7인의 위원 중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론계에서 위원장이 나올 경우 비언론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반대로 비언론계에서 위원장이 나올 경우는 언론계에서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언론협회는 1910년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게 된다.

협회는 미디어 소유주, 편집인, 기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의 윤리적, 직업적 기준을 감독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공적 정보에의 접근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협회와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산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 편집인과 기자들에 의해 주로 운영되며,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의 5분의 4 정도가 언론산업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 역할 및 위상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자율적 규제 기관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관련 불만 사항을 다루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방송관련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1945년 설립되어 활동했으나(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졌었다고 한다) 기능적 약화로 인해 1990년대에 폐지되고, 1994년부터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방송관련 불만 사건까지 맡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노르웨이에서는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정부기구를 설립하자는 논의

3) Kokkvold 사무총장은 현직 언론인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언론 쪽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형식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운영 경험으로 볼 때 언론인과 비언론인의 의견차 보다는 남성과 여성 의원들의 의견차가 주를 이루었다”며 “다른 배경에 의한 차이에 비해 언론인, 비언론인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Kokkvold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4) 평균적으로 6년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한다.

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자율 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 윤리강령

노르웨이 언론의 윤리강령은 1936년에 처음 마련되었다. 윤리강령은 언론이 국가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궁극적으로 민주국가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 바탕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언론의 권리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다. 윤리강령은 언론협회 이사회에서 채택·수정되며, 윤리강령은 모든 미디어와 언론인들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윤리강령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아홉 차례 수정되었고,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윤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라. 활동 및 결정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접수 사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당 사안의 위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위반’, ‘주의’, ‘해당 사항 없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언론사가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 및 시간에 신속하게 결정 내용을 게재 또는 보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벌금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지는 않는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8년간 언론사가 위원회의 중국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단 11건 밖에 없을 정도로 위원회 결정의 권위는 존중받고 있다.

2008년 언론불만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277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147건은 간결하게 기각·합의 등으로 처리가 되었고, 130여 건에 대해서는 온전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결정 사건 중 60건 정도가 신청인의 불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언론사에 사과명령 등이 내려졌다. 불만신청은 언론보도 등이 있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은 양당사자 모두가 할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연도별 사건 처리 현황

분류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처리건수	186	165	184	158	133	188	231	222	216	188	179	261	261	247	294	277
심의결정안수	76	91	92	83	77	110	127	132	134	123	113	155	146	134	165	130
강령 위반 결정	45	45	34	39	33	40	51	52	48	41	55	64	48	49	75	57
부주의 결정	6	5	7	8	3	5	13	7	7	10	7	7	16	6	6	3
기각	44	42	51	36	41	66	63	72	79	72	51	84	82	79	84	70
간결 처리 5)	43	22	15	15	3	17	20	23	31	21	29	41	53	56	66	71
합의 · 취하	19	19	37	30	38	43	42	34	30	31	24	36	32	35	40	49
각하	40	32	40	30	15	18	42	33	21	12	13	29	30	22	23	27

5) 그간의 심의 전례 등에 의거해 사무처에서 위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7인의 위원 중 누구라도 반대를 할 경우 다시 위원들의 전체 심의를 거치게 된다.

수 있다. 그러나 재심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심리는 일 년에 11회 정도가 열리고 있으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에는 불만신청인과 언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심의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 심의로 진행된다.

마.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우리 시찰단 일행에게 자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와 언론 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준 Kokkvold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공적 사안에 대한 알권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예로서 노르웨이 언론은 국회의원의 성 관련 스캔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국회의원 자신이 내걸었던 선거 공약과 배치되는 것만 아니라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 유럽의회가 개인권에 대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Kokkvold 사무총장은 개인의 인격권이 항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알권리와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때마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르웨이에서는 그 사실을 공표한 모든 매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언론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1원칙 - 진실과 정확성

- 1.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항상 진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2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왜곡된 기사 또는 사진이 게재되었을 경우,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
- 1.3 필요할 경우 기사의 정정, 사과, 해명 내지 설명, 답변도 즉시, 적절하게 게재되어야 한다.

제2원칙 - 사실과 의견의 구분

- 2.1 추측, 루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

Principle 1 - Truth and Accuracy

- 1.1 In reporting news and information,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strive at all times for truth and accuracy.
- 1.2 When a significant inaccuracy, misleading statement or distorted report or picture has been published, it shall be corrected promptly and with due prominence.
- 1.3 When appropriate, a retraction, apology, clarification, explanation or response shall be published promptly and with due prominence.

Principle 2 - Distinguishing Fact and Comment

- 2.1 Comment, conjecture, rumour and unconfirmed reports shall not

be reported as if they were fact, but newspapers and periodicals are entitled to advocate strongly their own views on topics.

2.2 Readers are entitled to expect that the content of a publication reflects the best judgement of editors and writers and has not been inappropriately influenced by undisclosed interests. Where relevant, any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of an organisation should be disclosed. Writers should disclose significant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o their editor.

Principle 3 - Fairness and Honesty

3.1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strive at all times for fairness and honesty in the procuring and publishing of news and information.

3.2 Publications shall not obtain information, photographs or other material through misrepresentation or subterfuge, unless justified by the public interest.

3.3 Journalists and photographers must not obtain, or seek to obtain, information and photographs through harassment, unless their actions are justified in the public interest.

Principle 4 - Respect for Rights

Everyone has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his/her good name.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not knowingly publish matter based on malicious misrepresentation or unfounded accusations. Publications must take reasonable care in checking facts before publication.

Principle 5 - Privacy

5.1 Privacy is a human right, protected as a personal right in the Irish Constitut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is incorporated into Irish law. The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and correspondence of everyone must be respected.

5.2 Readers are entitled to have news and comment presented with respect for the privacy and sensibilities of individuals. However, the right to privacy should not prevent publication of matters of public record or in the public interest.

5.3 Sympathy and discretion must be shown at all times in seeking information in situations of personal grief or shock. In publishing such information, the feelings of grieving famil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stricting the right to report judicial proceedings.

5.4 Public persons are entitled to privacy. However, where a person holds public office, deals with public affairs, follows a public career, or has sought or obtained publicity for his activities, publication of relevant details of his private life and circumstances

do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2.2 독자는 간행물의 내용이 편집자와 기자의 판단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면의 이해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갈등 관계에 대해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원칙 - 공정성과 정직성

3.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뉴스와 정보를 입수, 기사화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3.2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진술 또는 속임수를 써서 정보, 사진 등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3.3 저널리스트와 포토그래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을 괴롭혀서 정보나 사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제4원칙 - 권리의 존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고의로 거짓말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에 바탕한 사안을 고의로 기사화하면 안 된다. 보도 이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원칙 - 사생활

5.1 프라이버시는 아일랜드 헌법과 유럽 인권협약에서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모든 개인의 삶이나 가족생활, 개인의 통신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5.2 뉴스는 개인의 감정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공문서 또는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3 취재원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쇼크를 받은 상황에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항상 연민과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피해 가족의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정보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4 공인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인의 공직과 관련한 일이거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되었을 때, 관련된 사생활과 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 공인의 행동의 합법성, 공식 발언의 신뢰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입장에 대한

정보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정보라면 이를 보도하는 것이 용인된다.

5.5 사적 영역에서 개인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나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원칙 – 취재원 보호

언론인은 민감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

제7원칙 – 법정보도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법정보도를 할 때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보도하면 안되며, 무죄일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제8원칙 – 증오의 야기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인종, 종교, 국적, 피부색, 민족, 공동체, 성별, 성적 기호, 결혼 여부, 장애유무, 질병, 나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중대한 범죄가 야기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원칙 – 어린이

9.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1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정보나 발언을 보도하고자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2 기자와 편집인은 미성년자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취재할 때는 어린이의 나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취재 동의 여부, 주제의 심각성 여부, 공공의 관심사가 되는 사안인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불필요하게 취재를 강요받을 수 없다. 부모나 보호자의 명성, 평판, 지위가 어린이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10원칙 – 언론옴부즈맨 결정의 게재

10.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언론옴부즈맨이나 신문평의회에서 신청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도해야 한다.

10.2 이 요강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한다.

may be justifiable where the information revealed relates to the validity of the person's conduct, the credibility of his public statements, the value of his publicly expressed views or is otherwise in the public interest.

5.5 Taking photographs of individuals in private places without their consent is not acceptable, unless justified by the public interest.

Principle 6 - Protection of Source

Journalists shall protect confidential sources of information.

Principle 7 - Court Reporting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court reports (including the use of photographs) are fair and accurate, are not prejudicial to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respected.

Principle 8 - Incitement to Hatred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not publish material intended or likely to cause grave offence or stir up hatred against an individual or group on the basis of their race, religion, nationality, colour, ethnic origin, membership of the travelling commun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marital status, disability, illness, or age.

Principle 9 - Children

9.1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take particular care in seeking and presenting information or comment about a child under the age of 16.

9.2 Journalists and editors should have regard for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and in all dealings with children should bear in mind the age of the child, whether parental or other adult consent has been obtained for such dealings, the sensitivity of the subject-matter, and what circumstances if any make the story one of public interest. Young people should be free to complete their time at school without unnecessary intrusion. The fame, notoriety or position of a parent or guardian must not be used as sole justification for publishing details of a child's private life.

Principle 10 - Publication of the Decision of the Press Ombudsman

10.1 When requested or required by the Press Ombudsman and/or the Press Council to do so,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publish the decision in relation to a complaint with due prominence.

10.2 The content of this Code will be reviewed at regular intervals.

CODE OF ETHICS OF THE NORWEGIAN PRESS

노르웨이 언론 윤리강령

Ethical Code of Practice for the Press (printed press, radio, television and net publications). Adopted by the Norwegian Press Association November 23th, 2007.

2007년 11월 23일 노르웨이 언론협회가 채택한 언론(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온라인매체) 윤리강령

Each editor and editorial staff member is required to be familiar with these ethical standards of the press, and to base their practice on this code. The ethical practice comprehends the complete journalistic process from research to publication.

편집자는 이 윤리강령을 숙지, 준수해야 한다. 이 강령은 취재에서 발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1. The Role of the Press in Society

1. 언론의 사회적 역할

1.1.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Information and Freedom of the Press are basic elements of a democracy. A free, independent press is among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1.1. 표현의 자유, 정보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이다. 자유롭게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1.2. The press has important functions in that it carries information, debates and critical comments on current affairs. The press is particularly responsible for allowing different views to be expressed.

1.2. 언론은 최근 이슈에 대한 정보 및 논쟁거리, 비판적 의견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은 특히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책무가 있다.

1.3. The press shall protect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inciple of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It cannot yield to any pressure from anybody who might want to prevent open debat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free access to sources. Agreements concerning exclusive event reporting shall not preclude independent news reporting.

1.3. 언론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 언론은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의 유통,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외부압력을 거부해야 한다.

1.4. It is the right of the press to carry information on what goes on in society and to uncover and disclose matters, which ought to be subjected to criticism. It is a press obligation to shed critical light on how media themselves exercise their role.

1.4.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판을 하기 위한 쟁점을 찾아내 표출할 수 있다. 미디어가 스스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언론의 책무다.

1.5. It is the task of the press to protect individuals and groups against injustices or neglect, committed by public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private concerns, or others.

1.5. 언론은 정치권력과 기관이 행하는 불의에 맞서는 개인, 단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2. 정직성과 책임성

2.1. The legally responsible editor carries personal and full responsibility for the material contained in the publication, no matter the form.

2.1. 편집자는 매체에 실린 기사에 대해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2.2. Each editorial desk and each employee must guard their own integrity and credibility in order to be free to act independently of any persons or groups who - for ideological, economic or other reasons - might want to exercise an influence over editorial matters.

2.2. 편집자는 이념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하여 언론 본연의 신뢰성을 사수하여야 한다.

2.3. 편집에 관련된 자는 금전이나 호의, 경제적 지원, 자신의 기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거절하여야 한다. 편집에 관련된 자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

2.4. 편집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5. 편집인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기사작성 행위 등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

2.6. 광고와 기사는 명백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기사의 형태를 모방하는 광고는 기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므로 심지 말아야 한다.

2.7.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기사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기사는 신중한 편집의 결과물이다. 저널리즘과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은 웹링크 등의 연결 여부에 따라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2.8. 광고주가 기사취재 활동 및 기사내용, 표현에 개입하면 올바른 언론활동이 저해된다.

2.9. 언론인은 해당 데스크 외에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취재행위 및 취재원과의 관계

3.1. 취재원은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취재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취재원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주어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취재원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익명의 취재원이나 단독보도라면 특히 취재원에 대해 엄중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의 제보, 단독 제보, 금전적 대가를 치른 취재원의 정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3.3. 인터뷰 진행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하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관련 취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3. Members of the editorial staff must not accept commissions or offices, financial support or dual roles crea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their editorial tasks. Be open on matters that could influence the credibility of editorial staff members.

2.4. Members of the editorial staff should not use their position to achieve personal gains.

2.5. A member of the editorial staff cannot be ordered to write or do anything, which is contrary to his or her convictions.

2.6. Reject any attempt to break down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advertisements and editorial copy. Advertisements intended to imitate or exploit an editorial product, should be turned down, as should advertisements undermining trust in the editorial integrit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ress.

2.7. Never promise editorial favours in return for advertisements. The material is published as a result of editorial considerations. See to it that the vital distinction between journalism and commercial communication is being maintained upon employment of web links and other connective means.

2.8. It is a breach of good press conduct to let sponsorship affect editorial activity, contents and presentation.

2.9. Members of the editorial staff may not accept assignments from anyone but the heads of the editorial staff.

3. Journalistic Conduct and Relations with the Sources

3.1. The source of information must, as a rule, be identified, unless this conflicts with source protection or consideration for a third party.

3.2. Be critical in the choice of sources, and make su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correct. It is good press practice to aim for diversity and relevance in the choice of sources. If anonymous sources are used, or the publication is offered exclusivity, especially stringent requirements must be imposed 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the sources.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when dealing with information from anonymous sources, information from sources offering exclusivity, and information provided from sources in return for payment.

3.3. Good press conduct requires clarification of the terms on which an interview is being carried out. This also pertains to adjacent research.

3.4. Protect the sources of the press. The protection of sources is a basic principle in a free society and is a prerequisite for the ability of the press to fulfil its duties towards society and ensure the access to essential information.

3.5. Do not divulge the name of a person who has provided information on a confidential basis, unless consent has been explicitly given by the person concerned.

3.6. In consideration of the source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ress, unpublished material as a main rule should not be divulged to third parties.

3.7. It is the duty of the press to report the intended meaning in quotes from an interview. Direct quotes must be accurate.

3.8. Changes of a given statement should be limited to corrections of factual errors. No one without editorial authority may intervene in the editing or presentation of editorial material

3.9. Proceed tactfully in journalistic research. In particular show consideration for people who cannot be expected to be aware of the effect that their statements may have. Never abuse the emotions or feeling of other people, their ignorance or their lack of judgment. Remember that people in shock or grief are more vulnerable than others.

3.10. Hidden cameras/microphones or false identity may only be us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e condition must be that such a method is the only possible way to uncover cases of essential importance to society.

3.11. The press shall as a rule not pay sources or interviewees for information. Exercise moderation when paying a consideration for news tips. It is incompatible with good press practice to employ payment schemes designed to tempt people, without due cause, to invade the privacy of others or to disclose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4. Publication Rules

4.1. Make a point of fairness and thoughtfulness in contents and presentation.

4.2. Make plain what is factual information and what is comment.

4.3. Always respect a person's character and identity, privacy, race, nationality and belief. Never draw attention to personal or private aspects if they are irrelevant.

3.4.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사회의 기본적 요소이며, 언론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3.5. 명시적으로 신원을 밝혀도 좋다고 취재원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된다.

3.6. 취재원과 언론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보도되지 않은 취재물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7. 인터뷰 발언은 그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 직접 인용은 정확해야 한다.

3.8. 인터뷰 내용은 명백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 편집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사의 편집이나 작성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3.9. 취재활동에는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진술이 가지는 영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과 느낌, 무지, 판단착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충격, 비탄에 빠진 사람들은 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10. 몰래카메라·마이크·신분위장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즉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 한한다.

3.11. 언론은 취재원이나 인터뷰 대상에게 정보를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뉴스제공에 대한 보수는 적정해야 한다. 특히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알아내거나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기 위한 의도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4. 편집원칙

4.1. 기사의 내용과 형식은 공정성과 신중함을 담보해야 한다.

4.2. 사실과 의견은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4.3. 언론인은 항상 개인의 신원과 프라이버시, 인종, 국적,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 정보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4.4. 제목과 서두는 기사의 전체 맥락을 함축해야 한다. 다른 언론에서 인용했을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다.

4.5. 범죄 혐의와 판결에 대해 단정하면 안 된다. 판결의 효력이 있기 전까지는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앞서 보도했던 사건의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를 보도해주는 것이 좋다.

4.6. 범죄, 사고보도를 할 때는 항상 희생자와 친족들이 받을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희생자나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는 근처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슬픔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도록 한다.

4.7. 이론의 여지가 있거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기사에서는 이름과 사진 등의 게재에 주의해야 한다. 아직 취재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이거나 알려짐으로써 제3자에게 부담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범에 대한 기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원공개는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 무방비상태의 개인에게 갑작스런 폭력의 위험성이 있을 때 만약 대상자의 신원이나 사회적 지위가 보도와 관련이 있거나 신원 공개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의심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다.

4.8. 미성년자에 대해 보도할 때는 언론보도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나 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정사이거나 또는 어린이 보호 당국이나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9. 자살, 또는 자살미수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되도록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자살방법 등에 대한 묘사는 피하도록 한다.

4.10. 사진을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1. 보도사진은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사용된 사진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조작사진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는 등 사진을 변형하고 하는 의도

4.4. Make sure that headlines, introductions and leads do not go beyond what is being related in the text. It is considered good press conduct to reveal your source when the information is quoted from other media.

4.5. In particular avoid presumption of guilt in crime and court reporting. Make it evident that the question of guilt, whether relating to somebody under suspicion, reported, accused or charged, has not been decided until the sentence has legal efficacy. It is a part of good press conduct to report the final result of court proceedings, which have been reported earlier.

4.6. Always consider how reports on accidents and crime may affect the victims and next-of-kin. Do not identify victims or missing persons unless next-of-kin have been informed. Show consideration towards people in grief or at times of shock.

4.7. Be cautious in the use of names and photographs and other clear identifiers of persons in referring to contentious or punishable matters. Special caution should be exercised when reporting cases at the early stage of investigation, cases concerning young offenders and cases in which an identifying report may place an unreasonable burden on a third party. Identification must be founded on a legitimate need for information. It may, for instance, be legitimate to identify someone where there is imminent danger of assault on defenceless individuals, in the case of serious and repeated crimes, if the identity or social position of the subject is patently relevant to the case being reported on, or where identification protects the innocent from exposure to unjustified suspicion.

4.8. Reporting on children, it is considered good press conduct to assess the implications that media focusing could cause in each case. This also pertains when the person in charge or parent, has agreed to exposure. As a general rule the identity of children should not be disclosed in reports on family disputes or cases under consideration by the childcare authorities or by the courts.

4.9. Be cautious when reporting on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Avoid reporting that is not necessary for meeting a general need for information. Avoid description of methods or other matters that may contribute to provoking further suicidal actions.

4.10. Exercise caution when using photos in any other context than the original.

4.11. Protect the credibility of the journalistic photograph. Photos used as documentation must not be altered in a way that creates a false impression. Manipulated photos can only be accepted as

illustrations if it is evident that it in actual fact is a picture collage.

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4.12. The use of pictures must comply with the same requirements of caution as for a written or oral presentation.

4.12. 사진을 사용할 때는 글, 또는 구술로 작성된 기사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3. Incorrect information must be corrected and, when called for, an apology given, as soon as possible.

4.13. 부정확한 기사는 정정해야 하며, 요청이 있었을 때는 최대한 사과를 하도록 한다.

4.14. Those who have been subjected to strong accusations shall, if possible, have the opportunity to simultaneous reply as regards factual information. Debates, criticism and dissemination of news must not be hampered by parties being unwilling to make comments or take part in the debate.

4.14. 유력한 용의자의 경우에도 반론에 대한 기회가 즉각 부여되어야 한다. 토론과 비판, 뉴스의 전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쟁점에 관련된 자들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4.15. Those who have been the subject of an attack shall have the chance to reply at the earliest opportunity, unless the attack and criticism are part of a running exchange of views. Any reply should be of reasonable length, be pertinent to the matter and seemly in its form. The reply can be refused if the party in question has rejected, without an objective reason, an offer of presenting a contemporaneous rejoinder on the same issue. Replies and contributions to the debate should not be accompanied by polemic editorial comment.

4.15. 기사의 주된 비판대상이 된 자는 최대한 반론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반론은 상식적인 수준의 길이로, 해당 이슈와 관련되고 적당한 형태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명백한 이유 없이 그 이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경우에는 반론을 실지 않아도 무방하다. 반론에 그에 대한 비판적 코멘트를 달아서는 안 된다.

4.16. Beware that digital publication pointers and links could bring you to other electronic media that do not comply with the Ethical Code. See to it that links to other media or publications are clearly marked. It is considered good press conduct to inform the users of interactive services on how the publication registers you, and possibly exploits your use of the services.

4.16. 인터넷 기사의 포인터나 링크로 인해 이 윤리강령에 반하는 다른 매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른 미디어나 언론에 링크되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4.17. Should the editorial staff choose not to pre-edit digital chatting, this has to be announced in a clear manner for those accessing the pages. The editorial staff has a particular responsibility, instantly to remove inserts that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Ethical Code.

4.17. 편집인이 기사의 댓글을 미리 편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침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편집인은 특히 윤리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댓글을 즉시 삭제할 수 있다.

번역 : 조사팀 이 정 희 조사관

언론과 법



국내동양

‘불공정 재판’ 보도 명예훼손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정 모 부장판사가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주의 깊게 살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작성하여야 함에도 제보 내용에만 몰입한 나머지 정 판사가 감정신청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 중 “정 판사가 ‘막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조선일보가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서 빛어진 ‘불공정’ 재판 시비 때문에 변호사 단체들이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억 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울 스님 ‘천성산 단식’ 보도 관련 10원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천성산 공사를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지울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도 내용의 일부가 과장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지울 스

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는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공사손실액은 고속철도 개통 지연 등에 따른 수치일 뿐”이며 “이는 원호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145억 원이라는 인정 사실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칼럼과 기사 등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근거로 지울 스님의 단식으로 인한 천성산 공사 중단으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수차례 보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울 스님은 시공업체 등이 입은 직접손실액은 145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로 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공익적 목적 피해자 실명공개는 정당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진다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가 MBC 「PD수첩」이 실명으로 횡령 의혹을 다루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적 중요성을 가진 피의

자의 실명 공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사태에 관하여 최

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회·경

제·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례로서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법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경우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제시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1년 ‘소록도의 외침,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만든 H상조회가 사실상 수억 원의 자금횡령장구로 사용됐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횡령 관련자들이 음독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두 차례 방송했다.

이 씨는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든 주민들의 시위 장면을 방영하고,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화면을 내보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경쟁 병원 악성댓글’ 실형선고

경쟁 관계에 있는 병원에 대해 댓글을 단 모 병원 원무과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는 “피고가 자신의 병원 직원 등의 명의로 여러 개의 ID를 도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른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는 산모들을 위한 전용공간이므로 이곳에 게재된 댓글은 일반적인 댓글과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카페 이용자들은 이곳에 올라온 피고의 거짓정보를 자기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무과장으로 있

는 정 모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임신부들의 전용 카페에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인근 경쟁 병원 두 곳에 대한 질문에 악성 댓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펜션이용 비판적 후기’는 주관적 의견 피력, 무죄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는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펜션을 비방하는 글을 펜션 홈페이지에 게재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S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용후기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다녀온 사람’이라는 작성자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후지다’거나 ‘돈이 아깝다’ 등의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에 따른 주관적 의견

이나 가치판단에 해당할 뿐,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영국, 기업 명예훼손 사건 대폭 증가

최근 명예훼손 사건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 출판사 Sweet and Maxwell의 법률 자문관은 기업이 제기한 명예훼손이 세 배나 늘어남에 따라 전체 명예훼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보고된 명예훼손 사건은 78건으로 작년 59건에 비해서 32%나 증가했으며, 이에 대해 Sweet and Maxwell은 기업 명예훼손 사건의 대폭적인 증가는 국제적인 신용위기에 따른 재정압박 속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평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자료들은 Sweet and Maxwell의 'Lawtel & Westlaw UK'의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를 통해 분석된 수치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명예훼손 사건 중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

은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다른 회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

Sweet and Maxwell은 기업 명예훼손 사건의 증가 추세와 관련,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가 파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치 유행처럼 법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Reynolds Porter Chamberlain의 미디어 담당자인 Jaron Lewis 변호사도 기업 명예훼손 사건의 증가는 회사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회사의 전략적인 PR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언론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고,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나 통신청(Ofcom)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명 인사들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18건으로, 작년 19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수치는 전체 명예훼손 사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Lewis 변호사는 최근 유명인사들의 소송 경향과 관련, 명예훼손 소송보다 사생활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유명인사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출판 금지명령을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는 이야기가 출판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Sweet and Maxwell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web 2.0의 등장과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 손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학자들이 예측한 정도는 아니지만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9년 7월 27일자)

“보도 가치 판단은 편집관리자가 결정할 사항”, 전직기자 ‘보도실현권’ 청구 기각

취재하여 집필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아 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요시다케(吉竹幸則) 씨가 아사히신문사를 상대로 사죄 기사 게재와 위자료 3,000만 엔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나고야(名古屋)지법은 지난 4월 23일 “기사의 보도가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비추어 경영, 편집관리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임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법원이나 취재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는 특정한 내용을 보도하도록 명령할 권리나 보도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원고는 아사히신문 나고야 본사 사회부 기자로 재직 중 장량천(長良川) 하구언(河口堰)문제를 취재하면서 언(堰·독)은 치수효과가 없어 필요하지 않다는 기사를 집필했으나, 회사에 의해 게재가 거부되자 기자의 권리인 ‘보도실현권(報道實現權)’이 침해되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권리에 의해 기자는 보도가치가 있는 일정수준의 원고 게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자의 원고를 채택해야만 한다”며 “보도실현권은 헌법 19조, 21조, 27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자와 신문사 간의 노동계약상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의 각 조항을 기자와 신문사 간의 사인(私人)관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시다케(吉竹幸則) 씨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 5월 8일 항소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5월 12일자)

복싱 프로모터로서의 정직성을 크게 손상시킨 인터뷰기사 게재로 Herbie Hide, Frank Warren에게 35,000파운드 배상

복싱 프로모터인 Frank Warren이 TV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전 헤비급 월드 챔피언 Herbie Hide로부터 35,000파운드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받게 됐다.

Hide는 지난 2008년 7월 「Setanta Sports」와의 인터뷰 도중 Warren이 “사람들에게 타이틀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Warren은 이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Hide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Patrick Moloney 판사는 “Warren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일이 없었음을 완전히 입증했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사례라고 밝

혔다. 판사는 이와 함께 Warren이 향후 복서들이 자신에 대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금지명령도 받아들였다. Warren은 Hide의 인터뷰 기사 중 “부정직한 행위와 뇌물로 Johnny Nelson을 은퇴하도록 하여 그가 WBO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포기하게 했고, 이것을 통해 Warren이 내세운 Enzo MacCarinelli는 싸우지 않고 챔피언 벨트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Warren의 변호사인 Richard Munden은 판사에게 “뇌물행사에 대한 발언은 한 사람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

이 이번 건은 그의 직업과 관련되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Warren의 직업은 협상과 계약을 통해 복싱시합을 성사시키는 것인데 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그의 공정함과 정직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Patrick Moloney 판사는 “Warren의 명성에 해를 끼친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인터뷰의 내용은 그의 정직성에 반하는 매우 심각한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Warren은 매우 큰 모욕을 당했으며 감정이 크게 상함은 물론, 큰 괴로움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9년 7월 27일자)

아일랜드, 명예훼손법 개혁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방지

아일랜드의 판사들은 다음 달 말부터 명예훼손 판결 이전에 배심원들이 예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도록 해야 한다.

7월 중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개혁 법안은^{*} 고등법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또 대법원이 배심원들이 판결한 배상액을 거부하고, 대법원이 직접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명예훼손법이 기존 명예훼손 배상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명예훼손법 관련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법이 이번 회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 법안은 판사들이 배심원들에게 사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적절한 배상액과 관련된 방향을 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개혁 법안은 「Evening Herald」와 PR

상담사 Monica Leech 사건에서 Dublin 고등법원 배심원들이 「Evening Herald」에게 명예훼손 배상액 중 역대 최고액인 187만 유로(150만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 날에 발표된 것이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이 배상액은 최근 3년간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도 세 번째로 높은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Evening Herald」를 소유하고 있는 Independent Newspapers는 이 결정에 대해 곧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언론인 노동조합은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은 이 분야의 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배상액은 작년에 세워진 기록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작년 최고액은 「Sunday World」가 1999년 9월 호의 한 기사에서 Martin McDonagh를 “마약왕 여행자”라고 묘사했다는 이유로 90만 유로를 배상한 것이었다.

2006년 11월에는 상고심에서 대법원 배심원들이 Mirror Group이 Denis O'Brien에게 75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예가 있으며,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이 31만 7343유로였으나, 상고심 판결에서 배심원들이 배상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결정했던 사건이었다.

이번 명예훼손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Reynolds defense」와 유사하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판이 보장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송이 가능한 기한도 6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소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일랜드 명예훼손법은 지난 7월 23일 채택되었으며,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편집자주

(Press Gazette 2009년 6월 26일자)

영국 고등법원, “재판 평의내용 공표는 법정모욕법 위반” Times에 벌금 명령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5월 13일 유아(乳兒) 상해치사사건의 재판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기사를 게재한 「Times」와 당시 배심단장이었던 남성에 대해 법정모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Times」에 대해 1만5,000파운드의 벌금과 원고인 법무장관 측의 재판비용 2만7,426파운드를 지불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도 500파운드의 벌금을 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재판은 유아의 신체를 과도하게 흔들어 뇌출혈 등을 발생시키는 ‘유아흔들기증후군’ 의해 유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잉글랜드지방 남동부의 버킹엄주에 거주하는 보육사 여성이 금고 3년의 실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재판의 배심단장과 배심원 중 한 사람은 동년 12월 「Times」 기사 등을 통해 판결의 오심을 시사하는 한편, 복수

의 의료전문가에 의한 증거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심단장은 또 2008년에는 「Times」에 기고를 통해 법원 내에서는 질문을 하기 어려웠으며, 배심단은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모욕법 제8조는 배심원이 평의내용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 종료 후에도 평생 비밀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배심단장은 2007년의 한 기사를 통해서 평의개시 직후에 10대2(유죄 10인, 무죄 2인)로 거의 합의가 되어있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Times」의 기사는, 배심단이 평의 초기단계에서 총의(總意)를 굳히고, 이를 변경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는 평의내용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심단장은 또 기사에서 “배심원들이 ‘상식’에 따라 ‘보통의 남성, 여성으로

서 판결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배심원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증언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점에 대한 경시도 법정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Times」는 유럽인권조약 제10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보도기관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Times」가 기사 게재 전에 법률상의 조언을 받고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나, 결정적인 근거가 된 의료전문가에 의한 증거의 취급에 있어 배심단장이 진지하게 대처했음을 참작하더라도, ‘배심실의 비밀’을 폭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배심실 내의 의견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 배심원은 자신을 가지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新聞協會報, 2009년 6월 9일자)

“구치소의 구독지 제한은 위법”, 그러나 소장은 과실 없어

일본 오사카(大阪)구치소에 수감된 한 남성이 구치소가 신문을 2개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한해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22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고법원은 지난 6월 11일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여 구치소 내의 규율이 흐트러진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구독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신문을 읽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독 규제는 오랫동안

안 실무상 특별한 의식 없이 계속해왔던 일로 구치소 소장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5개월간 구치되었던 이 남성은 그 동안 아사히(朝日)신문의 구독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구치소 내의 설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중에서 구독지를 선택하도록 규제를 받았다.

정부는 “보도의 범위나 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신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 각지

는 다양한 입장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을 정부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가 보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2007년 9월 28일 오사카지법의 1심 판결은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면 구치소의 사무량이 늘어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독 규제를 인정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6월 30일자)

삿뿌로지법, “날조된 기사에 진실상당성 인정될 수 없다”

일본 북해도경찰에서 2003년 발각한 부정경리문제를 다룬 서적의 내용이 날조되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도경총무부장 사사끼(佐佐木友善) 씨가 북해도신문사와 신문사의 기자 2명, 서적을 출판한 旬報社와 講談社를 상대로 총 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삿뿌로지법(札幌)지법은 지난 4월 20일 잘못된 내용이라 주장된 기술 4곳 중 3곳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 피고 측에 총 72만 엔의 지급을 명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북해도신문 기자들이 집필한 ‘경찰간부를 체포하라! 진홍

수령의 비자금 만들기’(旬報社)와 ‘추궁 · 북해도경 『비자금』의혹’(講談社)의 일부이다.

재판부는 서적 내용 중 총무부장이 본부장으로부터 ‘어쩌면 이런 서투른 짓을 했느냐’고 질책을 받은 모양이라는 기술이 사사끼 씨가 도경의 부정경리를 조사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질책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사사끼 씨 본인과 도경의 간부 직원 전원이 부정하고 있는데, 약 20명으로부터 입증을 받았다는 기사들의 주장은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원고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사죄광고의 게재와 서적의 회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記述)은 서적의 주요부분이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적을 함께 저술한 오오다니(大谷昭宏) 씨와 작가인 미야자키(宮崎學) 씨가 출판물을 날조라고 한 사사끼 씨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은 이날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新聞協會報, 2009년 5월 12일자)

Guardian, 남아프리카 대통령 Jacob Zuma을 강간범으로 보도 후 정정기사를 게재하고 사과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

- 원고 측, “정정기사가 최초 게재된 기사에 비해 현저히 작고, 온라인에는 게재조차 되지 않았다”며 소송 지속-

남아프리카 대통령인 Jacob Zuma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주장했던 「Guardian」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명예훼손 보상금을 받게 됐다.

Zuma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발행된 신문에 실린 글 중 Simon Jenkins가 쓴 ‘부패와 혼돈에 익숙해진 남아프리카’라는 제목의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인 Jenny Afia는 법정에서 그 기사는 Zuma 대통령을 강간범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근거 없는 주장들이 보도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그 내용 또한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Guardian」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던 4월에 정정기사와 사과문을 칼럼으로 내보낸 바 있으나, Zuma 대통령 측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정정기사는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Jacob Zuma를 강간범이라고 보도한 것과 그가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것은 편집상의 실수였고 Zuma 대통령은 2006년도에 강간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은 기사 내용이

Zuma 대통령에 대한 남아프리카 검찰청의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치적인 동기로 쓰여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기사로 인해 그가 받았을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당혹스러움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Afia 변호사는 정정기사가 최초에 게재된 기사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작게 나왔고, 온라인 기사에는 게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법적대응을 계속 진행했으며, 이번 배상판결로 인해 Zuma 대통령은 그의 명성이 회복될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Press Gazette 2009년 7월 30일자)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에서 신청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 보도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조정결정 - 피신청인 이익신청)

박 모 씨는 6.10 집회에서 자신이 경찰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의 상반신 사진이 보도된 데 대해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을 상대로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퇴근길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뒤섞이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한 것일 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나, 언론사가 신청인이 특정된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은 신청인이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고, 사진촬영을 인지하였으므로 신청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가 몸싸움 사진을 보도한 것이므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나, 초상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고 부득이 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며 3백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익을 신청, 해당 사건은 법원에 자동 소제기 되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0, 2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2천만 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동아일보,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3백만 원)

내 용 : <사진설명>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주춧돌 측과 광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수시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동아일보 :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1일자 8면)

1. 제 목 : “무대장비 반입사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종합 A8면에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 이라는 제목으로 주먹을 쥐고

경찰을 폭행하려 하는 신청인의 전면 사진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진에서처럼 신청인이 경찰을 폭행하려거나 폭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0
(2009서울조정261과 병합)

청 구 명 :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서울시 관악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사진부 부장 박○○,
사회부 차장 김○○

주식회사 동아닷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대표이사 김 일 흥
조정대리인 경영기획실 실장 최○○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09년 7월 17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들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9.

조정결정 후 처리결과

〈피신청인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자동소제기 됨〉

**농성 장소에서 불법행위 혐의로 시위대가 연행되었다는
보도 관련 조정신청 (기각결정)**

진 모 씨는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의 농성 장소에서 대책위 시위대 3명이 폭력 등 불법행위 혐의로 연행되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에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시위현장에서 연행되었으나 대책위 관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이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 신청인의 나이 등 인적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5백만 원)

신 청 인 : 진○○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기각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용산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자)

내 용 :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
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20일 정부 사과
를 요구하며 한강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3명이 연행됐다. 용산범대위 관계자들과 사고 피
해자 유족 등 1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앞
에서 1시간 동안 정부 규탄 집회를 연 뒤, 한강대로
2개 차로에서 피해자 영정을 앞세우고 용산역 방
향으로 약 1km 행진했다. 이어 남일당 빌딩 앞으로
돌아온 이들은 “경찰이 행진을 막으며 몸싸움을
하다 영정을 훼손했다”며 한강대로 서울역 방
향 3개 차로에 앉아 경찰 사과를 요구하며 50여분 동
안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오후 7시 15분께 진압
작전을 펼쳐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폭등 불
법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연행했다. 이후에도 유

족 5명은 영정을 들고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1시
간 가랑 농성을 계속 했으며, 이 중 3명이 여자 경
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
졌다. 또 이 과정에서 여경이 2명 부상했고, 경
찰 연행에 항의하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의 전종훈 신부도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농성으로 서울역 방향 한강대로가 버스 차선 1
개를 제외하고 모두 막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다
오후 8시 20분께 정상화됐다. 하지만 용산범대위
관계자 50여 명은 이후 남일당 빌딩 앞에서 경찰
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오후 11시
현재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올해 1월 20일 철거민 5명이
숨진 ‘용산 참사’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일
어났으며 정부 사과와 진상 재조사, 유족 보상 등
을 요구해 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용산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통신사는 본사가 기사를 제공하는 다
수의 매체의 지난 6월 20~22일자 사회면 등에
“용산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이라는 제
목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연행하였다고 보도하였
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시위대가 아니라 범대위 소속 80여 명이 유족과 함께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는 시점에 10미터 정도 떨어진 약국 근처에서 단지 도로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 측으로 끌어들여 포위한 채 삽시간에 시민을 연행하려는 것을 주변의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 측에 고립된 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추모제 단 순참가자가 연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진○○

서울시 용산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박정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로서 기사를 제공하는 매체에 사회 기사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6월 20일자 『용산 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한강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대책위 관계자 3명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연행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자신은 대책위 관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으며 시위 현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 연행되었을 뿐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알 수 있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범대위)가 20일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한강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3명이 연행됐다”고만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의 성명이나 나이 및 직업 등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용산범대위 3명’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별지]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재래시장 위기의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후 취하)

차명진 의원은 뉴스앤뉴스가 자신이 재래시장 위기의 원인이 시장상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차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재래시장 관련 글을 피신청인 뉴스앤뉴스가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재래시장 위기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다고 한 것처럼 기사화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조정기일 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론으로 게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차 명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뉴스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스앤뉴스 :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자 정치 섹션)

내 용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대다수 재래시장 가게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 상인들의 ‘경영혼’이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

아 논란을 자초했다. 상인들이나 전문가들은 벼랑 끝 위기의 원인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 (SSM) 진출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불티나는 야채가게> 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잘 아는 야채가게가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있음을 거론 한 뒤, “왜 그럴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손님 과 맨투맨으로 붙어서 흥정한다. 물건이 아주 싱싱하다. 새벽장에 가서 직접 떼어 온다고 한다. 시간대별로 물건 값도 다르다. 저녁이면 대부분의 물건이 바닥 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다른 가게를 지목한 뒤, “사장님, 손님이 와도 관심 없다. 허구헌날 친구 몇 사람들과 아랫목에 앉아서 친목 도모하느라고 바쁘다. 벽면엔 한겨울에도 여름용 원피스가 즐비하게 걸려 있고 먼지가 뽀얗다”며 “하루는 내가 그랬다. ‘동대문에 가면

만 원짜리 예쁜 티셔츠 많은데 그거 좀 떼어다 파시죠’, 사장님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고개를 돌린다. 그 가게 결국 문 닫았다”고 폐업을 상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래시장이 어렵긴 하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문제는 경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재래시장에 경영혼을 혹 붙여 넣을 방법은 없을까?”라며 재래시장 위기 원인을 거듭 상인에게서 찾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경영혼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사실과 달라 (또는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 매체는 7월 13일자 기사에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라는 제목으로 마치 차명진 의원이 재래시장 위기 원인이 전적으로 상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명진 의원이 의도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영업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여, 최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재래시

장에 경영혼을 붙여넣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사 내용이 차명진 의원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보도문

뷰스앤뉴스 : 『차명진 의원의 반론입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1일자 정치 섹션)

내 용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본보 지난 13일자 기사 <차명진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라는 기사에 대해 21일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반론 보도문 전문. <편집자 주>

위 보도(차명진 관련보도)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불티나는 야채가게’ 라는 글은 재래시장 위기의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며, 최근 여러 이유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적극적이고 신바람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경영혼’을 붙여 넣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환자 방송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합의)

신청인 구 모 씨와 가족은 피신청인(MBC-TV 닥터스)이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 입원 중인 자신과 가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신청인이 마치 폭주족인 것처럼 방송하여 신청인과 가족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방송이 사회적 공익을 위한 취지의 프로그램이

고, 신청인에게 촬영사실을 알렸으며, 신청인과 가족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하여 신청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방송한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권고,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3

30,000,000원

청 구 명 : 손해청구 (3천만 원)

신 청 인 : 구 ○ ○ 외 2인

합의사항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5백만 원)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9월 4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본 건 조정 대상방송의 외주 제작사인 (주)○○과 소속 임직원 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MBC-TV : 「닥터스」 프로그램 『응급실 24』(2009년 7월 6일)

내 용 : 터널 내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관련 방송내용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금 5백만 원 지급〉

‘국정원 현 정부 인사실태 내사’ 보도 관련 조정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합의)

신청인 국가정보원은 원장 지사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뤄진 인사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국민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 산하단체 및 각종 위원회 등에 대한 인사에 대해 내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원장도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전담팀도 구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조정대상보도는 제보와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사실보도라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내사여부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반론을, 팀구성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정정보도할 것을 권고하자 양 당사자는 이를 수용해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정보원 (원장 원 세 훈)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국정원, 현정부 인사실태 내사』 제하
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1, 3면)

내 용 : 산하 단체 · 공공기관 임원 등 4000명 자료
수집

원원장 지시...S라인 · 선진연대 출신 분포 조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방위 내사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현 정부의 인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근원적 처방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내사는 청와대가 임명한 장관 등 정무직 인사보다 각종 정부 산하 단체, 정부 직속 위원회,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들은 권력 주변부의 노른자위 자리로,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그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등 여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도 스크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내사 대상자들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주요 경력, 대선 당시 역할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사는 지난 6월 초부터 본격화됐으며 대상자는 300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번 내사 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를 꾸렸다. 국정원은 내사 자료를 현 정부의 인사 실태를 판단하는 주요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인사 독점 논란을 야기해 온 선진국민연대(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외곽 조직), ‘S(서울시청)라인’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얼마나 포진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원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실제로 선진국민연대나 ‘S라인’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청와대가 시정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내사가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 수집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사가 현 정부 인사 실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진보 인사 물갈이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요직 독식 · 편중 시비 가릴 데이터 확보』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3면)

내 용 : 국정원, 현 정부 인사 실패 내사 배경
끊임없는 잡음 차단... MB 국정운영에 힘 보태
기

파워게임 · 조사주체 논란... 물갈이 활용 가능
성도

국가정보원이 인사 전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논란 검증할 데이터 필요=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논
란은 선진국민연대와 ‘S(서울시청 라인)’ 출신 인
사들의 요직 독식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현 정
부 들어 인사라는 전리품을 선진국민연대와 S라
인이 독차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인사를 둘러싸
고 두 세력간 갈등설도 불거져 나왔다. 이 대통령
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형님 인사’도 논란이 됐
다. 개각이나 정부 부처 인사 때마다 고려대와
TK(대구·경북) 편중 시비도 계속됐다. 국정원
은 이 같은 인사 논란이 과연 사실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직 독식·편중 시비를
가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내사는 인사 관련 잡음을 없앴으로써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
이다.

◆검증 사각지대, 권력 주변부 요직 내사=이번
내사는 사실상 전방위 조사다. 현 정부 인사 전
반을 훑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한 신
상명세 수준을 넘어 성향 분석까지 이뤄지고 있
다. 특히 핵심 내사 대상이 각종 정부 산하 단체

와 정부 직속위원회의 고위관계자, 공공기관 임
원 등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고액 연봉과 상
당한 액수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데다 이권에도
가까운 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자리는 임명
하는 주체가 다양해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정치권의 ‘뺨’을 통해 일반 사기업에 진
출한 경우까지 내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
측에서 흘러나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
된다.

◆권력 핵심부 파워게임인가=청와대 핵심 관
계자는 29일 “청와대가 국정원에 내사를 지시한
게 아니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원 원장
은 이번 내사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TF(태스크 포스)의 보고도 직접 챙긴다고 한
다. 선진국민연대가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자 권력
핵심부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
도 나왔다. 선진국민연대는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
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만들고 주도한
조직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 의원이나 박 차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갈등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정원 개입 놓고 논란 불가피=조사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원이 김정운 후계자
설, 디도스(DDos) 복한 배후설 등을 흘린 것을
놓고 ‘국면 전환을 위한 북풍공작’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사가 체
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건 국가 기관이 당연
히 해야 할 업무”라며 “정치 개입이나 공작과는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번 내사 결과가 현 정부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이나 진보 인사 물갈이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과문이 예상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지 7월30일자 1·3면에 ‘국정원, 현정부 인사실태 내사’ 제목으로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진 인사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은 현정부의 산하단체, 정부직속 위원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전반에 대한 내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같은 내사를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국정원 내에 내사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의 ‘현정부 인사실태 내사’ 관련 기사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관련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끝.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국정원, 인사실태 내사관련 보도 부인

나. 내용 : 본보는 7월 30일자 1, 3면에 게재된 ‘국

정원 현정부 인사 실태 내사’ 제하의 기사에서 익명의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산하단체, 정부직속위원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임원 등의 인사전반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이 없고, 원세훈 국정원장도 이같은 내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내에 내사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1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국민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1일까지 <국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국정원, 인사실태 내사 관련 보도 부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라디오 공개방송에 참석한 신청인의 사진 보도 관련 중재신청 (손해배상 중재결정)

양 모 씨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방청중인 자신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하였다며 M.net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한 사실을 인정, 신청인과 함께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는 중재신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청 구 명 : 손배청구 (1천만 원)

피신청인 :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신 청 인 : 양○○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7-1

피신청인 : M.net

대표이사 박 광 원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
원을 지급한다.

접 수 일 : 2009. 7. 14.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2008년 7
월 29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처리결과 : 중재결정 (1백만 원)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보도내용

M.net : 「스캔들」 프로그램 (2009년 6월 17일)

내 용 : <생략>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정이유 : 피신청인 엠넷미디어 주식회사는 이 사
건 보도에서 CBS 라디오 공개방송에 참석한 신청
인의 초상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
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보도의 동기
와 목적, 피신청인 매체의 영향력, 피신청인 언론
사의 규모,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당사자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재결정 후 처리결과

2009. 7. 15.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모자이크 처리를 부실하게 하여 피해자를 특정한 방송 관련 중재신청 (손해배상 중재결정)

송 모 씨는 폐놀 피부 박피 수술 피해 관련 방송에서 피해자 인터뷰에 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모자이크를 부실하게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하여 피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음을 인정, 신청인과 함께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매경TV은 손해배상금 230만 원을, YTN은 15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지면 관계상 매경TV 신청건만 수록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4, 55

20,000,000원

청 구 명 : 손해청구 (2천만 원)

피신청인 : 송 ○ ○

결정문

신 청 인 : 매경TV,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4

접 수 일 : 2009. 8. 24.

청 구 명 : 손해청구

처리결과 : 중재결정

신 청 인 : 송 ○ ○

(매경TV : 230만 원, YTN : 150만 원)

서울시 강남구

보도내용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경제티브이(mbn)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

대표이사 장 대 환

중재대리인 정 ○ ○

mbn : 『아기 피부 되려다... ‘폐놀 박피’ 의사 2명
기소』 제하의 보도

내용 : <생략>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9월 4일
까지 금 2,3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 피신청인은 향후 본 건과 유사 사건을 보도할 경우 본 건 방송 중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화면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청인 관련 화면을 사용할 경우 보도 1회당 금 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이유 : 1. 이 사건 보도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경제티브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n> 2009. 8. 3. 08:00, 10:00, 13:00, 15:00 「아기 피부 되려다... '폐놀 박피'의 사 2명 기소」 제하의 보도에서 폐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 시술의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인터뷰 중 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뷰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조건 하에 인터뷰를 승낙한 것인데,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인터뷰 당시의 예상 방송횟수를 초과하여 방송되어 동의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2009. 8. 11. 당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16)을 하였다가, 2008. 9. 24. 조정심리 진행 중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부의 결정에 종국적으로 따르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르게 되었다.

2. 판단

초상권 및 음성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및 음성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 사람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기타 신체적 특징, 음성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 및 수집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나 음성을 촬영 및 수집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촬영 및 수집 과정에서 공표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위 권리들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 건 방송 인터뷰에 동의했고 보도 당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신청인의 초상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다수의 언론사들과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옷에 마이크를 꽂은 채 발언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일응 신청인이 초상 및 음성에 대한 촬영 및 수집, 공표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 검증한 본 방송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뿐 안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의 윤곽선이 노출됨과 동시에 음성은 변조되지 않은 채 13초 가량 방송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도의 대상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인터뷰 당시 신청인의 승낙 범위를 벗어난 공표라 할 것이고, 결국 본건 방송이 폐놀 성분의 박피 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술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본건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방송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 고자 하는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승낙 범위, 보도의 목적, 피신청

인의 규모 및 사회적 위치, 신청인의 나이 및 직업, 신청인 초상 및 음성의 노출 시간, 보도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 삭제 등의 후속 조치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송으로 인하여 장래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추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4.

중재결정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230만 원, 150만 원 각 지급〉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요건으로서 기사 내용의 진실성 인정 범위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부적 내용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 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컨설팅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유치를 하고, 투자자로 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머니위크(머니앤밸류 발행)와 머니투데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기사를 통해 원고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찾지 못할 위험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며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및 기사 게재금지청구도 “게재된 기사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다룬 사실관계에 대해 “기사 일부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

가 있을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컨설팅은 자신의 회사와 자회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두 언론사가 ‘수천억 투자금, 뭐 했길래 돌려주지 못하나’, ‘○○컨설팅의 위험한 머니게임’ 등의 제목으로 “갑사를 진행한 회계법인도 기업존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등 자사를 비판한 내용을 보도하자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기사 게재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2009. 7. 8.자 선고(2008가합104388)

사 건 : 2008가합104388 정정보도등

원 고 : ○○컨설팅 주식회사

피 고 : 1. 주식회사 머니앤밸류

2.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변 론 종 결 : 2009. 6. 17.

판 결 선 고 : 2009. 7. 8.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머니앤밸류는 이 판결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머니위크의 피쳐면에 [별지1] 기재 각 정정보도요구문을 게재하고,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는 이 판결송달 당일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2]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1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별지3]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2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별지5]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3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별지6]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4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각 게재하되, 각 정정보도요구문의 제목은 판결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해당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만일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내지 [별지6] 기재 각 기사 게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판결 선고일 이후 원고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취지 기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한 기사 1건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1990. 5. 29. 토지개간, 개발 및 그 대행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머니앤밸류(이하 '피고 머니앤밸류'라고 한다)는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간지인 '머니위크'를 발행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이하 '피고 머니투데이'라고 한다)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간지인 '머니투데이'를 발행하고 있다.

나. 제1기사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9. 16.자 머니투데이에 『수천억 투자금, 뭐 했길래 돌려주지 못하나』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의문의 부동산개발 사업」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원고가 개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보통 3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잡고 이 기간 동안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고, 투자 원금을 되돌려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원고는 각 사업지별로 별도의 관계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되돌아간 돈은 극히 미미하다. 원고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끌어온 449억여 원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353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무려 602억여 원이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원고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서도 기업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머니앤밸류는 2008. 9. 16.자 머니위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

다. 제2기사

피고 머니앤밸류는 머니위크에,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9. 25.자 머니투데이에 『○○컨설팅의 ‘위험한 머니게임’』이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자금유치 불법 ‘유사수신행위’ 논란」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들어 대출 형식이기 때문에 수신(예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과 연 20%의 이자율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모집 방식이라며 원고의 투자금 모집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약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출을 받은 것이

기 때문에 원금보장이나 수익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은행 J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원금보장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안 갚겠다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원고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이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개발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계약의 경우 사업기한을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잡고 사업이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연 10%의 지연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고 대표이사 등은 2002년경 유사수신행위로 구속수사를 받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기왕에 넣은 투자금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로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

라. 제3기사

피고 머니앤밸류는 2008. 9. 30.자 머니위크에 『○○컨설팅의 겁나는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고는 3.3㎡당 1~2만 원짜리 땅을 매입하면서 개발비용을 명분으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그 많은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파악되지 않았다.

수천억 원대의 돈이 말이다. 원고의 재무제표에는 투자금과 회사운용계정의 구분이 없다.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되찾으려면 먼저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같은 배를 타게 된다. 기자는 이 회사가 ‘모두가 망하는 게임’으로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는 취지의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10. 1.자 머니투데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

마. 제4기사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10. 7.자 머니투데이에 『비밀의 공간서 ‘그들만의 돈잔치’』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기가 막힌 판매수수료’」라는 작은 제목 아래 <원고가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이는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 가운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 21세기○○주식회사, 주식회사 관광개발○○ 등 특수관계회사들의 명의로도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는데, 원고를 비롯한 이들 외부감사대상법인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들이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183억여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위 4개사가 끌어 모은 투자금 순증가액의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21세기○○주식회사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의 투자금 순증가액이 169억 2,352만여 원인데,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74억 6,707만 원으로 투자금 순증가액과 단순비교하면 판매수수료 비중이 44.1%나 된다.

주식회사 관광개발○○의 경우에도 2007년 한 해 동안 투자금이 15억 8,325만 원 순증가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7억 3,728만 원으로 순증가액과 단순비교하면 46.57%나 되는 돈이다.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투자유치를 해 늘어난 투자금의 절반이 수수료로 지급됐다고 할 수 있다. 원고 회사의 장○○ 팀장은 “투자금 사용내역을 보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가, 실제로 본지가 자료제공을 요청하자 말을 바꾸어 이를 자기 마음대로 내줄 수는 없다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머니앤벨류는 2008. 10. 14.자 머니위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4기사’라고 한다).

바. 제5기사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10. 14.자 머니투데이에 『수백억 끌어 들여 단돈 몇 억 없어 공사 중단?』이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이상한 자금운용’」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강원 ○○군 ○○읍 ○○리 소재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건설이 지난 2006년 공사대금으로 22억 8,21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19억 9,749만 원만 지급하였고, 2007년 청구액 17억 6,460만 원 중 13억 3,608만 원만 지급되었다. ○○건설 관계자는 “건설 진척에 따른 기성액을 원고가 맞춰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공사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원고가 시공사인 ○○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6] 기재 기사를 게재

하였고, 피고 머니앤벨류는 2008. 10. 21.자 머니 워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제1기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투자약정상 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용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업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이 602억여 원이나 되는 것은 업종의 특성상 개발사업 완료 시에 이익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되기 때문이지 이로써 기업 존속에 의문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제2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투자금 유치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님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반론은 전혀 신지도 아니한 채 일부 금융계 인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부각시키거나 과거 다른 사례와 결부시킨 잘못된 기사이며, ③ 제3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미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자료나 객관적인 세무조사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확인도 없이 취재기자의 주관 내지 독단적인 견지에서 막연히 추측한 기사에 불과하고, ④ 제4기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투자금의 대부분이 판매수수료로 빠져나갔다가, 원고 회사의 장○○ 팀장은 피고들에

게 자금사용내역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도 없음에도 사실과는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기사이고, ⑤ 제5기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의 공사대금으로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선금금 6억 731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7,231만 원으로 ○○건설이 청구한 35억 3,100만 원보다 많아 오히려 초과지급되었고, 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원고가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건설이 완공예정일인 2007.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을 방치하다가, 2008. 4.경 원고와 사이에 타절정산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와 정정보도청구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원고는 그 자체 이름으로나 또는 21세기○○주식회사 등의 자회사 이름으로 강원 ○○, ○○, ○○ 및 ○○, 경북 ○○ 및 ○○, 제주 ○○ 및 ○○ 등 전국적으로 10곳에서 부동산개발을 추진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현재까

지 공사에 착수한 곳은 강원 ○○의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지와 ○○의 ○○온천 개발사업지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는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만 한 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8곳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부분 개발에 필요한 허가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이다.

(㉑)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대표이사 양○○)이 강원 ○○군 ○○읍 ○○리 일대 토지 1,421,494㎡에서 추진 중인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00. 5. 31. 위 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도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 3. 19.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후 같은 달 25.부터 시공사를 ○○○○ 주식회사로 하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중간에 시공사가 위 회사의 하수급체인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되었고, 그 후 1차 부지조성공사의 공정률이 8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㉒)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대표이사 양○○)가 ○○시 ○○면 ○○리 일대 토지 120,810㎡에서 추진 중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호텔, 콘도, 모텔, 상가,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등)의 경우 1995. 7. 13. 온천지구 지정 후 1999. 10. 27. 관광지 지정이 있었고, 2000. 6. 20.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온천(대표이사 양○○)으로,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로 정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사업시행에 필요한 소유권 내지 동의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㉓) 원고가 경북 ○○군 ○○면 ○○리 일대 토지 473,000㎡에서 추진 중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996. 12. 27.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설립되어 사업기간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07년에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하는 등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의 결과 요구된 사항을 보완 중이다.

(㉔) 21세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양○○)가 강원 ○○군 ○○면 ○○리 일대 토지 568,001㎡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콘도 150실 및 골프장 9홀)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007. 8. 22. 처음 ○○군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이래, 2007. 12. 14.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조건부 입안결정, 2008. 5. 28. 도의 제안서 사전검토 등을 거쳐 2009. 2. 3. 보완 제출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2회에 걸친 서면에 의한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완 제안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㉕) 주식회사 관광개발○○(대표이사 양○○)이 제주 ○○군 ○○읍 ○○리 일대 토지 1,126,662㎡에서 추진 중인 ○○파크 조성사업(호텔 770실, 콘도 1,300실 등의 숙박시설, 상가, 워터파크 등 운동·오락시설, 영화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의 경우에는 2004. 7. 31. 사업예정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 12. 경 2종 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현장여건과 사업계획의 불합리로 반려되었고, 그 후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이 2007. 7. 30.까지로 연장되었으나, 기한 내에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b) 원고가 제주 ○○시 ○○동 일대 토지 1,092,600㎡에서 추진 중인 ○○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08. 12. 15.자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및 소요사업비 납부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이 있었다.

(c)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관계관청에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 등이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d) 투자자와의 계약 내용 및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1) 원고는 강원 ○○○○타운 개발사업, ○○○○리조트 개발사업,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경북 ○○온천지구 개발사업, 울진 평해 및 후포 일대 부동산개발사업, 제주 ○○포 ○○동 부동산개발사업, ○○군 ○○부동산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 유치 시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 또는 ‘부동산투자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 양식(갑 제21호증의 1 내지 8)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고, 사업기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3년으로 정하여 원고는 그 기간 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30% 또는 투자면적 대비 10%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하여 정산하고(○○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과 ○○온

천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년이 고, 환지대상도 투자면적 대비 10%로 되어 있다), 행정질차 등으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될 때에는 사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지 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환지 시 일괄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투자금을 환지로 정산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원고는 ○○ 일대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제2호증의 6)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자 연 20%,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권리 보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1,000평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되, 투자자는 당해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박○○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4397호로 강원 ○○군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2006. 6. 29.자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약정된 2년 이내에 투자금 및 개발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위 사건은 2008. 11. 13. 원고가 박○○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 및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십 건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

고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소송 외에서의 합의로 소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 및 자회사들의 재무현황

(㉑) 원고 회사는 제주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24,004,456,464원인 반면 부채는 82,624,907,370원으로 60,292,987,322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31,494,472,787원인 반면 부채는 97,333,573,243원으로 66,835,149,696원 결손 상태로 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5 사업연도의 경우 6,250,000원, 2006 사업연도의 경우 3,430,990,051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3,197,277,833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798,481,043원 합계 11,432,998,927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44,947,970,459원이다.

(㉒) 21세기○○ 주식회사는 강원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44,376,496,430원인 반면 부채는 89,641,479,895원으로 45,802,932,319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46,195,915,269원인 반면, 부채는 98,786,027,328원으로 53,140,112,059원 결손 상태이다. 위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6 사업연도의 경우 6,195,686,80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467,073,765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369,409,103원 합계 18,032,169,672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60,978,200,705원이다.

(㉓) 주식회사 관광개발○○은 제주 ○○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25,265,451,396원인 반면 부채는 42,241,638,030원으로 18,496,335,549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24,370,152,571원인 반면 부채는 42,410,043,569원으로 19,539,890,998원 결손 상태이다. 위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6 사업연도의 경우 767,740,177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37,280,746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181,647,809원 등 합계 1,686,668,732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42,092,751,848원이다.

(㉔)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은 강원 ○○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21,162,049,649원인 반면 부채는 70,065,574,082원으로 50,097,981,012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40,302,471,131원인 반면 부채는 68,737,803,071원으로 29,635,331,940원 결손 상태이다. 위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6 사업연도의 경우 11,130,124,52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6,900,306,638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884,327,822원 합계 18,914,758,984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67,089,119,121원이다.

(라) 원고의 최근 영업 등의 현황

원고 회사 및 자회사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지연

으로 약정된 기한 내에 투자금을 환지로 청산하지 못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1.부터 경기 후퇴로 영업실적이 전월 대비 25~30%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 4월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50% 이하로 큰 폭으로 떨어져 2007년도에 70,393,000,000원에 이르던 총 매출액(투자금)이 2008년도에는 34,513,000,000원으로 급락하였다(이 사건 보도 이후로는 이 사건 보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로 찾아와 항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2008. 3.부터 ‘에이전트’라는 영업직원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같은 해 5월과 6월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정근거] 갑 제18,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6 내지 8, 10, 17 내지 22, 24 내지 2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 ○○시장, ○○군수, ○○군수, ○○군수, 경상북도 ○○군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적 취지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2~3년의 투자기간 경과 후 개발된 사업용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 말 현재 투자금은 원고의 경우 44,947,970,459원, 21세기○○ 주식회사의 경우 60,978,200,705원, 주식회사 관광개발○○의 경우 42,092,751,848원,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의 경우 67,089,119,121원으로 합계

215,108,042,133원(연도별로는 대략 2005년도 64,715,000,000원, 2006년도 65,537,000,000원, 2007년도 70,393,000,000원)이고, 여기에 2008년도 투자금 34,513,000,000원을 합하면 총 투자금이 2,496억여 원에 달한다. 그 중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투자기간이 종료한 투자금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이 되고, 투자기간을 3년으로 보더라도 2011년까지는 2,496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금과 관련하여 개발된 사업용지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사업들 중 현재 공사에 착수한 곳은 강원 ○○의 ○○위락시설 지구 개발사업과 ○○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두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자의 경우에는 2007년 말경에 공사가 중단된 이래 일체 진척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착공을 하였다고는 하나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최소한도 사용동의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등 중간적인 처분을 받았다가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실효되었거나, 사업기간 자체가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 등 3년이라는 투자기간 내에 최소한도 사업용지 개발만이라도 마치고 환지로써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갑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원고는 2009. 2. 14. ‘2009 위기극복 활성화 촉진대회’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재의 경영 위기가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여파로 인한 매출 급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자체 진단 아래 투자자

들 중에서 사업지 별로 대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전체 사업지를 총괄하는 총괄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종전과 같이 한 해에 6~7백억여 원에 달하던 신규 투자가 2008년 들어 약 절반으로 줄어든데다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힘든 관계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2~3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후에 환지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대표들로 하여금 경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도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장차 투자기간 경과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회사 청산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비상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찾지 못할 위험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진실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사별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나) 제1기사

(1) 원고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개는 2~3년의 사업기간 내에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개발된 토지를 환지하여 투자금을 정산하는 조건을 취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고, 전자의 경우에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지 시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2~3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사업

을 마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이는 투자를 유치할 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된 토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환지 이외에 추가로 매년 10%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1기사 중 ‘원고가 사업기간 동안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부분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 회사의 경우 2008. 12. 31. 현재 자산이 31,494,472,787원인 반면 부채는 97,333,573,243원으로 66,835,149,696원 결손 상태이고, 21세기○○주식회사의 경우 2007. 12. 31. 현재 자산이 44,376,496,430원인 반면 부채는 89,641,479,895원으로 45,802,932,319원 결손 상태인데, 이들 회사들의 목적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비용만 지출될 뿐 이익이 실현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채가 자산의 2~3배 규모나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2호중의 24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도 원고 회사 및 주요 자회사인 21세기○○주식회사, 주식회사 관광개발○○,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 등에 대한 감사결과 수백억 원 상당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된다는 감사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거액의 결손금을 이유로 기업 존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기사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사실에 입각한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다.

(다) 제2기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로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제1호),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제2호),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제3호),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제4호) 등을 들고 있다. 요컨대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약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을 제2호중의 18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 양○○은 2001. 5.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부동산개발 투자금으로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에 연 25%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3년 경과 시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금 대비 연 10%를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총 198명으로부터 합계 54억여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02.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연 10%의 지연배상을 하기로 약정한 점을 들어 원고의 투자금 모집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법적인 판단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

(라) 제3, 4기사

원고가 부동산컨설팅에이전트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유치사업 업무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영업부 관리규정(갑 제20호증)에 의하면 투자 목적의 입금을 실적금액으로 하여 실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12%, 부서장 3%, 지사장 3%로,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에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10%, 부서장 2%, 지사장 2%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총 입금실적에 따라 0.5% 내지 2% 또는 500만 원 내지 900만 원의 추가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제주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44,947,970,459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 수수료로 지출한 돈이 2005 사업연도의 경우 6,250,000원, 2006 사업연도의 경우

3,430,990,051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3,197,277,833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798,481,043원 합계 11,432,998,927원에 달한다. 21세기○○ 주식회사는 강원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60,978,200,705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돈이 2006 사업연도의 경우 6,195,686,80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467,073,765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369,409,103원 합계 18,032,169,672원에 달한다. 주식회사 관광개발○○은 제주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42,092,751,848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돈은 2006 사업연도의 경우 767,740,177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37,280,746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181,647,809원 등 합계 1,686,668,732원에 달한다.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은 강원 ○○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67,089,119,121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돈은 2006 사업연도의 경우 11,130,124,52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6,900,306,638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884,327,822원 합계 18,914,758,984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원고 회사와 자회사들을 합하여 투자금 유치실적이 2005년 64,715,000,000원, 2006년 65,537,000,000원, 2007년 70,393,000,000원, 2008년 34,513,000,000원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자회사들을 포함하여 그 동안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총 50,066,596,315원으로 총 투자유치금 235,158,000,000원의 21.29% 상당에 이르는바,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1/5 이상의

돈이 투자와 동시에 원고 및 그 자회사들의 영업 관련자들에게 비용조로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신규 투자액 65,537,000,000원 중 약 32.84%에 상당한 21,524,541,556원의 판매수수료가 지출되었고, 2007년에는 신규 투자액 70,393,000,000원 중 25.99%에 상당한 18,301,938,982원이 지출된 셈이다. 나아가, 개별회사별로 2007년에 투자금 순증가액과 단순 비교할 경우 판매수수료가 44.1% 내지 46.57% 상당액에 이르기도 한다.

한편,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이전에 피고 머니앤밸류의 머니위크에 보도되었던 ‘○○컨설팅, 의문의 부동산개발사업, 수천억 투자금 뭐 했길래 돌려주지 못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를 대리한 장○○ 팀장이 위 피고에게 투자금의 사용내역이나 근거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투자금 가운데 판매수수료로 빠져나간 돈이 과도하다는 등으로 투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제3, 4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마) 제5기사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 ○○군 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이 강원 ○○군 ○○읍 ○○리 일대 토지 1,421,494㎡에서 추진 중인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00. 5. 31. 위 회사가 사업시

행자로 선정되어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 3. 19.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후 같은 달 25.부터 시공사를 ○○○○ 주식회사로 하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중간에 시공사가 위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07년 말경 1차 부지조성공사의 공정률이 8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등록된 ○○건설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위락시설지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2006년도 청구액은 2,282,100,000원, 지급액은 1,997,498,000원, 2007년도 청구액은 1,764,602,000원, 지급액은 1,336,082,000원으로 제5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에 기성고보다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그렇다는 것에 불과하고, 2008. 4.경 위 회사와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하고도 그 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약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에 부합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가 높은 수익을 제시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 모으고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챙기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내역도 불분명한데다가, 정작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크고, 또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이 사건 기사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투자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여 많은 투자를 받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회사의 이익만 챙기고 결국 관련 사업은 중단되어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일부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객

관적인 사실에 배치되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들은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기사게재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기사들과 같이 원고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취지 기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나, 설령 이 사건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

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투자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성도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사건 기사들과 같은 내용의 보도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6] 각 생략 - 편집자 주





미국판례

공공기록은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보존성, 완전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의 실패 및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군정위원회는 기록 보존 정책에 반하여 삭제된 공공기록(이메일)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 State ex rel. Toledo Blade Co. 대 Seneca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사건
- Ohio주 대법원 No. 2007-1694
- 결정일 : 2008. 12. 9.

뉴스 취재

(ancillary injunctive relief) 청구를 기각한다.

[1] 기록에 대한 접근(Access to records) - 행정 (Administrative) - 일반규정 (In general, § 38.1401)

county 법원 건물의 철거 관련 이메일의 공개를 구하는 직무집행명령 (mandamus) 청구소송에서, 군정위원회 (board of county commissioners)에 대하여 법원 건물의 철거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문사의 부수적 금지명령

[2] 기록에 대한 접근(Access to records) - 행정 (Administrative) - 일반규정 (In general, § 38.1401)

관련 사건들이 여러 법원에 제기되어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할의 우선 원칙 (jurisdictional-priority rule)에 따르면 먼저 소송이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된 법원이 전체 사건의 판단 및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관할권을 취득한다. 이 사

건 소 제기 이전에 Ohio county의 주민들이 군정위원회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관할의 우선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신문사의 이 사건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에 대한 관할권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위 민사법원의 사건이 이 사건과는 다른 당사자 및 청구원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기록에 대한 접근(Access to records) - 행정(Administrative) - 일반규정(In general, § 38.1401) 법령상의 접근권(Statutory right of access) - 주 기록공개법(State open records act, § 44.17)

Ohio county의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신문사의 요구에 응하여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고 이를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의 신문사의 직무집행명령영장(writ of mandamus) 청구를 인용한다. 그 이유는, Ohio주의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law)인 Ohio Rev. Code 149.43은 공공기관(public office)에 해당하는 군정위원회에게 공공기록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군정위원들이 그들의 기록 보존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이메일들을 삭제하였으며, 이메일의 삭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그 이메일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고, 삭제된 이메일들이 아직 군정위원들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신문사의 입증 을 뒤집을 만한 군정위원회의 반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county의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정책(records retention and disposition policy)은 중요한 행정적, 재정적, 법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이메일을 보존하도

록 요구하고 있고 신문사는 이메일들이 위 정책에 반하여 삭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도록 입증 을 하였고, 군정위원회가 신문사에 제출한 이메일들 간에는 현저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한 군정위원은 county의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군정위원회가 삭제된 이메일이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군정위원회는 신문사가 삭제된 이메일의 복사본의 제출을 거부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오히려 군정위원회가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신문사는 데이터 복구 기술(forensic data-recovery technology)을 사용하면 삭제된 이메일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 을 하였고, 복구를 위한 비용이 과다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군정위원회가 기록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이상 법원이 군정위원회에게 복구를 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기록에 대한 접근(Access to records) - 행정(Administrative) - 일반규정(In general, § 38.1401) 법령상의 접근권(Statutory right of access) - 주 기록공개법(State open records act, § 44.17)

Ohio county의 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hio의 공공기록법인 Ohio Rev. Code § 149.43(B)이 공공기록은 “실비로(at cost)”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는 비용이 과다할 우려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이전될 수 있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기 위

하여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 신문사는 기록의 열람(review of records)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copies)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록의 열람권(right of inspection)에 관하여는 비용부담에 관한 위 149.43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군정위원회는 county의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중요한 행정적, 재정적, 법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가치는 요구 대상 기록의 보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위 149.43 규정은 공공기록의 공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사정은 기록공개 거부 정당화하지 못하며, 위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서의 당사자의 권리보다 더욱 강력한 것인데, 이는 공공기록에 대한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의 대상 그 자체가 그 기록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상 열거한 요소들이 복구비용을 신문사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요소 즉, 복구절차(forensic-recovery process)에 드는 비용이 과다할 수 있고, 이로써 많은 이메일이 복구될 확률은 별로 없다는 등의 요소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복구를 위한 군정위원회의 노력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된다.

[5] 기록에 대한 접근(Access to records) - 행정(Administrative) - 일반규정(In general, § 38.1401)

법령상의 접근권(Statutory right of access) - 주 기록공개법(State open records act, § 44.17)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래의 공공기록 열람 요구에 즉시 응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신문사의 직무집행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군정위원회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까지도 700여 쪽 이상의 이메일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공공기록 공개요구를 거부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신문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다. 그 이유는, 일단 군정위원회가 위 기록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메일의 불제출을 이유로 신문사의 직무집행명령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직무집행명령영장은 장래의 법률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발부되지는 않으며, 군정위원회가 이 사건 이외에 기록 제출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전력은 없고, 군정위원의 컴퓨터 보관함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군정위원회의 한 번의 실수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신문사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6] 기록에 대한 접근(Access to records) - 행정(Administrative) - 일반규정(In general, § 38.1401)

법령상의 접근권(Statutory right of access) - 주 기록공개법(State open records act, § 44.17)

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신문사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소송은 군정위원회가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할 의무가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 위 쟁점에 관한 군정위원회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정위원회에 대하여 장래의 공공기록 제출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신문사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사는, 군정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군정위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고, 장래의 기록 공개 요구에도 응하며,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직무집행명령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구하였다.

군정위원회에게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제하는 영장청구 부분은 인용하나, 장래의 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영장청구부분 및 변호사 비용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청 구 인 측 : Fritz Byers, Toledo, Ohio

피청구인 측 : Mark Landes, Mark H. Troutman, and Mark R. Weaver, of Isaac, Brant, Ledman & Teetor, Columbus, Ohio

재 판 관 : Moyer (대법원장), Pfeifer, Lundberg Stratton, O' Connor, O' Donnell, Cupp, Lanzinger (각 대법관)

Pfeifer, J. 대법관 :

이 소송은 Seneca County의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직무집행명령영장의 청구에 관한 것이다. 그 사항은 (1) 2006년 1월 1일 이후 군정위원들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e-mail)들 및 2007년 8월까지 요구된 기록들에 대한 공개와 향후에도 요구가 있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기록을 공개할 것 (2) 공개요구된 이메일 중 군정위원들에 위하여 이미 삭제된 것을 복구하고, 즉시 이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것 등이다. 우리는,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공개요구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삭제된 이메일들을 그의 비용으로 복구하고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할 것을 강제하는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나 우리는,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향후의 공공기록 공개 요구에 즉시 응할 것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Seneca County의 법원 건물(The Seneca County Courthouse)

Seneca County의 법원 건물은 1884년 건축되었다. 2002년, 유권자들은 위 법원 건물의 수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판매세(sales-tax) 인상안을 거부하였다. 위 법원 건물을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에 관한 수년간의 대중적인 논쟁 끝에, 피청구인인 Seneca County 군정위원회는 건축엔지니어링 회사에 county 정부의 향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간 확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군정위원회의 계획안 채택(The Board's Adoption of a Plan)

2006년 8월, Seneca County 군정위원인 Benjamin E. Nutter는 건축엔지니어링 회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15년짜리 “공간 확보 종합 기본 계획(Space

Needs Master Plan)”을 만들었다. 위 계획안에 따르면, 군정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위 회사는 county 정부의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잠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네 가지는 법원 건물의 철거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Nutter의 요약안에 따라, 군정위원회는 법원 건물의 철거를 포함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Nutter의 요약안에 담긴 정보는 군정위원회가 건축엔지니어링 회사의 보고서를 심사하기 전부터 이미 대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개개의 군정위원들 역시 Nutter의 요약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Nutter는 그의 보고서 초안을 이메일로 다른 군정위원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다음번 공개회의 이전에 위 사안에 관한 투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Nutter는 다른 군정위원들로부터 아무런 이메일 답신을 받지 않았고, 어느 군정위원도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해결책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모임에서도 위 사안을 논의한 바 없었다.

2006년 8월 31일, 군정위원회는 위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Tiffin Advertiser Tribune지의 전직 기자에 따르면, 군정위원회에서는 선정된 특정한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공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회의가 끝난 후 한 군정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위 계획의 초안이 작성되는 동안 위원들 간에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다른 위원들이 그 절차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Nutter는 군정위원들 간에 이메일을 통하여 위 계획안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거나 공개회의 석상 이외의 장소에서 군정위원들 간에

위 계획안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이를 명백히 부인했다.

군정위원회의 위 계획안 채택은 낮은 법원 건물의 향후 교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 동안 위 법원 건물의 철거 결정과 관련하여 군정위원회의 일련의 독립된 결정들이 공개회의에서 이루어져 왔다.

기록에 대한 공개요구와 제출(Records Requests and Responses)

2007년 8월 6일, 청구인인 Toledo Blade Company는 군정위원회에게, 그가 군정위원들 상호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검토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이메일들은 구체적으로, Seneca County의 군정위원들인 David G. Sauber, Michael A. Bridinger, and Benjamin E. Nutter의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22일까지의 “모든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삭제된 메시지 및 메시지의 초안들”과 Seneca County 군정위원들인 Sauber, Nutter, and Joseph Schock의 2006년 이후의 “모든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삭제된 메시지 및 메시지의 초안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2007년 8월 16일, 군정위원회는 Blade의 위 8월 6일자 요구에 응하여 기록들을 제출하였는데,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소송준비자료의 특권(work product privilege)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록들은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7년 8월 31일과 9월 4일, 군정위원회는 Blade의 8월 22일자 요구에 응하여 이메일의 복사본들을 제출하였다.

Blade에 따르면, 군정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19일까지 그 위원인 Nutter의 편지함(inbox)에 아무런 이메일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 위원인 Bridinger의 편지함(inbox)과 보낸 메시지 폴더(folder)에 아무런 이메일도 작성하지 않았다. Blade는 또한, Nutter 위원이 그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19일 사이에 받은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Bridinger 위원이 그가 최근에 이르러 서야 county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그의 편지함에 있던 모든 이메일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Blade는 군정위원인 Sauber가 제출한 이메일들의 날짜 사이에는 현저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Seneca County의 기록 보존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메일 중 행정적, 재정적, 법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하고, 그러한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들은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정위원회의 직원에 의하면, 컴퓨터의 개별 사용자가 이메일이 삭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왔다고 한다. 2007년 9월 10일, Blade가 군정위원회에게 그들의 요구의 대상이 된 이메일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지적한 후, 군정위원회는 Nutter 위원의 숨겨진 파일 저장고(archive)에 들어 있는 이메일들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Nutter 위원이나 군정위원회 어느 누구도 이전에는 그 폴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군정위원회는 같은 날 Blade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발견한 이메일들을 앞으로 48시간 내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군정위원회는 9월 17일 Blade에게 위 기록들을 제출하

였다.

그 직원에 따르면, 군정위원회는 이메일의 제출을 요구받은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폴더를 검색하였고, Blade의 요구에 응하여 가능한 모든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특히, 위 이메일 제출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군정위원회를 지원한 Buckeye IT Services는 이메일 제출 요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메일들을 복구하고 .pst 파일들의 경로를 찾아내어 위 사람들의 계정에 사용된 모든 .pst 파일들을 복구하였다고 한다. 군정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위 업자는, “매우 비싼 분석 도구(forensic tools)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를 추가로 복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의하여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Mandamus Action)

군정위원회가 추가로 기록들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Blade는 9월 10일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Blade는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직무집행명령영장을 청구하였다. (1) 가능한 공공 기록의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고 향후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항상 이에 응할 것 (2) 제출 요구된 기록들 중 이미 삭제된 것들의 내용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의 내용을 보고할 것 (3) 위와 같이 복구된 이메일들을 Blade가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개할 것. Blade는 또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도 청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Blade는, 군정위

원회가 법원 건물과 관련된 이메일을 폐기하거나 법원 건물의 철거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 억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포함한 부수적 금지명령(ancillary injunctive relief)을 하였다. 군정위원회가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한 후, 우리는 Blade의 직무집행명령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보조적 가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관한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확정된 후, 이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에 회부되어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제 본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부수적 금지명령(Ancillary Injunctive Relief)

Blade는 직무집행명령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법원 건물의 철거를 방지함으로써 군정위원회의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 R.C. 121.22.)의 침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군정위원회에 대하여 법원건물의 철거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수적 금지명령을 발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군정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의공개법 위반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The Blade는 이에 응하여, 이 사건이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R.C. 149.43)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오직 공공기록법의 규율을 받는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이전에 Blade의 부수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State ex rel. Toledo Blade Co., 115 Ohio St.3d 1418, 2007-Ohio-5231, 874

N.E.2d 536. 참조).

관할의 우선 원칙(Jurisdiction-Priority Rule)

The Blade의 직무집행명령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군정위원회의 관할의 우선 원칙(jurisdiction-priority rule)에 기한 항변, 즉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이전에 위 county의 주민 6명이 군정위원회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법원의 사건이 이 사건의 이 법원에 대한 관할권 성립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민사법원의 사건에서, 주민들은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전의 영장 취지와 위원회 회의 시간을 엄수함으로써 기록공개법(R.C. 149.43) 및 다른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의 직무집행명령영장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원인 변경서(amended complaint)를 제출하였다.

관할의 우선 원칙에 따르면, “관할권이 경합하는 여러 법원 중에, 먼저 소송이 제기되어 절차가 처음 개시된 법원이 나머지 모든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전체 사안의 판단 및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관할권을 취득한다.”(State ex rel. Racing Guild of Ohio v. Morgan (1985), 17 Ohio St.3d 54, 56, 17 OBR 45, 476 N.E.2d 1060 및 위 판결에서 인용된 State ex rel. Phillips v. Polcar (1977), 50 Ohio St.2d 279, 4 O.O.3d 445, 364 N.E.2d 33, syllabus 참조). “일반적으로 관할의 우선 원칙은 양 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고, 만약 먼저 제기된 소송의 청구원인 또는 당사자가 나중에 제기된 소송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제기된 소송이 나중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State ex rel. Brady v. Pianka, 106 Ohio St.3d 147, 2005-Ohio-4105, 832 N.E.2d 1202, ¶ 13 및 위 판결에서 인용된 State ex rel. Shimko v. McMonagle (2001), 92 Ohio St.3d 426, 429, 751 N.E.2d 472. 참조). 위 민사법원의 사건은 이 사건과는 다른 당사자와 다른 청구원인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관할의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he Blade의 이 사건 직무집행명령청구는 그의 2007년 8월의 기록 공개 요구 및 이메일 삭제 혐의에 근거한 것인 반면, 위 민사법원의 청구에는 어떠한 기록 공개 요구나 기록의 폐기에 관하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록 사건에서의 직무집행명령(Mandamus in Public-Records Cases)

“직무집행명령은 Ohio의 공공기록법(R.C. 149.43, Ohio’s Public Records Act)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적절한 구제수단이다.”(State ex rel. Physicians Commt. for Responsible Medicine v. Ohio State Univ. Bd. of Trustees, 108 Ohio St.3d 288, 2006-Ohio-903, 843 N.E.2d 174, ¶ 6; R.C. 149.43(C). 참조). 우리는 공공기록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허락하고 그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법(R.C. 149.43)을 자유롭게 해석한다(State ex rel. Carr v. Akron, 112 Ohio St.3d 351, 2006-Ohio-6714, 859 N.E.2d 948, ¶ 29. 참조).

‘공공기록(Public record)’이란 county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public office)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의

미한다(R.C. 149.43(A)(1). 참조). 군정위원회가 공공기록법의 규율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State ex rel. Cincinnati Enquirer v. Krings(2001), 93 Ohio St.3d 654, 657, 758 N.E.2d 1135. 참조). 위원회는 또한 제출요구의 대상이 된 위원들의 이메일이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다거나 공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다(State ex rel. Wilson-Simmons v. Lake Cty. Sheriff’s Dept. (1998), 82 Ohio St.3d 37, 42, 693 N.E.2d 789, fn. 1 (공공기관의 이메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의 조직, 정책, 결정, 절차, 기능 기타 활동들을 기재한 것일 경우에는 R.C. 149.011(G) 및 149.43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록에 해당할 수 있다); State ex rel. Cincinnati Enquirer v. Jones-Kelley, 118 Ohio St.3d 81, 2008-Ohio-1770, 886 N.E.2d 206, 판결요지 중 두 번째 단락 (“공공기록법에 따른 공개의 예외사유는 공공기록의 관리자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그 관리자는 예외사유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

삭제된 기록의 복구(Recovery of Deleted Records)

이 사건의 기본 쟁점은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제출요구의 대상이 되었으나 불법적으로 삭제된 이메일의 내용을 복구하고 즉시 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무집행명령영장을 Blade에게 발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Blade는 “공공기관이 불법적으로 공공기록을 삭제하였으나 그 기록의 내용이 복구 가능한 경우, 공공기록을 보존할 공공기관의 의무에는 공공기록법에 따라 삭제된 공공기록을 복구하여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된다(이는 직무집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공공기록은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하나의 수단이므로, 그 보존성, 완전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실패 및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Kish v. Akron, 109 Ohio St.3d 162, 2006-Ohio-1244, 846 N.E.2d 811, ¶ 16. 참조). 의회는 R.C. Chapter 149의 규정들을 비롯하여, 정부의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가결의 권리임을 확인하는 규정들을 제정하였다(Id. at ¶ 17). “만일 기록들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존되지 못한다면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공동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R.C. 149.351. 규정은 공공기록의 폐기, 훼손, 삭제, 이전 및 처분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Id. at ¶ 18).

제출요구의 대상이 된 몇몇 이메일이 삭제될 당시 시행되던 R.C. 149.43(B)(1)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군정위원회는 “공공기록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2006 Sub.H.B. No. 141. 참조). 이와 같은 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정에도 여전히 존재한다(R.C. 149.43(B)(2) (“공공기록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록의 관리자는 공공기록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참조). 공공기관은 또한 적법하게 채택된 공공기록의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정책에 따라 R.C. Chapter 149.의 규정 위반 없이 기록들을 처분할 수 있다(R.C.

149.351 and 149.38.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공공기록에 해당하는 이메일들이 기록 보존 정책(records-retention policy)에 반하여 삭제된 경우 R.C. 149.43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Wilson-Simmons, 82 Ohio St.3d at 42, 693 N.E.2d 789 사건(우리는 위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그 컴퓨터 시스템의 정형적인 작업과정에서 기록의 고쳐 쓰기를 통하여 특정의 적용 가능한 기록 보존 규정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또는 그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에서 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기록에 관한 소송이다.

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우리는, 만일 이메일을 포함한 공공기록들이 적법하게 채택된 기록 보존 정책(records-retention policy)에 따라 적절하게 보존된 경우에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사건의 어떤 당사자도, 군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받은 이메일을 적절하게 보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이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잠정조치(caveat)와 함께,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본안(merits)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최소한 2005년 이후에는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의 관할에 복종하는 거의 모든 법적 실체(legal entity)는 그 일부 기록들을 전자적 방식(electronic form)에 의하여 작성 및 보존하고 있

다”(Annotation, Electronic Spoliation of Evidence (2005), 3 A.L.R.6th 13, 23, Section 2. 참조). “이메일(e-mail)은 특히 사업적 정보교류(business communication)에 있어 효율적인 도구이다”(41 American Jurisprudence Proof of Facts 3d (2008) 7,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Electronic Mail as Evidence, Section 1. 참조).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컴퓨터 데이터는 단지 시스템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디스크 또는 하드 드라이브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노출(disclosure)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삭제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메일 또는 컴퓨터 파일은 그것들이 스크린으로부터 사라진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기저로부터 복구될 수 있다”(Annotation, Discovery of Deleted E-mail and Other Deleted Electronic Records (2007), 27 A.L.R.6th 565, 576, Section 2. 참조).

“삭제된 컴퓨터 파일은, 그것이 이메일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발견될 수 있다는 명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Antioch Co. v. Scrapbook Borders, Inc. (D.Minn. 2002), 210 F.R.D. 645, 652 및 위 판결에서 언급된 다른 판결들 참조 또한 2008 Staff Note, Civ.R. 34 (“Civ.R. 34(A)의 수정법률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발견은 위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고 위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참조). 법원은 다양한 사안에서, 전자적 자료(electronic data)가 당해 사건에 적절한 정보를 포함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위 자료를 복구하도록 명해왔다(일반론에 관하여 27 A.L.R.6th 565 참조. 또한 Haig, 2 Business and

Commercial Litigation in Federal Courts (2d Ed. 2007), Section 21:33 (“이미 삭제된 전자적 자료도 백업시스템(back-up systems)을 통하여 복구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컴퓨터로부터 삭제되었으나 백업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복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왔다”) 참조).

R.C. 149.43 규정에 따른 공공기록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그가 보존할 법령상의 의무를 가지는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은 R.C. 149.43(B)의 규정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제출요구의 대상이 된 이메일들은 단지 Blade의 공공기록에 관한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소송의 대상 그 자체이다. 우리는 공공기관이 언제 R.C. 149.43(B) 규정에 따라 삭제된 이메일들의 내용을 복구하고 이를 열람에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 삭제된 이메일들이 이미 파괴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기록들이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R.C. 149.43(B) 규정에 따라 이를 복구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State ex rel. Lanham v. Smith, 112 Ohio St.3d 527, 2007-Ohio-609, 861 N.E.2d 530, ¶ 15 (공공기록에 관한 직무집행명령청구소송에서,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기록에 대한 복구 및 열람제공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참조). 따라서, 제출요구의 대상이 된 이메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더 이상 직무집행명령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State ex rel. Cincinnati Enquirer, Div. of Gannett Satellite Information Network, Inc. v. Cincinnati Bd.

of Edn., 99 Ohio St.3d 6, 2003-Ohio-2260, 788 N.E.2d 629, ¶ 15 (청구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직무집행명령영장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정위원들에 의하여 단순히 몇몇 이메일들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것들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27 A.L.R.6th at 576, Section 2. 참조). Blade는 그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삭제된 이메일은 다른 데이터 및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삭제되었다고 해도 하드 드라이브를 스캔함으로써 쉽게 복구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하드 드라이브의 공간이 새로운 데이터에 의하여 수정되기(overwritten)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군정위원회는 삭제된 이메일들이 아직 컴퓨터에 남아있다는 점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 이메일들이 군정위원들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존재하고 있는 한, 위 이메일들은 공공기록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State ex rel. Dispatch Printing Co. v. Columbus (2000), 90 Ohio St.3d 39, 41, 734 N.E.2d 797 (“공공기관의 기록이 정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한, 그것은 공공기록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참조}.

둘째, 삭제된 이메일의 복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lade는 이메일들이 county의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정책(records-retention-and-disposition policy)에 위반하여 삭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일응의 추정(prima facie showing)이 성

립하도록 해야 한다(Cf., e.g., O’Brien v. Olmsted Falls, Cuyahoga App. Nos. 89966 and 90336, 2008-Ohio-2658, 2008 WL 2252527, ¶ 17 (파괴된 문서의 복구를 위해 입증해야 할 요소에 관한 원고의 입증책임); Kish, 109 Ohio St.3d 162, 2006-Ohio-1244, 846 N.E.2d 811, ¶ 9 (연방법원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공무원이 특정 기록들을 파괴함으로써 R.C. 149.351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참조). “반대로 이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에 허용된 한도 내에서는 공무원이나 행정관료 및 공공위원회가 그들의 법적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State ex rel. Shafer v. Ohio Turnpike Comm. (1953), 159 Ohio St. 581, 590, 50 O.O. 465, 113 N.E.2d 14; Toledo v. Levin, 117 Ohio St.3d 373, 2008-Ohio-1119, 884 N.E.2d 31, ¶ 28 참조).

이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요구에 따라 군정위원회가 제출한 이메일들에는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utter 위원회의 편지함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19일까지 아무런 이메일도 제출되지 않았고, Bridinger 위원회의 공공 계정에서 그의 임기가 시작된 2007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아무런 이메일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2006년 이후 Sauber 위원이 작성한 이메일들 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전 위원인 Schock의 경우는 2006년에 작성된 어떠한 이메일도 제출되지 않았다. Bridinger 위원은 최근에 이르러서

야 county 업무에 관련된 이메일들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들이 county의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규정(records-retention-and-disposition schedule)에 반하여 삭제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동안 작성된 공공기관의 모든 이메일이 행정적, 재정적, 법적 또는 역사적으로 별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이러한 추론이 배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군정위원회는 county 법원 건물에 관련된 이메일들이 법적 또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군정위원회는 이메일들의 삭제가 county의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규정(records-retention-and-disposition schedule)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불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군정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르면 기록의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 - 이 사안에서는 각 군정위원들이다 - 가 책임질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군정위원회는, 제출된 이메일들의 날짜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들이 있다는 점에 관한 Blade의 입증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간격들로부터 몇몇 이메일들이 위 규정에 반하여 삭제되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Bridinger 위원이 그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업무 관련 이메일들을 보관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Blade의 입증으로부터도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R.C. 149.43 규정과 연관지어 R.C. 149.35 및 149.38 규정의 취지를 정부기관의 개별 임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이메일을 삭제할 권한을 주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약 그

렇게 해석한다면 그들에게 공공기록을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R.C. 1.47(C); State ex rel. Todd v. Felger, 116 Ohio St.3d 207, 2007-Ohio-6053, 877 N.E.2d 673, ¶ 10 (법원은 불합리한 결과를 회피하도록 법 규정을 해석할 의무가 있다) 참조).

군정위원회는 Blade의 입증에 의하여 성립한 다음의 추정, 즉 군정위원들이 중요한 행정적, 재정적, 법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이메일들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다. 군정위원회는 어떠한 군정위원들로부터도 그들이 삭제한 이메일이 중요한 행정적, 재정적, 법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affidavit)를 받아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실, 군정위원회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된 한 군정위원의 진술서에는 Seneca County의 법원건물이 오랜 기간 동안 대중의 주된 관심사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군정위원회는 또한, “군정위원회가 이미 삭제되었다고 의심되는 이메일의 복사본을 제출해달라는 Blade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Blade의 직무집행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군정위원회가 위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군정위원회가 부담한다. 왜냐하면, 위 사항은 Blade가 알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State ex rel. Cincinnati Enquirer, Div. of Gannett Satellite Information Network, Inc. v. Dupuis, 98 Ohio St.3d 126, 2002-Ohio-7041, 781 N.E.2d 163, ¶ 8-9 (공공기록에 대한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에서 피청구인들이 요구의 대상이 된 기록들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에 실패한 사안이다); *State ex rel. Natl. Broadcasting Co. v. Cleveland* (1988), 38 Ohio St.3d 79, 83, 526 N.E.2d 786 (공공기록의 관리인에게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의 적용 예외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위 관리인이 공공기록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따라서, Blade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군정위원회가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규정(records-retention-and-disposition schedule)에 위반하여 이메일들을 삭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삭제된 이메일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Blade는 그 준비서면에서, “최소한 삭제된 이메일들 중 일부는 특정한 복구 기술을 통하여 복구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Blade는 “삭제된 이메일은 다른 데이터 또는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복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스캔함으로써 쉽게 복구될 수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데이터 복구 서비스에 관한 컴퓨터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삭제된 이메일이 실제로 복구될 수 있는 것인지는 위 프로그램에 의한 복구 및 분석이 시도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위 전문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Blade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삭제된 이메일들의 복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군정위원들이 기록 보존 및 처분 규정에 위반하여 이메일

일들을 삭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추정이 성립한 이 사안에서, 이 쟁점에 관하여는 이 정도의 입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Williams v. Williams* (Sept. 24, 1992), Franklin App. No. 92AP-438, 1992 WL 246020, *2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형평법상의 원칙”을 언급한 사안이다); *Sikora v. Sikora* (1972), 160 Mont. 27, 31, 499 P.2d 808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위법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형평법상의 원칙”을 인정한 사안이다) 참조).

넷째, 단지 복구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과다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복구 명령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피청구인은 많은 비용 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통상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공기록들의 열람 및 복사를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State ex rel. Beacon Journal Publishing Co. v. Andrews* (1976), 48 Ohio St.2d 283, 289, 2 O.O.3d 434, 358 N.E.2d 565 참조). 사실, 군정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수만 달러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위 이메일들이 아직 군정위원들의 컴퓨터 내에 존재하고 공공기록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 한에는, 군정위원회는 위 이메일들을 정리하여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R.C. 149.43(B) (2); *Dispatch Printing*, 90 Ohio St.3d at 41, 734

N.E.2d 797 (공공기록이 정부기관에 의해 보관되고 있는 한, 그 기록은 공공기록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참조).

마지막으로, 삭제된 이메일들의 복구를 위한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군정위원회는 “제출요구의 대상이 된 모든 공공기록은 즉시 준비되고, 누구에게든지 정규근무 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실비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R.C. 149.43(B)(1) 규정에 따라 Blade가 위 복구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lade가 요구한 것은 이메일의 사본이 아니라 그 열람이기 때문에 군정위원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을 열람할 권리(right of inspection)에 관하여는, 기록을 복사할 권리(right to request copies)와는 달리, 비용부담에 관한 R.C. 149.43.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State ex rel. Warren Newspapers, Inc. v. Hutson(1994), 70 Ohio St.3d 619, 624, 640 N.E.2d 174. 참조}. 군정위원회의 위 주장은 “정부기관은 만약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사람이 기록의 복사본이 불충분하거나 쓸모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또 그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R.C. 149.43 규정에 따라 컴퓨터 테이프의 일부를 복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State ex rel. Margolius v. Cleveland (1992), 62 Ohio St.3d 456, 460, 584 N.E.2d 665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에서 Blade는 단지 기록의 열람만을 구할 뿐이므로, 위 판결의 인용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위 판결은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정책(records-

retention-and- disposition policy)에 위반하여 삭제된 이메일에 관련된 것도 아니다.

삭제된 이메일의 공개(discovery)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일반 원칙은 “삭제된 전자 데이터를 복구하는 비용이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복구비용 부담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notation, 27 A.L.R.6th at 577, Section 3; 8 Wright, Miller, and Marcus,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Supp.2008) 64, Section 2008.2, construing Fed.R.Civ.P. 26(b)(2)(B) (“법원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자료의 공개를 명할 경우에는, 공개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그 자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Civ.R. 26(B)(4) (2008년 7월 1일 시행) (법원이 전자적으로 집적된 정보의 제출을 명할 경우에는, 그 형태, 범위, 시기, 비용의 분담을 정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참조}.

우리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삭제된 이메일의 복구 비용을 군정위원회에게 부담시키기로 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 (1) R.C. 149.43 규정에 따르면,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공공기록의 열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고, (2) 군정위원회가 기록 보존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3) R.C. 149.43 규정은 공공기록의 공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4) R.C. 149.43 규정의 적용 거부를 정당화할만큼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취지의 주장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5) R.C. 149.43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의 공개를 요

구할 권리는 민사소송규칙(Civ.R.) 26에 의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서의 당사자의 권리보다 더욱 강력한 것인데, 그 이유는 공공기록에 대한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의 대상 그 자체가 그 기록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구 비용을 Blade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1) 복구절차(forensic-recovery process)에 드는 비용이 과다할 수 있고, (2) 복구될 수 있는 이메일이 최소한에 그칠 우려가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보면, 복구 비용을 군정위원회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그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기록 공개를 위한 군정위원회의 노력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에 따른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의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State ex rel. Consumer News Servs., Inc. v. Worthington City Bd. of Edn., 97 Ohio St.3d 58, 2002-Ohio-5311, 776 N.E.2d 82, ¶ 37 (공공기록에 대한 직무집행명령청구소송에서 피청구인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된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참조).

따라서, 우리는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삭제된 이메일들을 복구하고 그 즉시 이를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도록 강제하는 직무집행명령영장(writ of mandamus)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군정위원회는 위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결정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청구인에게 위

의무의 이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래의 공공기록 제출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명하는 직무집행명령(Mandamus to Compel the Board to Provide Access to Public Records in the Future without Delay)

Blade는 다음으로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래의 공공기록 열람 요구에 즉시 응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직무집행명령영장을 발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Blade는, 군정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까지도 700여 쪽 이상의 이메일들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되풀이되는 공공기록 제출요구 불응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직무집행명령영장은 발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일단 군정위원회가 요구에 응하여 대상 기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메일들에 대한 Blade의 직무집행명령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State ex rel. Toledo Blade Co. v. Ohio Bur. of Workers' Comp., 106 Ohio St.3d 113, 2005-Ohio-6549, 832 N.E.2d 711, ¶ 16 (일반적으로, 공공기록에 대한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요구의 대상이 된 기록이 제출되면 그 청구를 인용하는 것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생긴다) 참조).

둘째, 일반적으로 “직무집행명령영장은 장래의 일반적인 법률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발부되지 않는다”(State ex rel. Leslie v. Ohio Hous. Fin.

Agency, 105 Ohio St.3d 261, 2005-Ohio-1508, 824 N.E.2d 990, ¶ 49 및 이 판결이 인용한 State ex rel. Kirk v. Burcham (1998), 82 Ohio St.3d 407, 409, 696 N.E.2d 582; State ex rel. United Auto., Aerospace & 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 v. Bur. of Workers' Comp., 108 Ohio St.3d 432, 2006-Ohio-1327, 844 N.E.2d 335, ¶ 38. 참조).

셋째, 군정위원회가 부주의하게 군정위원 Nutter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들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이메일들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군정위원회의 의무 위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Blade의 요구를 포함하여 그 이외의 다른 공공 기록 제출요구에 대하여 군정위원회가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두 개의 문서 제출요구를 한 동일한 기간 동안 Blade는 여덟 개의 문서제출요구를 더 하였고, 군정위원회는 위 제출요구들에 즉시 응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군정위원회가 Nutter 위원의 컴퓨터 파일 저장고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이메일들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부주의에 따른 실수에 불과한 것이지 또다시 반복될 성질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Blade는 군정위원회의 부주의하게 이루어진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사실, 군정위원회는 보관되어 있던 위 이메일의 존재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 즉시 위 이메일들을 찾아내고 Blade에게 가능한 빨리 위 이메일들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Consumer News Servs., 97 Ohio

St.3d 58, 2002-Ohio-5311, 776 N.E.2d 82, ¶ 32 (“피청구인의 공공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의무불이행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공공기록의 적시 제출 여부를 쟁점으로 삼을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판결을 포함하여 Blade가 언급한 사안들은 이 사건의 사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Blade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Blade는 제출의무불이행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래의 공공기록 제출요구에 즉시 응하여 그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직무집행명령영장청구를 기각한다.

변호사 비용(Attorney Fees)

Blade는 또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도 청구하였다. R.C. 149.43 규정의 개정법은 2007년 9월 29일 시행되었는데, 그 (C)항은 공공기록에 관한 직무집행명령 청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2006 Sub.H.B. No. 9. 참조). 위 개정법은 그 시행일 이전에 제기된 문서 제출요구 또는 관련소송에까지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007년 9월 29일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위 일자 이전에 존재하던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State ex rel. Cincinnati Enquirer v. Jones-Kelley, 118 Ohio St.3d 81, 2008-Ohio-1770, 886 N.E.2d 206, ¶ 47, fn. 1.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종전 R.C. 149.43 규정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배상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State ex rel. Fox v. Cuyahoga Cty. Hosp. Sys. (1988), 39 Ohio St.3d 108, 529 N.E.2d 443, 판결요지의 제2항 부분(paragraph two of the syllabus) 참조}. “R.C. 149.43(C) 규정에 따라 변호사 비용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에 있어, 법원은 정부기관이 공공기록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한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당해 기록의 공개를 통하여 대중들이 얻는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State ex rel. Wadd v. Cleveland (1998), 81 Ohio St.3d 50, 54, 689 N.E.2d 25.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삭제된 이메일의 복구관련 쟁점에 대하여, 군정위원회는 주장이 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State ex rel. Cincinnati Enquirer v. Jones-Kelley, 118 Ohio St.3d 81, 2008-Ohio-1770, 886 N.E.2d 206, ¶ 48 (변호사 비용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이 인가받은 양육자의 특정 정보의 공개에 대한 예외사유의 주장을 고려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참조}. “법원은 미해결된 법적 쟁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점을 취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 {State ex rel. Olander v. French (1997), 79 Ohio St.3d 176, 179, 680 N.E.2d 962. 참조} : 또한,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래의 공공기록 제출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Blade의 직무집행명령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tate ex rel. Citizens for Open, Responsive & Accountable Govt. v. Register, 116 Ohio St.3d

88, 2007-Ohio-5542, 876 N.E.2d 913, ¶ 43 (청구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그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조}. 따라서, 우리는 Blade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Conclusion)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고 이를 즉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강제하는 내용의 직무집행명령영장의 청구를 인용한다. 군정위원회는 이 결정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청구인에게 위 각 조치의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정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이 공공기관에게 공공기록 제출요구에 응하는 데 끝없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메일 사용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어쨌든 간에, 이 판결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록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정책(records-retention-and-disposition policies)에 따른 그들에 의무에 관하여 좀 더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위 정책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와 달리 공공기록에 대한 적절한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기록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은 공동화될 것이다” (Kish, 109 Ohio St.3d 162, 2006-Ohio-1244, 846 N.E.2d 811, ¶ 18. 참조.) 이에 더하여, “궁극적으로 공공기록

법에 따른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이 법원이 아니라 주의회이다”라는 점을 밝혀둔다.

한편, 우리는 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래의 공공기록 제출요구에 즉시 응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Blade의 직무집행명령영장 청구 및 변호사 비용 청구를 기

각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 Vol.37, No.1, pp.1007~1016.

번 역 : 진 상 훈 (춘천지방법원 판사)



일본판례

표현에 지나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의견과 논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의견과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원 고 : 고노다로(甲野太郎)
- 피 고 : 창가학회(創價學會)
동 대표자 대표임원 마사끼마사아끼(正木正明) 외 5명
- 사 건 명 :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5(7) 제9248호
- 판결내용 : 2009. 1. 28 민사32부 판결, 기각 (확정)
- 참조조문 : 민법 709조, 710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I. 피고 창가학회(이하 「피고학회」로 한다)와 피고 이케다다이사꾸(池田大作 · 이하 「피고池田」로 한다)는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1,0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II. 피고 하나코(花子)는 원고에 대해 6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Ⅲ. 피고 하루코(春子)는 원고에 대해 3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Ⅳ. 피고 이치로(一郎)는 원고에 대해 3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V. 피고학회, 피고 이케다(池田) 및 피고 아키다니(秋谷)는 본 판결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창가신보(創価新報) 12면 지상에 별지 사죄문을 게재하라.

제2 사안의 개요

I. 다툼이 없는 사실

1. 당사자 등

가. 원고는 피고학회 부이사장, 고문변호사로 있다가 제명된 후 니치렌쇼슈(日蓮正宗)의 신도가 되어 집필과 강연 등을 통해 피고학회에 대한 비판활동을 전개해온 자이며, 1981년 공갈죄로 피소되어 도쿄변호사회를 떠났다.

나. 피고들

(1) 피고학회는 종교법인으로 創価新報 등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2) 피고 池田은 피고학회의 회장(1960년 ~ 1980년), 명예회장을 지낸 자이다.

(3) 피고 秋谷은 피고학회 회장(1982년 ~ 2006년)을 지낸 자이다.

(4) 고 乙山은 피고학회 부회장을 지낸 자로 2004년 3월 사망했으며, 그의 상속인은 부인인 피고 花子, 자식인 피고 春子 및 피고 一郎이다.

2. 본 건 서적 및 본 건 각 기사

가. 고 乙山은 「이런 나쁜 놈은 없다! 甲野太郎의 『嘘』와 『闇』이라는 제목으로 16회의 연재기사(이하 「본 건 연재 1. 로 한다」)를 집필, 2002년 1월 16일자 이후의 創価新報에 게재했다.

나. 고 乙山은 본 건 연재 1. 중 1 ~ 8회까지의 연재분을 발췌·가필하여 「인간실격, 이런 나쁜 놈은 없다, 판가름 난 甲野太郎의 정체」라는 제목의 서적(이하 「본 건 서적」으로 한다)을 집필, 2002년 6월 발행했다.

다. 피고학회의 문예부 청년회의는 「이것이 甲野太郎의 거짓이다! 단말마에 허덕이는 사기꾼의 허구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9회에 걸친 연재기사(이하 「본 건 연재 2.」로 한다)를 집필, 2004년 9월 15일자 이후의 創価新報에 게재했다.

3. 본 건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記載)가 있다.

가. 13쪽 13행 ~ 14쪽 1행 (이하 「본 건 기재①」로 한다). 「1970년 원고가 후배학생을 시켜 독단으로 실행한 미야모도(宮本)저택 도청사건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64쪽 10행 ~ 65쪽 6행 (이하 「본 건 기재②」로 한다). 「일달법주(日達法主)의 수명을 단축시

킨 크루저 유람」(소제목).

다. 18쪽 3행 ~ 4행 (이하 「본 건 기재③」으로 한다). 「…1986년에는 마작도박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라. 47쪽 8행 ~ 14행 (이하 「본 건 기재④」로 한다). 「쇼신카이(正信會·정신회)로부터의 지원금 등을 마작도박으로 몰 쓰듯 소진했으며, 경찰조사로는 하룻밤에 백만 엔 단위의 도박을 한 달에 20여 회씩이나 했다고 한다. 결국 내연관계의 W씨가 고민 끝에 빌려준 1,000만 엔도 이렇게 갠블광의 먹이가 되었을 뿐이다」

4. 본 건 연재 1., 2.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가. 본 건 연재 1.의 2002년 3월 6일자 創価新報 12쪽

(1) 제목: 「이런 나쁜 놈은 없다! 甲野太郎의 『嘘』와 『闇』」(연재 제목), 「甲野는 난봉꾼인 비천한 사기꾼」(큰제목), 「『불륜재판』으로 폭로된 밑바닥의 “배반(背叛)인생”」(큰제목), 「마작도박자금을 위해 감언이설로 2,000만 엔 편취」(큰제목), 「귀축(鬼畜)의 소행! “은인”의 부인과도 “밀통(密通)”」(큰제목), 「正信會까지도 사기한 甲野의 수욕(獸慾)」(소제목).

(2) 2단 12행 ~ 20행(이하 (가)), 6단 40행 ~ 9단 17행(이하 b). (이하 「본 건 기재⑤」로 한다).

(가) 「그것은, 甲野와 불륜관계에 있던 W씨가 감언이설로 편취당한 2,000만 엔의 변제를 청구한 제소였다」

(나) 「甲野는 W씨와 관계를 갖고 있던 것과 같은 시기에 W씨와 잘 아는 여성과 밀통하고 있었다. 그 여성이란 다름 아닌 丙川竹夫의 부인이다. 丙川은 甲

野가 가장 많은 신세를 진 인물이다. … 얼마나 더러운 놈이냐. 두 명의 여성을 저울에 올려 그 여심(女心)을 마음대로 농락하면서 금품을 사취하는 수법— 여기에 비친한 사기꾼으로서의 甲野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3) 8단 30행 ~ 10단 71행 (이하 「본 건 기재⑥」로 한다). 「출옥 후의 甲野는 거듭되는 W씨의 변제요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망만 다녔다. 그 결과 이 남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구와 동지의 신뢰를 잃어 표면에 나설 수 없는 “시궁창의 쥐”와 같은 암흑의 생활을 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4) 11단 5행 ~ 44행(이하 (가)), 5단 42행 ~ 6단 44행(이하 나) (이하 합쳐서 「본 건 기재⑦」로 한다)

(가) 「…甲野의 생활패턴은, 하루의 반을 마작으로 보내고 피로하면 자택에서 수면을 취한 후 여기 저기 전화를 걸고는 다시 마작을 시작하는 문란한 것이었다.…」.

(나) 「얼마나 지독한 일인가. 학회와 싸우는 “영웅”의 모습을 하고는 이를 믿는 단도(檀徒)로부터 재판비용, 투쟁자금을 모으고 개인으로부터는 지원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와 마작도박에 소진하다니—이런 나쁜 놈은 없다.…」.

나. 본 건 연재 1.의 2002년 7월 3일자 創価新報 12쪽

(1) 제목: 「대량의 선동적인 삐라로 거액을 독점?」(큰제목), 「삐라대금은 직접 현금으로 甲野에게」(큰제목) 등.

(2) 6단 10행 ~ 11단 28행(이하 (가)), 4단 47행 ~ 55행(이하 나), (이하 합쳐서 「본 건 기재⑧」로

한다)

(가) 「...『민주정치를 생각하는 모임』은 발족 당초부터 甲野의 돈벌이에 이용되어왔다. 모임에서 발행한 빠라는 甲野에게는 개인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나) 「이제 甲野는 지긋지긋하다. 여하튼 그 빠라로 수억 원의 돈을 자민당으로부터 감쪽같이 받아내 그 돈을 나눠가지는 문제로 몇 사람이 싸우고 있다. 그 일당이...」.

다. 본 건 연재 2.의 2005년 2월 2일자 創價新報 9쪽

(1) 제목: 「1974년 ~ 75년 토지를 굴러 거액의 비자금을 호주머니에」.

(2) 2단 3행 ~ 3단 15행 (이하 「본 건 기재⑨」로 하며, 본 건 기재① ~ ⑨를 총칭하여 「본 건 각 기재」로 한다).

II. 본안사안 (모두(冒頭)의 「제1 청구」와 동일하므로 생략)

III. 쟁 점

1. 본 건 각 기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2.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법리에 근거한 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의 성립여부.

가. 본 건 각 기재가 공공성이 있거나 공익목적으로 게재되었는지의 여부.

나. 본 건 각 기재가 적시하는 사실 등이 진실이

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3. 언론의 응수 즉 대항언론(對抗言論)의 법리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의 성립여부.

4. 본 건 기재④, ⑥이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5. 피고들의 책임 유무.

6. 원고의 손해 유무 및 액수.

7. 사죄문 게재의 필요성 및 상당성.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I. 쟁점(1) <본 건 각 기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 본 건 기재① (미야모도 저택 도청사건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적시사실

본 건 기재①은 「원고는 1970년 7월 변호사로서의 재능을 피고 학회 내에 과시하기 위해 미야모도 저택의 도청행위를 공산당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면서 후배학생을 시켜 독단으로 실행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명예훼손성

(1) 위 적시사실은 원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도청행위를 독단으로 실행했다는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전기 I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

고는 도청사건소송(1·2심)에서 도청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간지 등에 약 20회를 기고하고, 3권의 서적을 발행하고, 기관지에 19회의 연재 기사를 기고하면서 도청사건의 총지휘자가 원고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가 도청사건을 총지휘한 사실은 이미 공연화(公然化)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법적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본 건 기재①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수 없다.

2. 본 건 기재② (크루저 유람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적시사실

본 건 기재②는 「묘지공원사업을 계획했던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은 日達을 은행관계자와 함께 크루저에 승선시켜 묘지공원용지 시찰에 나섰는데, 강풍에 크루저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日達의 건강이 더 나빠져 급거 입원한 후 1개월 만에 사망했다. 원고의 탐욕스러운 돈 욕심이 日達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내용이다.

나. 명예훼손성

위 적시사실은 원고의 돈 욕심 때문에 日達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본 건 기재③, ④ (마작도박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적시사실

본 건 기재③, ④는 「원고는 하룻밤에 100만 엔 단

위가 오가는 마작도박을 한 달에 20여 회씩 하면서 正信會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을 마작도박에 소진하여 1986년 3월 마작도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명예훼손성

(1) 위 적시사실은 원고가 거액의 마작도박으로 소일하면서 지원금 등을 도박으로 소진했다는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나 본 건 기재③, ④는 원고가 체포된 사실만을 적시했을 뿐, 그 후 도박죄로 기소된 사실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도박죄로 처벌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4. 본 건 기재⑤ 내지 ⑦ (불륜 및 마작도박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적시사실 등

(1) 본 건 기재⑤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가) 「원고는 감언이설로 불륜관계에 있는 W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나) 「원고는 W와 불륜관계에 있던 같은 시기에 동지인 丙川の 부인과도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귀축(鬼畜)과 다름없는 소행」이라는 의견과 논평을 표명했다.

(다) 「원고는 丙川の 부인과의 불륜관계에 대해 W가 질투하고 있는 것을 이용, W에게 『1,000만 엔을 빌려주지 않으면 후처를 구하겠다』면서 얽치없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는 여심(女心)을 교묘히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

는 비열한 사기꾼」이라는 의견과 논평을 표명했다.

(2) 본 건 기재⑥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적시했다.

(가) 「원고는 丙川の 부인과 불륜관계를 계속했으며 그 결과 丙川부부는 이혼했다. 『내가 도둑고양이처럼 친구의 부인을 뺏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던 원고는 1996년 丙川の 부인과 재혼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는 친구의 부인을 뺏은 어처구니없는 도둑고양이」라는 의견과 논평을 표명했다.

(나) 「원고는 20년간 피고학회와 싸우는 모양새를 하면서, 뒤로는 正信會로부터 지원받은 재판비용 및 투쟁자금과 여성으로부터 편취한 금품으로 마작도박을 계속했으며 친구의 부인까지 뺏었다」는 사실을 적시했으며, 이를 전제로 「원고는 正信會를 전부 삼켜버리는 기생충이며, 친구와 동지의 신뢰를 배신하여 점점 낮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시궁창에서 사는 쥐』처럼 암흑 속에서 생활하는 자로 타락했다」는 의견과 논평을 표명했다.

(3) 본 건 기재⑦은 「원고는 W로부터 강제로 편취한 1,000만 엔을 마작도박의 청산대금으로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학회와 싸우는 모양새를 하면서, 뒤로는 正信會로부터 지원받은 재판비용 및 투쟁자금과 여성으로부터 편취한 금품을 마작도박에 소진했다」는 사실 등을 적시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는 인간 실격의 밑바닥에 있는 비열한 놈」이라는 의견과 논평을 표명했다.

나. 명예훼손성

(1) 본 건 기재⑤가 적시하는 사실은, 제목과 함께 일반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여성과 불륜을 하면서 감언이설로 불륜상대로부터 교묘히 거액의 금전을 공여 받았다는 인상을 갖게 했으며, 또한 친구의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또한 의견과 논평은 원고의 행위가 귀축(鬼畜)과 같은 소행이며 여심(女心)을 미끼로 금품을 사취하는 비열한 사기꾼이라고 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2) 본 건 기재⑥이 적시하는 사실은, 제목과 함께 원고가 丙川の 부인과 불륜관계를 계속한 결과 丙川부부는 이혼하게 되어 친구의 부인을 가로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3) 본 건 기재⑦이 적시하는 사실은 제목과 함께 원고가 正信會에서 받은 지원금과 불륜상대의 여성으로부터 공여 받은 1,000만 엔을 마작도박에 소진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를 전제한 의견과 논평도 원고가 인간실격의 밑바닥의 비열한 놈이라고 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5. 본 건 기재⑧ (『생각하는 모임』의 빠라 발행에 의한 검은 돈 의혹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적시사실

본 건 기재⑧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6,000만부 내지 1억 부의 빠라 1매의 원가는 1엔 50전, 판매가는 3엔인데, 원고는 차익을 『생각하는 모임』에 보고도 하지 않

았다. 특히 자민당에 매각한 뼈라에 대해서는 자민당 총무국장인 무전(戊田)의원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배포대금으로 수억 엔을 현금으로 수령했었는데 그 돈에서 원고가 얼마를 빼돌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구조로 되어있어 원고가 뼈라 발행으로 돈 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명예훼손성

뼈라 발행을 둘러싸고 거액의 부정금품을 취득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6. 본 건 기재⑨(공원묘지사업에 얽힌 비자금 취득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적시사실

(1) 「종교를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온 원고는 1972년경 피고학회의 고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이세키지(大石寺) 소유의 유희지 19만 평을 매입, 골프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개발허가가 나오지 않자 동 토지를 전매하여 5,000만 엔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

(2) 「원고는 피고학회의 고문변호사 지위를 악용하여 H씨에 대해 공원묘지 건설사업을 함께 하자고 약속, H씨로부터 4억 엔 내지 5억 엔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

나. 명예훼손성

본 건 기재⑨가 적시하는 사실은 제목과 함께 일반 독자에게 상기 (1), (2)의 기재사실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II. 쟁점(2)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법리에 근거한 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1.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항변의 전제가 되는 법리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설령 진실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상기사실의 중요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최고재판소 1962년(才) 제 815호, 1966년 6월 23일 판결).

한편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전제가 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인신공격 등에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상기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설령 진실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상기사실의 중요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최고재판소 1985년(才) 제 274호 1988년 12월 22일 판결).

이상을 전제로 이하 명예훼손성이 부정되는 본 건 기재①을 제외한 본 건 기재② 내지 ⑨에 대하여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항변을 검토한다.

2. 본 건 기재②(크루저 유람에 관한 기재)에 관한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대하여

가. 공공성 및 공익목적

원고와 피고학회, 日蓮正宗과의 관계라는 사회적으로 주목되어온 여러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실과 관계가 있으며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본 건 기재②의 중요한 부분은 「원고가 돈을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 日達을 크루저에 승선시켜, 그 결과 병이 악화되어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내용이다.

다. 진실성

(1) 전기 I 4.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루저 유람의 목적은 원고의 돈 벌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추인된다.

(2) 전기 I 4.의 내용대로 日達의 사인은, 종문(宗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심근경색이다. 크루저 유람 전에 안색이 좋지 않았던 日達은 크루저 유람 때 뱃멀미 증상을 보였으며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사망했음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크루저 유람이 병약했던 日達의 병세 악화를 촉진시켜 그의 수명에 악영향을 미쳤음이 추인된다.

(3) 이상에 의하면 본 건 기재②가 적시한 사실의 중요부분은 진실임이 인정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본 건 기재③, ④ (마작도박에 관한 기재)에 관한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하여

가. 공공성 및 공익목적

본 건 기재③, ④가 적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학회, 日蓮正宗, 正信會와의 관계라는 사회적으로 주목되어온 여러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계가 있으며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본건기재③, ④가 적시한 사실의 중요부분은 「원고가 지원금 등을 마작도박에 탕진했으며 마작도박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진실성

(1) 원고가 마작도박의 피의사실로 체포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전기 I 6.과 같이 원고는 거액의 마작도박으로 소일했으며 지원금 등을 마작도박에 소진했음이 인정된다.

(3) 이상에 의하면 본 건 기재③, ④가 적시하는 사실의 중요부분은 진실임이 인정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4. 본 건 기재⑤ 내지 ⑦ (불륜 및 마작도박에 관한 기재)에 관한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대하여

가. 공공성 및 공익목적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이 적시한 사실 및 의견과 논평은 원고의 사생활상의 행상(行狀)에 관한 것이긴 하나 원고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공공성이 있으며 공익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이 적시한 사실 및 의견과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의 중요부분의 진실성

(1) 「원고가 丁山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감언이설로 거금을 공여토록 했다」는 부분은 「노후에는 둘이서 즐겁게 살자」, 「이번에 목돈이 들어온다」, 「그 정도의 돈은 금방 만들 수 있으며 2배, 3배로 곧 갚겠다」는 원고의 말과 여타의 보도내용 등 전황으로 미루어 진실성이 인정된다.

(2) 「원고가 丁山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친구

인 丙川の 부인과 불륜을 계속한 결과 丙川부부는 이혼했고 원고는 丙川の 부인과 재혼했다」는 부분도 원고의 진술과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진실성이 인정된다.

(3) 「원고가 피고학회와의 재판비용 및 투쟁자금으로 正信會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丁山으로부터 공여 받은 금품을 마작도박과 청산금으로 소진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진실성이 인정된다.

다. 이상과 같이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이 적시한 사실 및 의견과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로 인정된다.

라.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이 표명한 의견과 논평이 그 범위를 일탈하는 것인지의 여부

(1) 어떤 의견이나 논평이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표현자체의 상당성 외에 필요성의 유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며,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의한 과거의 언동 등 당해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에서 표명한 의견과 논평에서는 원고에 대해 「귀축(鬼畜)과 다름없는 소행」, 「비천한 사기꾼」(이상 본 건 기재⑤), 「한심한 ‘도둑 고양이」 「正信會를 전부 삼켜버리는 기생충」, 「시궁창에서 사는 쥐와 같이 암흑생활을 하는 자」(이상 본 건 기재⑥), 「인간신격의 밑바닥의 비열한 놈」(본 건 기재⑦) 으로 표현하는 등 제목과 함께 상스럽고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표현자체는 상당(相當)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전기 I 8.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와 피고학회 간의 장기간에 걸친 비판적 언론의 응수는 원고가 피고학회 관련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또한 전기 I 8.에서 인정한대로 원고는 (a) 피고학회가 정경분리를 위반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노리고 있다, (b) 피고학회가 옴(オウム)진리교와 같은 범죄집단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등 극히 다방면에 걸친 비판을 되풀이해 왔다.

그리고 전기 I 7.에서 인정한대로 원고가 일본 전국에 배포한 빠라에는 피고학회 및 피고 池田에 대한 저질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

(5) 더욱이 전기 I 8.가(4)에서 인정한대로 원고는 본 건 기재⑤ 내지 ⑦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저술을 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99년 12월 16일자 「케이묘(慧妙)」에 「창가학회의 앞잡이가 된 丙川은 나를 무고하고 중상하기 위해 신자인 여성과 공모하여 제소까지 했다. 그러나 패소하여 그러한 계획은 실패했으며 “사악한 음모”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등의 여러 가지 공격적인 저술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적어도 본 건의 증거상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원고의 다른 저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하겠다.

(6) 이러한 원고의 피고학회에 대한 비판적 언론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학회의 모략이라고 선전하는 사실에 대해, 피고들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며, 또한 원고의 행동특성 등을 밝히는 일이 원고의 실태나 내부 고발자로서의 부적격성을 밝히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을 기술한 내용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며, 의견 내지 논평의 필요성을 긍정하게 한다.

(7) 이상을 종합하면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이 표명한 의견과 논평은 그 표현자체에 지나침이 있고 온당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으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고 의견과 논평의 필요성이 긍정되므로 당해 의견과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본 건 기재⑧ (「생각하는 모임」의 빠라 발행에 의한 검은 돈 의혹 기재) 에 관한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대하여

가. 공공성 및 공익목적

본 건 기재⑧이 적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학회, 日蓮正宗, 자민당과의 관계라는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어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본 건 기재⑧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원고가 『생각하는 모임』의 빠라 발행을 둘러싸고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취득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진실성

(1) 전기 I (7)과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생각하는 모임」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

(나) 「생각하는 모임」의 빠라는 일본 전국에 약 6,000만 부가 배포되었으며 적어도 반수는 자민당이 구입했다.

(다) 자민당과의 관계에서 대금은 자민당 총무국장 戊田의원으로부터 적어도 6회 이상 모두 현

금으로 지불받았으나 영수증은 작성되지 않았다. 매회 원고가 혼자서 가든가 甲本 또는 丙林사장과 함께 갔다. (원고는 한번에 3,000만 엔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라) 원고가 자민당으로부터 받은 빠라 대금에서 수억 엔을 빼돌려 그 분배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과 싸웠으며, 丁原이 戊田의원에 대해 원고에게 지불한 금액을 추궁하자 「노출시킬 수 없는 비자금」이라는 말을 들었다.

(2) 이상의 인정사실을 전제로 검토하면, (a) 「생각하는 모임」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라는 사실 (b) 자민당으로부터의 빠라 대금은 모두 원고가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 (c) 丁原에 의하면 원고가 빠라 대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과 싸웠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장부 외의 매상을 취득한 것으로 추인된다.

(3) 이상에 의하면 본 건 기재⑧이 적시하는 사실의 중요 부분은 진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6. 본 건 기재⑨ (공원묘지사업에 얽힌 비자금 취득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공공성 및 공익목적

원고와 피고학회, 日蓮正宗과의 관계라는 사회적으로 주목되어온 여러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성이 있으며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본 건 기재⑨가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학회의 고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유희지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계획, 회사를 설립하여 동 토지를 구입한 후 전매하여 5,000만 엔의 차익을 얻었다.

(2) 원고가 고문으로 있는 피고학회의 공원묘지사업과 관련 있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4 ~ 5억 엔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다. 전기 나(1)부분의 진실성

(1) 전기 I 3.가 내지 다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6년 6월 16일 골프장 경영계획을 세우고 무해사(戊海社)를 설립, 大石寺로부터 유희지를 1억6,000만 엔에 구입했다.

(나) 그러나 동년 8월 18일 이 토지에 대한 골프장 개발이 동결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원묘지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戊海社는 이 토지를 丁野관광에 2억1,000만 엔으로 매각했다.

(2) 상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戊海社는 이 토지를 팔아 5,000만 엔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된다. 따라서 전기 나(1)부분은 진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라. 전기 나(2)부분의 진실성

(1) 전기 I 3.다 내지 마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를 중심으로 묘지공원계획이 입안되어 개발 사전협의 신청수속이 취해졌다.

(나) 원고는 휴면회사인 乙野社를 부활시켜 丁野조원(造園)으로부터 13회에 걸쳐 1억5,450만 엔의

용자를 받았다. 그 후 다시 38회에 걸쳐 12억7,300만 엔의 자금 원조를 받았다. 丁野는 200억 엔의 이 공사를 청부받기 위해 상기자금 원조 등을 했다.

(다) 丁野조원은 원고의 배려로 묘지공원 본채공사의 하청(47억 엔), 조원공사(68억 엔) 및 묘소공사(59억 엔)를 청부받았으며 식목매매 및 관리계약(8억 엔)도 체결했다.

(라) 그 후에도 丁野로부터 자금원조가 계속되었으며, 상기 12억7,300만 엔의 원조자금 중에는 5억 4,000만 엔의 공사수수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그 중 4억5,000만 엔을 수령했다.

(2)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기 나(나)부분은 진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III. 명예훼손에 관한 소결론

1. 본 건 기재①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본 건 기재② 내지 ④, ⑧, ⑨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기 각 기재가 적시하는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고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본 건 기재⑤ 내지 ⑦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기 각 기재가 적시하는 사실 및 표명하는 의견 내지 논평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고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내지 논평부분은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IV. 쟁점(4) (본 건 기재④, ⑥의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에 대하여

1. 원고는, 원고의 15년 이상 이전의 체포 전력을 공표한 본 건 기사④와 원고와 二子の 혼인 및 혼인 전의 관계 등 원고의 사생활을 공표한 본 건 기재⑥은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개인의 인격적인 이익으로서 권리성이 인정되고 있는 바,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 내지 정보의 내용 및 공표의 양태를 고려하여, 당해 사실 내지 정보를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를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경우에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고재판소 1988년(才) 제1649호 1994년 2월 8일 제3소법정 판결, 최고재판소 2000년(受) 제1335호 2003년 3월 14일 제2소법정 판결).

2. 본 건 기재④에 대하여

가. 프라이버시의 해당성

본 건 기재④는 원고가 1986년 3월 마작도박의 피의사실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의 공표이다. 일반적으로 체포 전력(前歷)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는 사안이

다. 그러나 원고가 마작도박 혐의로 체포된 사실은 당시의 신문이나 주간지에 보도되고 본인도 복수의 주간지에서 자인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본 건 서적 발행 약 1년 전에, 2001년 4월 30일 발행의 저서 『『월간펜사건』 매장(埋藏)되었던 진실』에서 체포된 사실을 스스로 공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체포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를 바라지 않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본 건 서적이 발행된 2002년 6월 1일 당시에 있어서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사실은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본 건 기재④에 있어서 상기사실을 공표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본 건 기재⑥ (불륜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가. 프라이버시의 해당성

본 건 기재⑥은 원고가 丙川の 처 二子와 불륜관계를 계속한 결과 丙川부부가 이혼했으며, 그 후 원고는 1996년 二子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내용이다.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혼인 전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를 바라지 않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상기 사실은 본 건 기재⑥이 게재된 2002년 3월 6일 당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므로 상기사실은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속한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본 건 기재⑥은 혼인 전(前)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피

고학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創価新報에 공표한 것이다.

(2) 전기 III 4. (3)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창가학회 간의 장기간에 걸친 언론을 통한 응수는 그 발단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 III 4. (5)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학회에 대한 비판적 언론 중에는 적어도 본 건의 증거상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데 피고학회와 집필자인 고 乙山(고인)의 입장에서 더 이상 원고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새로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실태라든가 그 근거에 있는 행동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전기 I 5.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부정(不貞)소송에서, 丁山과 불륜관계에 있던 당시 「20대의 모델여성」과 「초급대학 여대생」과도 남녀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같은 시기에 복수의 여성과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공표하고 있다. 상기사실은 여성에 대한 도덕적 측면에서 본 건 기재⑥의 사실과

공통점이 있다.

(4) 상기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건 기재⑥에 관련된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원고의 법적 이익이, 상기사실을 공표하는 이유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건 기재⑥에 관련된 사실을 공표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본 건 기재④, ⑥은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제4 결론

이상에 의하면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원고의 본 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6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시보 2036호, pp.48~88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영국사례 1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거주지를 공개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 불만제기인 : 한 여성 (신원 미공개)
- 인용된 조항 : 제7조 (아동 성범죄), 제11조(성추행 피해자)
- 언론사 : Falkirk Gerald

불만내용

성추행 피해자의 어머니인 신청인은 2009년 5월 14일자 「Falkirk Gerald」에 실린 기사가 실천요강 제7조(아동 성범죄)와 제11조(성추행 피해자)를 위반, 그녀의 딸이 성추행 피해자임이 밝혀지게 되었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한 소년이 피해자인 소녀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었다

는 내용과 함께 범죄가 이루어졌던 장소를 상세히 보도했다.

불만제기인은 기사에 보도된 주소는 현재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소이며, 이 때문에 딸 이름이 기사에 직접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사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이 임신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심각한 실천요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신문사는 피해자의 집 주소는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살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불만 대상 기사는 피해자의 나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사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며, 사과문을 게시할 의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성 사건 관련 조항은 특별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신문사가 기사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주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신중

하지 못한 처사였다.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재된 주소가 그 소녀의 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확한 주소를 기사화한

것은 경솔하고 불필요한 행위였으며, 사건의 소녀가 임신한 사안을 공개한 것도 실천요강 위반이 명백하다.

PCC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불만

제기자의 딸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불만제기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2009년 6월 11일 평결번호 79

영국사례 2

PCC의 평결을 상당부분 누락한 채,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기사화한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 불만제기인: Natalie Cassidy,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한 여성(신원 미공개)
- 인용된 조항: 제1조
- 언론사: Woman

불만내용

2008년 12월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는 Natalie Cassidy, Big Shot Productions, Universal Studios가 「Woman」을 대상으로 제기한 불만을 인용한 바 있다. PCC는 그러나 해당 잡지사가 실천요강에 따른 처분과 관련, 기사의 제목을 'PCC 권고'로 기재하지 않은 점과 기사를 뒤늦게 보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Cassidy는 자신의 다이어트 DVD 제작 당시 그녀가 규칙적으로 체육관을 다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관련 내용은 잡지가 비공개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사화 한 것이다. Cassidy의 변호사는 그녀가 체육관에 다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Cassidy의 체중감량은 전적으로 DVD에 담긴 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CC는 「Woman」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믿을 만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그녀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가 제1조(정확성)를 위반한 것

이라 결정했다. PCC의 제재내용은 2월 23일 판 잡지 30페이지에 'Natalie Cassidy'라는 제목으로 실렸으나, 평결내용의 반 이상이 누락된 상태였다.

「Woman」은 독자들의 관심이 사건에 분명하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제목을 'PCC의 권고' 대신에 'Natalie Cassidy'라는 제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생략된 평결문의 대부분은 원문 기사에 대한 「Woman」의 자기 방어적 언급을 기술한 내용이었고, 이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형적으로는 PCC의 제재 사항이 불만대상이 되었던 기사의 절반 분량으로 실렸지만, 이는 관

런 결정에 응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Woman」은 PCC의 평결 뒤에 추가적인 문구를 삽입하여 자사가 불만을 받아 들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Woman」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평결문의 편집은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잡지사는 관련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해 받는 불이익의 일부로서, PCC의 권고 사항을 전부 다 게시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최초 기사는 8~9페이지에 걸친 기사였다. 이에 반해 30페이지에 실린 PCC의 제재문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며, 그 페이지의 나머지 부

분보다 더 작은 글씨로 게재되었다. 제재문의 제목에는 PCC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평결문도 편집되었다. 잡지사의 모든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 PCC는 제재에 대한 잡지사의 대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PCC는 편집자에게 다음호 잡지를 발행 시 평결문 내용을 빠짐없이 넣을 것과 관련 기사가 두드러지게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13일 평결번호 79

호주사례 7

의견 기사에 사용되는 표현은 때때로 자극적이거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도 내용에 잘못이 없는 한 이러한 내용이 실천요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평결번호 1425

호주신문평의회(APC)는 칼럼니스트 Miranda Devine이 2009년 2월 12일 「Sydney Morning Herald」에 쓴 의견 기사와 온라인판 'Opinion' 및 'Environment' 면에 게재한 기사를 대상으로 Claire deLacey와 Steve

Chamberlain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한다.

불만 대상 기사는 '환경 이상주의'에 기반한 삼림 관리체계가 수많은 식물군을 파괴하고, 동물 개체수를 줄어든게 만든 빅토리아 잡목림지대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제기인들은 기사가 산불

의 책임을 '환경 이상주의'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며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명백한 실천요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ydney Morning Herald」는 불만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해당 기사들은 비극적인 빅토리아 산불을 "포괄적이고 균형

된”시각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Devine이 칼럼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 신문은 이미 Devine의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편지글의 형태로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기사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책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만제기자들은 신문사가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또는 의견란 기고 등의 형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ydney Morning Herald」는 변론을 통해 Devine이 쓴 일부 과장된 표현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생기 있고 독자들로부터 반향을 일으키게 하는’ 그녀만의 문체에서 기인한 것이며, 기사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C는 ‘의견’ 기사에 표현된 관점과 논평들은 때때로 자극적이거나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 기사도 “300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나, 방화범이 아닌 ‘환경이상주의’”라는 다소 논란의 여지

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적인 애도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산불의 원인을 특정한 집단에 돌리는 것은 독자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주장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ydney Morning Herald」의 빅토리아 산불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문맥 그리고 그동안 신문사가 취한 행동을 볼 때, APC는 해당 기사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다.

2009년 6월 평결

호주사례 2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은 모두에 공개된 사실로 보아야 하며, 언론사가 이를 공개한 것은 실천요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평결번호 1423

호주신문평의회(APC)는 남오스트레일리아 주 법무장관 Michael Atkinson이 「The Advertiser」, 「Adelaide」 및 인터넷「Adelaide

Now」가 게재한 기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한다.

Atkinson 장관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두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불만 대상은 「Adelaide Now」가 게재한 ‘정부의 정치홍보

전문가(Spin-doctor)들, 검찰의 의견철회 사실 부각에 급급’ 제하의 기사와 「The Advertiser」의 ‘정부 정치홍보전문가들, 검찰 비난’ 제하의 기사이다. 기사는 남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법원의 한

소송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을 다루고 있다.

「The Advertiser」는 검찰이 재판 중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법이 의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 담당자들에 대한 비판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으며, 검찰의 발언 내용은 법무장관 언론비서관이 “오늘 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밤 뉴스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과 함께 언론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Atkinson 장관은 기사가 언론

비서관의 개인적인 이메일의 많은 부분을 포함해 독자들이 그녀가 취한 행동에 대해 나쁜 인상을 받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언론비서관의 역할은 남오스트레일리아 주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론에게 알리는 것이고 이는 하나의 공공서비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이메일 내용의 공개는 심각한 실천요강 위반이며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뉴스는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PC는 이 사건 기사가 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이메일이 언론사에 보내졌다면, 그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만내용의 본질과 관련해 APC는 기사가 일부 비방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의 의견 철회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기반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불만처리와 관련한 「The Advertiser」의 태도는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The Advertiser」는 Atkinson 장관의 불만제기와 관련해 한 차례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

2009년 5월 평결

뉴질랜드 사례

기사에 언급된 비용 관련 수치는 그 도출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정정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2070 AUCKLAND REGIONAL COUNCIL AGAINST NEW WEALAND HERALD

오클랜드 지방의회(ARC) 의

장인 Mike Lee는 「New Zealand Herald」가 오클랜드의 대중교통 통합발권시스템 운영비용에 관한 부정확한 기사를 보도했으며 신문평의회(PC)에 불만을 제기했다.

제기된 불만을 인용한다.

배경

2009년 2월 2일 「New Zealand Herald」는 1면에 ‘주요한 도시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으며, ARC는 사업 실적에 관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기사

를 내보냈다.

그 기사는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시 주요 개발사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략적 투자로 수익성을 유지하던 사업들의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정치인, 사업관계자 그리고 ARC 참모들이 악화되고 있는 ARC 사업 실적에 대처하기 위해 금주 금요일 Auckland Regional Holdings 라는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회의는 적대감 속에 중단되어 목요일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며, 지주 회사들의 수입 역시 1억 7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통합발권프로젝트의 운영비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위기에 직면한 통합발권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버스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으며,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통합발권프로젝트 관련 의회제안서가 곧 고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클랜드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재정상의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불만 내용

Mike Lee는 회의에 대한 설명과 1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New Zealand Herald」에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회의가 있기 하루 전 날 자신을 인터뷰하였으며, 그는 기자에게 발권프로젝트에 상업적 민감성이 존재하지만, 대략 6천만 ~ 8천만 달러의 자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기사가 보도된 날 Mike Lee는 기자에게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1억 7천만 달러라는 수치 및 회의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중단되었다는 표현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자는 당시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Mike Lee는 회신을 받지 못했다.

Mike Lee는 회의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중단된 것이 아닌 만큼 이 사실은 당연히 정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편집자 앞으로 보냈다.

그러나 2월 10일 「New Zealand Herald」는 그의 편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ARC의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통합발권시스템 계획은 부적절하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New Zealand Herald」의 편

집인 Tim Murphy와 비용 이슈를 논하고자 휴대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Mike Lee는 다시 편집인에게 편지를 썼고 이 편지 내용은 상당 부분 생략된 채로 2월 12일자 신문에 기사화 되었으며, 기사는 Mike Lee가 기사를 본 후 편집인에게 편지를 통해 통합 대중교통 발권시스템은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그 비용은 6천만 ~ 8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기자와 Mike Lee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 편집인 Tim Murphy는 기사와 관련 Mike Lee의 의의제기가 있다는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그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바로 편집부로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담당 기자는 휴가 중이었으며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Tim Murphy는 담당기자가 Mike Lee와의 인터뷰에서 6천만에서 8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얘기를 들은 바 있지만, 그가 기사에 쓴 수치는 ARC의 전체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자본비용과 관리비용을 포함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비용 합계가 8천만 달러를 훨씬 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중앙 정부 계산’이며, Mike Lee의 비용 측정은 ARC의 비율만을 고려한 것인 만큼, 기사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Mike Lee가 언급한 수치가 자본비용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전체 비용을 말한 것이라면 명백하게 기사를 정정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Mike Lee는 PC에 「New Zealand Herald」의 2월 2일자 기사 중 “지주 회사들의 수입 대부분이 1억 7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중교통 통합발권프로젝트를 위한 운영비용으로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사업비용이 실로 거대하다고 말할 것이라”라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논의

이 사건의 첫 번째 논점은 2월 2일자 기사를 읽은 합리적인 독자가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발권통합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치를 자본비용으로 받아

들이는지 아니면 자본비용과 운용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이해하는지에 있다.

해당 기사는 위 수치를 두 번 언급한다. 첫 번째는 ‘1억 7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운용비용에 대한 지주회사의 비용부담’이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는 ‘1억 7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성공적 제안’이라는 머리글에서다.

비록 운용비용이라는 말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1억 7천만 달러라는 수치가 자본비용과 운용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지 불분명하다. 편집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에는 설명이 빈약하다. 편집자가 말한 것처럼 해당 기사는 1억 7천만 달러에 운용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1억 7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운용비용을 지주회사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보도할 뿐이다.

두 번째 논점은 1억 7천만 달러가 정확한 금액인가, 하는 부분이다. 교통청의 추정치로부터 계산된 편집자의 수치는 1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친다. 계산된 수치는 1억 5천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기사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편집자는 1억 7천만 달러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비용 상승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독자들에게 이러한 추정이 계산에 포함되었음을 알렸어야 했다.

통합발권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없었으며, 향후 10년에 걸쳐 발생하는 운용비용과 물가상승률은 추정치로 예상될 수밖에 없어 수치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점은 누가보아도 명백하다.

언론사가 자본비용과 운용비용, 중앙 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의 비용의 분담관계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결정

수치가 부정확했다는 Mike Lee의 불만을 인용한다. 2월 2일자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해당 수치는 자본

비용만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만약 자본비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New Zealand Herald」는 해당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설명했어야

했다. 내용이 일부 생략된 Mike Lee의 편지를 게재한 것으로 「New Zealand Herald」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독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New Zealand Herald」는 첫 번째 기사에서 좀 더 신중하고 명확한 수치를 사용했어야 했다.

위원회 회의 : 2009년 5월



- 구교태(2009). 제17대 대선 후보자의 온라인 보도자료 특성과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pp. 5~44.
- 김민호(2009).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2009. 9. 10.
- 김보라미(2009).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법리적 쟁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미디어법 개정 관련 쟁점토론회 발제문**. 2009. 5. 28.
- 김상훈(2009). 방송광고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미디어렐의 도입방안.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새로운 과제와 그 해결방안의 모색’ 발제문**. 2009. 8. 24.
- 김성태(2009). 인터넷과 한국사회: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미디어법 개정 관련 쟁점토론회 발제문**. 2009. 5. 28.
- 김재형(2009).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 및 절차. **제62회 변호사연수회 발제문**. 2009. 8. 31.
- 문재완(2009).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의 불법행위책임론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새로운 과제와 그 해결방안의 모색’ 발제문**. 2009. 8. 24.
- 박종보(2009. 6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통권 제8권 제1호, pp. 243~287.
- 박진애(2009. 6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언론과 법**, 통권 제8권 · 제1호, pp. 129~170.
- 성낙인(2009. 6월).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Internet and Freedom of Expression). **언론과 법**, 통권 제8권 · 제1호, pp. 99~128.
- 안종묵(2009). 인터넷 포털의 규제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2009년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학술대회 발제문**. 2009. 5. 30.
- 양재규(2009. 6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39 - 공인의 전과라도 사건과 무관하면 보도 말아야. **신문과 방송**, 통권 462호, pp. 126~129.
- 양재규(2009. 7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40 - 비판 언론이라면 타 언론의 비판도 감수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63호, pp. 128~131.
- 양재규(2009. 8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41 - 언론사 기사라도 포털에 순배 책임. **신문과 방송**, 통권 464호, pp. 122~125.
- 오세은(2009). 포털의 책임범위에 관한 최근 해외동향. **한국정보법학회 주최 7월 사례연구회 발제문**. 2009. 7. 14.
- 유의선(2009).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규제 체계 정립방안 :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위하여. **한국통신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 공동주최 ‘방송통신 융합과 융합 미디어의 미래 2020’ 컨퍼런스 발제문**. 2009. 9. 9.

- 이규정(2009).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2009. 9. 10.
- 이동훈(2009).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액세스권과 알권리 해석론. **공법학연구**, 통권 Vol.10 No.22, pp. 81~104.
- 이아람(2009. 8월).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보도 - 판결 전까진 무죄 추정. **신문과 방송**, 통권 464호, pp. 46~49.
- 이영환(2009). 미디어 법과 지역방송. **대구경북언론학회 ‘방송시장의 변화와 지역방송의 생존 전략’ 세미나 발제문**. 2009. 6. 19.
- 이재진·이정기(2009).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언론법제윤리 II’ 발제문**. 2009. 6. 5.
- 이재진(2009). 장용 교수의 언론법제 연구 성과에 대한 재조명.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 한국 언론학 1세대에 대한 성찰 II’ 발제문**. 2009. 6. 5.
- 이재진(2009. 6월). 명예훼손 판결로 본 포털의 뉴스보도 게재와 책임 : 대법원 판결의 의미. **신문과 방송**, 통권 462호, pp. 112~125.
- 이재진(2009. 8월).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보도 - 기소 전 보도 삼가고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 말아야. **신문과 방송**, 통권 464호, pp. 32~45.
- 이향선(2009. 6월).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타당성에 관하여-. **언론과 법**, 통권 제8권·제1호, pp. 171~203.
- 이효성(2009). 미디어법 이후의 비판커뮤니케이션학. **한국언론정보학회 하계워크숍 발제문**. 2009. 8. 21.
- 이희정(2009).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2회 학술대회, ‘방송통신 및 교육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세션’ 발제문**. 2009. 6. 20.
- 임동욱(2009). 방송법 제4조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언론법제윤리 II’ 발제문**. 2009. 6. 5.
- 임상원(2009). 언론윤리의 기준과 언론윤리 교육의 방향성 모색.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언론법제윤리 I’ 발제문**. 2009. 6. 5.
- 정 완(2009).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한국인터넷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인터넷 현상과 법규범의 충돌 - 새로운 법질서의 정립은 가능한가’ 발제문**. 2009. 6. 29.
- 조동시, 정대필(2009. 8월).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보도 - 여론 재판식 보도가 가장 문제. **신문과 방송**, 통권 464호, pp. 20~25.
- 최경욱(2009). 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토지공법연구**, 통권 Vol.43 No.3, pp. 593~618.
- 한위수(2009. 8월).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보도 - 공익적 공표 허용하되 증거확인·절차·표현에 주의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64호, pp. 36~41.
- 허순철(2009).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통권 Vol.10 No.2, pp. 157~186.
- 황성기(2009). 인터넷 포털과 법적 문제. **한국인터넷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인터넷 현상과 법규범의 충돌 - 새로운 법질서의 정립은 가능한가’ 발제문**. 2009. 6. 29.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언론중재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포털뉴스와 IPTV가 위원회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된 것이다. 또 인터넷매체에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의 관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 조정신청방법이 '전자우편 등'에서 '전자문서 등'으로 바뀐 점 등도 눈에 띈다.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털뉴스 및 IPTV 등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중재대상에 추가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매체라 할 수 있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번 법 개정에서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 및 IPTV도 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의할 점은, 이들 새로운 매체가 조정·중재대상에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정법은 언론의 범위를 여전히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다(법 제2조 1호). 따라서 이 조항은 포털뉴스로 대변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그 수행하는 기능 내지는 영향력 측면에서 언론에 준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체는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조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친목·교육·종교 목적의 홈페이지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신청사건의 특별 중재부 배정

종전 언론중재법은 기피신청사건(사건담당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중재위원을 심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중재위원만을 제외하고 기존 중재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피사건에 대한 심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중재부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중재부(특별중재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법 제10조 제4항). 또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는 중재위원은 중재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스스로 심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에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본문 자체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 기사 자체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

청구가 가능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또는 매개 중에 있는 기사이며, 이미 삭제되었거나 내려진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무상 새로운 형태의 정정보도청구가 자리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보도의 배열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할 의무 부과

종전 언론중재법에도 기사 보관의무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정도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역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8항). 그러나 전자기록 보관의무가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보관의 범위와 방법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는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지만, 자칫 보관의무를 부여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도 있는 위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특칙규정을 신설, 피해확산방지 및 일괄피해구제의 원칙을 도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 동안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가 다른 피해구제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기는 하였으나,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표시의무’는 정

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포털사들은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가 청구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고, 포털의 통보가 있거나 하면 해당 언론사 역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법 제17조의2 제2항). 또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피해자가 먼저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털사에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3항).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사유 명시한 서면 제출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다. 다만, 언론조정중재규칙 관련 규정에서 위원회가 마련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의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2조 제3항).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아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조정신청 시 보다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문서 등’에 의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하자 있는 중재결정의 취소절차가 누락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중재결정취소도 가능하게 한 점도 변경된 내용이다. 또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정정보도청구의 재판방법을 본안소송에 의하도록 했다.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신청제도가 삭제된 점도 이번 개정법의 중요 사항이다.

정 리 : 양재 규 조사팀장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9. 2. 6.
시 행 : 2009. 8. 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개정 2009.2.6>)

①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 ③ 삭제 <2009.2.6>
- ④ 삭제 <2009.2.6>
- ⑤ 삭제 <2009.2.6>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제6조 (고충처리인)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 (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2009.2.6>

⑤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신설 2009.2.6>

제11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별칙의 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개정 2009.2.6>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개정 2009.2.6>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절 조정

제18조 (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④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③ 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조정결정)

-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련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2.6>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09.2.6>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 (중재)

- ①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 ④ 삭제 <2009.2.6>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개정 2009.2.6>)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9.2.6>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

제4절 소송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⑧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2006. 6. 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 (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28조 (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제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개정 2009.2.6>)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같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개정 2009.2.6>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3조 삭제 <2009.2.6>

제4장 별 칙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9.2.6>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부 칙 <제9425호, 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